

정책연구 2012-3

행정사 전문자격서비스의 시장 전망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2012 Global Leader KRIL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논의	7
제1절 행정사의 의의	9
제2절 행정사 제도 검토	10
1. 행정사 자격 관련 규정	10
2. 행정사의 업무	13
3. 제12차 법률 주요 개정 내용	19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7
1. 행정사 관련 기존 연구: 적정수 관련 연구 부재 ..	27
2. 전문자격인의 적정수 추정 연구들	28
3.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 사례: 부동산중개업 ..	50
제3장 행정사 시장전망 분석	57
제1절 인식상의 조사결과	59
1. 조사개요	59
2. 인구통계학적 조사결과	68



3. 각 문항별 세부조사결과	83
제2절 타 전문자격과의 선발제도 비교	108
1. 법무사	108
2. 세무사	114
3. 변리사	121
4. 공인노무사	131
5. 관세사	142
6. 시사점	150
제3절 일본의 행정사제도 사례	152
1. 지방분권화와 행정서사제도	152
2.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범위	153
3.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내용	157
제4장 행정사 발전전략	173
제1절 적정 최소선발인원 산정	175
1. 회귀분석을 통한 적정 인원 산정	176
2. 일본 행정서사수를 통한 적정인원 산정	188
3. 적정 행정사 수 도출 정리	189
제2절 적정 수수료 산정	191
1. 수수료의 의의	191
2. 선행연구의 검토	195
3. 행정사 적정 수수료 산정(안)	212
4. 종합의견	217



제5장 결 론 219

참고문헌 224

〈 부록 〉

1. 행정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의견(행정사) .. 226
2. 행정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의견(공무원) .. 234
3. 설문지 240
4. 자격별 예상 수험인원 현황 247
5. 자격증별 선발인원 현황 247
6. 시도별 행정사업 신고현황(11.12.31 기준) 248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행정사의 업무	13
<표 2-2> 시·도별 행정사 현황	17
<표 2-3> 연도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록 및 개업 현황 30	
<표 2-4> 공인노무사 회귀식을 이용한 합격자수 산정 확인 · 36	
<표 2-5> 공인노무사 수요예측(2008-2012)	38
<표 2-6> 공인노무사 자격탈락자 추정치(2008-2011)	39
<표 2-7> 변호사 선발인원과 적정 변호사 수	46
<표 3-1> 응답자 성별 비교	68
<표 3-2> 응답자 연령별 비교	70
<표 3-3> 응답자 업무경력별 비교	71
<표 3-4> 응답자 출신별 비교	73
<표 3-5> 응답자 지역별 비교	74
<표 3-6> 행정사 종류	76
<표 3-7> 행정사 전업 여부	77
<표 3-8> 사무소의 형태	78
<표 3-9> 사무실의 월 평균 운영경비	80
<표 3-10>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	81
<표 3-11> 공무원의 행정사 업무경력별 분포	82
<표 3-12> 2013년 실시 행정사 시험 인지도 비교	84
<표 3-13> 공무원 직급별 행정사 시험 인지도	86
<표 3-14> 행정사 적정인원에 대한 의견 비교	87
<표 3-15> 현 행정사 수에 대한 의견 비교	89
<표 3-16> 현 행정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행정사의 의견	90
<표 3-17> 현 행정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	91





<표 3-18> 행정사 적정 선발인원에 대한 의견 비교	93
<표 3-19> 행정사 자격 취득계획(공무원)	94
<표 3-20> 행정사의 적정 보수에 대한 의견 비교	95
<표 3-21> 행정사의 월 평균 소득(매출)	97
<표 3-22>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99
<표 3-23> 가장 수입 낮은 업무분야	100
<표 3-24> 최근 3년간 수입업무 변화	101
<표 3-25> 향후 증가할 수입 업무에 대한 의견 비교	102
<표 3-26> 향후 감소할 수입 업무에 대한 의견 비교	104
<표 3-27> 행정사의 수익전망에 대한 의견 비교	105
<표 3-28> 소속기관별 행정사 시험 응시 예상인원	106
<표 3-30> 법무사 시험과목	112
<표 3-31> 법무사 선발예정인원	113
<표 3-32> 법무사 합격자 추이	113
<표 3-33> 세무사 연도별 최소합격인원	119
<표 3-34> 세무사 연도별 합격자수	119
<표 3-35> 2012년 변리사 선발예정인원	128
<표 3-36> 변리사 최소합격인원	128
<표 3-37> 변리사 연도별 최소합격인원	128
<표 3-38> 변리사 접수자 접수현황	131
<표 3-39> 변리사 접수자 성별	131
<표 3-40> 변리사 접수자 연령	131
<표 3-42>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133
<표 3-43> 공인노무사 시험합격자 배출현황	139

<표 3-44> 관세사 최소합격인원 및 2차 시험 합격자수 147

<표 3-45> 타 자격증과 종사자 비교방식을 통한 적정 행정사 산정 151

<표 3-46> 행정서사 등록자 현황 155

<표 3-47> 주요 지역의 회원수 분포 161

<표 3-48> 2011년도 행정서사시험/도도부현별시험결과 일람 167

<표 4-1> 행정사 회귀식을 활용할 변수 180

<표 4-2> 적정 행정사 회귀식을 이용한 추정치 비교 182

<표 4-3> 주요 변수 추정치 183

<표 4-4> 행정사 수요 예측(2012-2022) 184

<표 4-5> 향후 10년간 선발해야 할 회귀모형 대비 행정사 총인원 수의 계산 185

<표 4-6> 2007년 연구용역 산출 수수료 195

<표 4-7> 일본의 국가자격 응시수수료와 비교 197

<표 4-8> 국가자격별 현행 수수료 체계 198

<표 4-9> 수수료 인상요인 적용 산출 수수료 199

<표 4-10> 국가자격별 물량(수량) 산출결과 201

<표 4-11> 현행 응시수수료와 원가분석 산출결과 비교 204

<표 4-12> 자격별 응시수수료 적용(안) 종합(통합) 205

<표 4-13> 자격별 응시수수료 적용(안) 종합(1차, 2차) 205

<표 4-14> 자격별 응시수수료 적용(안) 종합(통합) 215

<표 4-15> 자격별 응시수수료 적용(안) 종합(1차, 2차) 215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흐름도	6
<그림 3-1> 행정사와 공무원의 성별 비교	69
<그림 3-2> 행정사와 공무원의 연령별 비교	70
<그림 3-3> 행정사와 공무원의 업무경력별 비교	72
<그림 3-4> 행정사의 출신별 특성	73
<그림 3-5> 행정사와 공무원의 거주지역별 비교	75
<그림 3-6> 행정사 종류	76
<그림 3-7> 행정사 전업 여부	77
<그림 3-8> 행정사의 사무소 형태	79
<그림 3-9> 사무실의 월 평균 운영경비	80
<그림 3-10>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	81
<그림 3-11> 공무원의 행정사 업무경력별 분포	83
<그림 3-12> 2013년 시행 행정사 시험 인지도 비교	85
<그림 3-13> 직급별 행정사 시험 인지도(전혀모름/모름)	86
<그림 3-14> 행정사 적정인원에 대한 의견 비교	88
<그림 3-15> 현 행정사 수에 대한 의견 비교	89
<그림 3-16> 행정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의견 비교	92
<그림 3-17> 행정사 적정 선발인원에 대한 의견 비교	93
<그림 3-18> 행정사 자격 취득계획(공무원)	94
<그림 3-19> 행정사의 적정 보수에 대한 의견 비교	96
<그림 3-20> 행정사의 월 평균 매출(소득)	98
<그림 3-21> 최근 3년간 행정사의 수입업무 변화	101
<그림 3-22> 향후 증가할 수입 업무에 대한 의견 비교	103
<그림 3-23> 향후 감소할 수입 업무에 대한 의견 비교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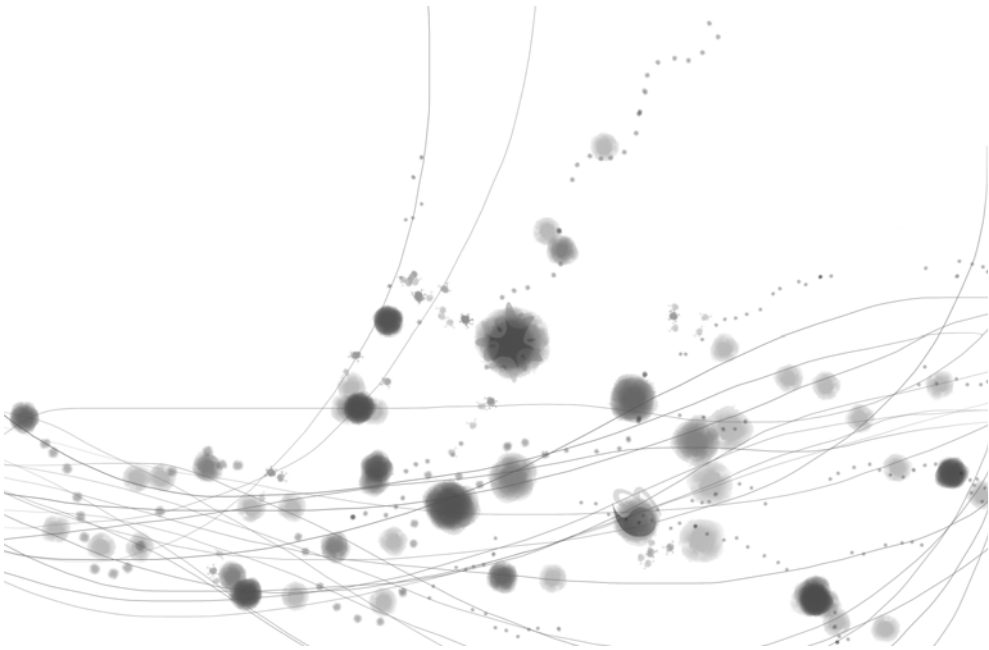
<그림 3-24> 행정사의 수익전망에 대한 의견 비교 105
<그림 3-25> 법무사 종사현황 및 수입 110
<그림 3-26> 세무사 종사현황 및 수입 115
<그림 3-27> 변리사 종사현황 및 수입 123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행정사법령 전부개정('12.12 완료)에 따라 '13년부터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이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최로 시행될 예정임
- 행정사 자격시험에 최소선발인원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 －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는 제도로 운영될 예정임
- 적절한 행정사 최소선발인원 도출
 - －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나, 적정 수준 이상의 행정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위원장 차관보)에서 매년 최소선발인원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 － 타 자격사 사례의 경우 수험생 대부분이 합격 점수에 미달하여 최소 합격인원이 사실상 선발인원의 역할을 하므로 시장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최소합격인원 산정이 필요함
 - ※ 공인노무사 등 타 자격사도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07)하면서 적정 수준의 최소합격인원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었음('07.7)
- 적절한 행정사 공급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필요
 - －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인·허가, 권리구제, 출입국업무 대행 등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정수의 행정사 공급

량 산출 역할

- 타 자격사 수준의 행정사 수입을 유지하는 공급량 산정
 - 행정사 과잉공급에 따른 영업소 난립 및 과다경쟁 방지 필요
 - 과잉공급에 따른 수입 저하로 행정사의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분석에 근거한 적절한 장기적 공급계획 수립 필요함
- 연구결과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최소선발인원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도 기대
 - 그간 자격시험 시행 없이 공무원 등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여 시장분석 및 적절한 행정사 숫자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

2. 연구목적

- '13년 초에 시험일정 및 최소선발인원을 결정하여 공지해야함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시급
-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행정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행정사 공급의 토대 마련
- 응시 수수료에 대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여 국민편의 제공
-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행정사 제도개선으로 추진하여 행정사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 자격제도의 토대 마련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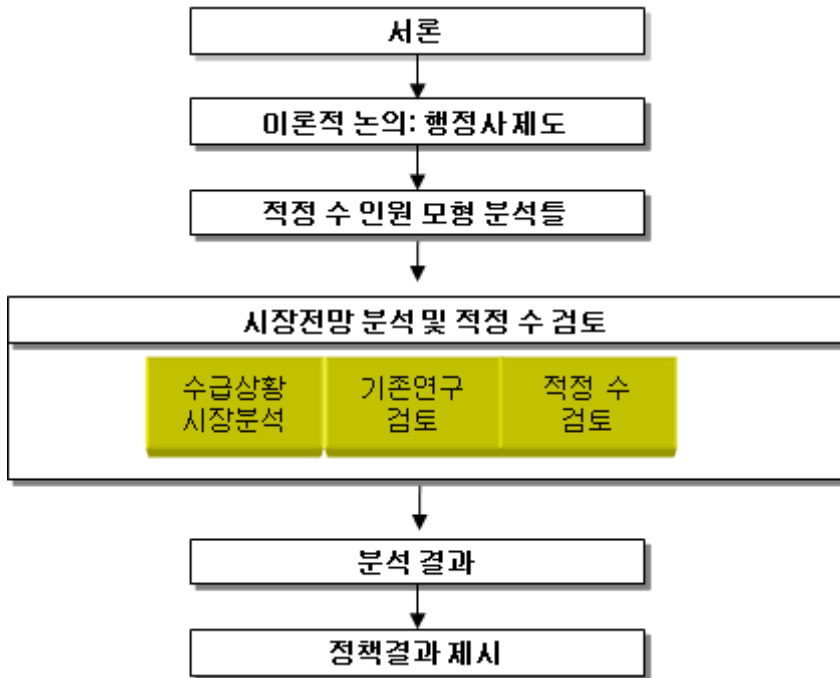
1.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 행정사 관련 선행연구 및 타 자격사 연구내용 검토
 - － 행정사 관련 기초자료 분석
 - － 행정사 관련 시계열 분석 및 예측(회귀분석 등 활용)
 - － 행정사 응시수수료 적정가 예측
- 시간적 범위
 - － 과제수행 기간
 - 2012. 3 - 2012. 8 : 5개월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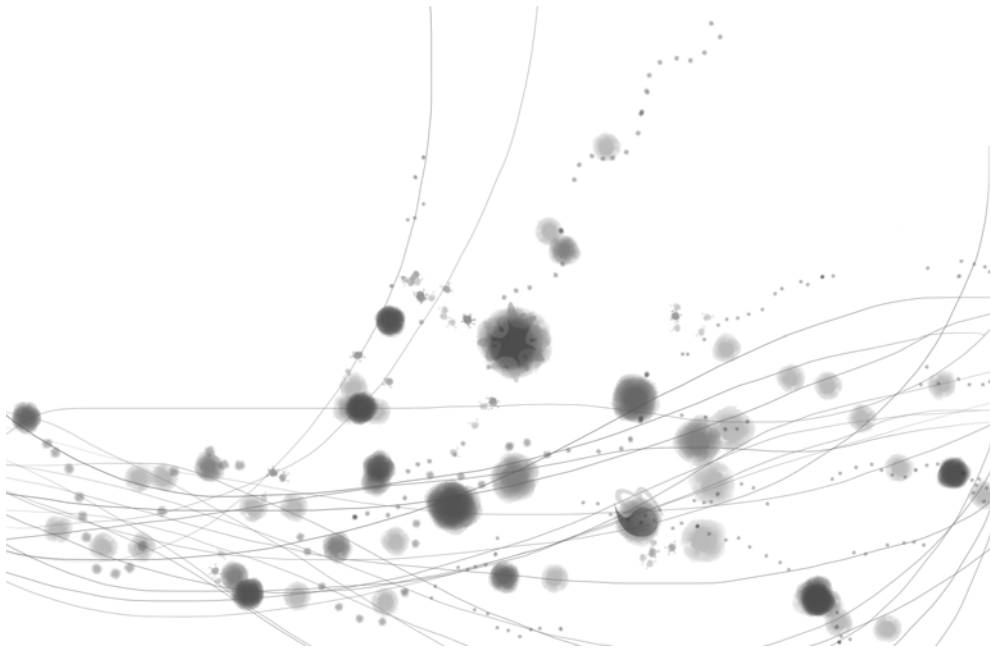
- 행정사 및 타 자격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 － 국내외 연구보고서·연구논문 그리고 내부자료 검토
- 행정사 최소선발인원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 － 행정사 관련 부처 내부자료 및 기타 자료를 통해 기초자료 분석
- 행정사 적정인원 도출을 위한 시계열분석 실시
 - －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결과 도출 및 시뮬레이션
- 행정사 응시수수료 적정가 예측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1절 행정사의 의의
제2절 행정사 제도 검토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1절 행정사의 의의

- 행정학과 측면에서 보면, 정책분석평가사, 행정관리사 등 행정학 관련 자격증이 행정학 전공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기는 하나 이들 자격증이 곧바로 돈버는 일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한계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개업을 할 수 있고 관련 사무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행정사 자격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국행정학회는 밝히고 있음
-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 퇴임 공무원들의 은퇴 후 설계를 위한 차원에서도 행정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공무원들이 30년 이상을 보낸 직업세계는 관료적이고 기능적인 조직유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반면 은퇴 후 일상생활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구조 및 기업구조의 맥락을 벗어나 스스로 개인과 가족의 삶을 재편성하고 은퇴 후의 생활에 적응해야 함
 - 퇴직을 기점으로 개인에게는 역할과 지위의 변화, 수입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환경의 변화 등이 초래됨. 중앙공무원의 경우 어느 정도 공직 퇴임 후 직장 탐색이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퇴임 후 적당한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아 퇴임을 5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부터는 심리적 안녕감이 떨어져 생산성 저하의 원

인이 되기도 함

- 따라서 공직에서의 행정경험을 살리면서 퇴임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결국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행정사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행정사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 자격제도의 토대 마련이 필요함

제2절 행정사 제도 검토

1. 행정사 자격 관련 규정

-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제출 또는 대행하는 자격사,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할 수 없음
- 관계 법령 : 행정사법(본문 38조, 부칙), 동법 시행령(본문 17조, 부칙) 및 시행규칙(본문 8조, 부칙)
 - 법 제정('61.9.23) 이후 12차(최종 '11.3.8)에 걸쳐 개정
 - ※ 명칭변경(행정서사 → 행정사) : ' 95.1.5 제5차 개정시 변경

<제도연혁>

- ▶ 1961. 9.23(법 제정) : 허가(시·도지사)
- ▶ 1975.12.31(법 전문개정) : 허가(시·도지사), 행정사회 설립
- ▶ 1995. 1. 5(법 전문개정) : 등록(대한행정사회)
- ▶ 1999. 5.25(법 전문개정) : 신고(시장, 군수, 구청장)
- ▶ 2010. 4.29(위헌확인)

- 행정사 자격 :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 기존에는 자격시험제도는 있었으나 그동안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격시험 전부면제대상자인 일정경력의 공무원 등에게 신고 후 행정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었음
 - 헌법소원의 결과 위헌으로 결과가 나타나서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함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행정사 자격시험
 -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함
 -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험의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

- 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함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함
- 합격결정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행정사의 수급상 필요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공고시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2. 행정사의 업무

- 행정사의 업무 관련 규정은 다음 <표 2-1>과 같음

<표 2-1> 행정사의 업무

법	시행령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

법	시행령
<p>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p> <p>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p> <p>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p>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p> <p>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p> <p>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p> <p>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p> <p>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p> <p>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p> <p>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하는 일</p> <p>제3조(행정사의 종류 및 업무구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3></p> <p>1. 일반행정사 : 법 제2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행정사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p> <p>2. 기술행정사 :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법 제2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p> <p>3. 외국어번역행정사 :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p>

○ 일반행정사

－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 자격사의 업무 범위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

- 1)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작성
 - ▶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출생, 사망, 이혼 등), 자동차등록 관련서류, 합의서, 광업 권등록 관련서류
 - ▶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 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 2) 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 ▶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 3)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 ▶ 채권 양도증명서, 부동산 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 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 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재산상속 지분권 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서, 전부채권 포기각서, 사실확인 보증각서, 내용증명 통고서 등
- 4)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 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등
- 5)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6) 행정심판 청구서류, 소청심사 청구서류,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류,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서류,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의 심사청구 서류, 국민건강 심사청구 서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 소비자 피해 구제 청구 서

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서류, 감사처분 심사청구 서류, 단체·조합·법인설립 서류 등

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청구사항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으로서 다른 법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일

- 7)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하는 일
- 8)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하는 일

○ 기술행정사

1) 항만관련 업무

- 항만관리에 관한 업무, 선원수첩 업무, 일반석박(여객선, 유조선, 화물선 등)에 관한 각종 청구서류 작성, 제출하는 일

2) 수산관련 업무

- 어업권(양식면허)과 선박의 어업허가권 이전에 관한 업무(어업권은 토지권에 준용함)
- 어선에 관한 업무(매매(임대차)계약서 작성, 어선의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어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어업권 이전에 관한 약정서 작성, 어선의 건조(개조)발주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어획물운반선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해상화물 운송사업등록(면허) 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어선검사증서개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어선의 소유자 및 선적항변경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3) 해운 및 해난심판 청구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는 일

○ 외국어번역행정사

1)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2)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신고 등 민원사무에 관한 각종 서류의 번역 및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3) 행정사 현황

○ 행정사 현황 : 6,984명(11.12.31 기준)

- 종류별 : 일반행정사 6,881, 외국어번역행정사 94, 기술행정사 9
- 출신별
 -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 약 40%이며, 그 외 경찰이 25%, 군인·군무원이 28%로 다수를 차지
 - 현장활동 경험이 많은 경찰 등이 현직 경험을 활용한 재취업, 전역 군인들의 재취업 수단으로서 행정사 진출 증가 예상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민간
			경찰	군인 /군무원	교육	기타		
'10년	7,505 (100%)	3,075 (41%)	1,981 (26.4%)	1,991 (26.5%)	142 (1.9%)	169 (2.2%)	43 (0.6%)	104 (1.4%)
'11년	6,984 (100%)	2,821 (40.4%)	1,775 (25.4%)	1,948 (27.9%)	135 (1.9%)	148 (2.1%)	42 (0.6%)	115 (1.7%)
전년 대비	△521	△254	△206	△43	△7	△21	△1	11

<표 2-2> 시·도별 행정사 현황

□ 5년간('07.12 ~+ '11.12)

(단위 : 명)

시도별	합계					일반행정사				
	'11.12	'10.12	'09.12	'08.12	'07.12	'11.12	'10.12	'09.12	'08.12	'07.12
계	6,984	7,505	7,207	6,996	6,858	6,881	7,394	7,094	6,890	6,761
서울	1716	1,665	1,531	1,445	1,385	1681	1,625	1,487	1,401	1,344
부산	388	396	414	398	394	359	366	384	371	370
대구	402	423	399	399	389	393	415	391	391	381
인천	340	439	428	423	361	338	437	426	420	358
광주	145	171	139	141	154	143	169	137	139	151
대전	182	302	281	227	206	181	298	277	223	203
울산	77	72	76	77	90	77	71	76	77	90

시도별	합계					일반행정사				
	'11.12	'10.12	'09.12	'08.12	'07.12	'11.12	'10.12	'09.12	'08.12	'07.12
경기	1543	1,725	1,633	1,566	1,555	1533	1,713	1,620	1,557	1,549
강원	234	263	257	268	264	233	262	256	267	263
충북	148	135	140	138	135	144	134	139	137	134
충남	286	305	289	300	289	284	303	287	299	288
전북	432	434	446	446	485	428	430	443	443	482
전남	263	294	303	303	290	262	293	302	302	289
경북	408	424	427	429	430	406	422	426	428	429
경남	358	391	384	376	372	357	390	383	375	371
제주	62	66	60	60	59	62	66	60	60	59

시도별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11.12	'10.12	'09.12	'08.12	'07.12	'11.12	'10.12	'09.12	'08.12	'07.12
계	94	102	104	99	90	9	9	9	7	7
서울	34	40	43	44	40	1	0	1	0	1
부산	23	24	24	22	20	6	6	6	5	4
대구	9	8	8	8	8	0	0		-	
인천	2	2	2	2	2	0	0		1	1
광주	2	2	2	2	3	0	0		-	
대전	1	4	4	4	3	0	0		-	
울산	0	0		-		0	1		-	
경기	10	12	13	9	6	0	0		-	
강원	1	1	1	1	1	0	0		-	
충북	4	1	1	1	1	0	0		-	
충남	0	0		-		2	2	2	1	1
전북	4	4	3	3	3	0	0		-	
전남	1	1	1	1	1	0	0		-	
경북	2	2	1	1	1	0	0		-	
경남	1	1	1	1	1	0	0		-	
제주	0	0		-		0	0		-	

3. 제12차 법률 주요 개정 내용

(1) 주요 내용

- 시험면제제도 개선 및 시험시행 의무화(제8조, 제9조)
 -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 경력자 등에 대한 시험전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1차시험 면제제도 강화와 함께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를 도입
 - ▶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제7조)하여 시험과목, 선발인원결정, 시험일부면제 대상자 요건 등 심의
 - ※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9인 이내로 구성 계획
- 행정사 업무신고 前 실무교육 의무화(제11조, 제25조)
 - 행정사 업무신고전 실무교육 의무화(제25조),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수리거부(안 제11조)
 - ※ 행정사 업무신고전 실무교육은 2개월 실시, 교육계획 시·도지사 수립, 교육실시 60일전까지 교육계획 공고, 30일전까지 교육신청 계획
- 행정사협회 설립(제26조 내지 제29조)
 - 창립총회 의결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
 - ▶ 복수의 협회설립 가능, 회원가입은 자율
 - ▶ 연혁 : 75.12.31(행정서사회) → 95.1.5(대한행정사회) → 99.5.24(폐지)
 - ※ 「대한행정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규정(부칙안 제5조)

(2) 세부 개정 내용

- 기존 : 14조, 부칙 → 개정안 : 38조, 부칙7조
-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제3조, 신설)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함
 -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6조제1항제1호)

○ 행정사 결격사유(제6조, 개정)

- 공무원 : 징계파면 후 2년 → 징계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신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 (신설)
- 행정사 자격취소 후 3년 (신설)

현 행		개 정
제7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신설> 4. 공무원으로서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제6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u>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5.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u> 6. <u>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 행정사자격 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 신설)

- 시험과목, 선발인원 결정, 시험 일부면제 대상자 요건 등 심의

○ 행정사 자격시험 및 시험의 면제(제8조, 제9조 개정)

-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함(제8조제1항)
- 자격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제8조제2항)
-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제8조제3항, 신설)
- 1차시험 면제(제9조제1항)

- 경력직 공무원 : 10년이상 근무한 자중 7급이상
- 특수경력직 공무원(별정직) : 10년이상 근무한 자중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외국어번역 종사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는 해당 번역업무 5년이상,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 1차시험과목 전부면제 및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제9조제2항)

- 경력직 공무원
 - 15년이상 근무한 자중 7급 상당,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
- 특수경력직 공무원(별정직)
 - 15년이상 근무한 자중 7급 상당,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
- 외국어번역 종사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는 해당 번역업무 7년 이상,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현 행	개정
<p><신설></p> <p>제6조(시험의 면제) ①제1차시험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특수경력직공무원은 7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 <p><신설></p>	<p>제8조(행정사자격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행정사자격시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 ②행정사자격시험은 1차,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③행정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p>제9조(시험의 면제) ①제1차시험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직공무원 10년이상 근무한 자중 7급 이상(특수경력직공무원은 7급이상) 근무한 자 - 외국어번역종사 경력자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해당 번역업무 5년이상,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근무한 자 ②제1차시험 전부면제 및 제2차시험 일부 면제 - 경력직공무원은 15년 이상 근무한자중 7급이상(특수경력직공무원은 7급이상)으로 근무한 자 - 5급이상 공무원은 5년이상 근무한자 - 외국어번역종사 경력자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해당 번역업무 7년이상,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근무한 자

⇒

②시험의 전부면제 -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외국어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는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석·박사의 경우에는 2년이상)	⇨	<삭제>
<신설>	부 칙 제3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 행정사 업무신고(제10조, 제11조, 개정)

▶연혁 : '61.9.23(시도지사 허가) → '95.1.5(대한행정사회 등록) → '99.5.24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현재(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준을 갖추어 신고
-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수리거부
 - ▶ 신고 후 3개월 기간 경과시 수리된 것으로 보며, 수리거부시에는 3개월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신고확인증 대여 등의 금지(제13조, 신설)

▶연혁 : '75.12.31 (허가증대여금지) → '95.1.5 (등록증대여금지) → '99.5.24 (폐지)

-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6조제1항)

○ 행정사사무소의 설치(제14조, 제15조, 신설)

-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음
 - ▶ 연혁 : '62.3.27 시행령(2개이상의 사무소를 가질 수 없음) → '95.7.20 시행령(사무소는 1개) → '99.8.19 시행령(폐지)

☞ 위반시 업무정지(제32조제1항제1호)

- 행정사는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행정사 인원내 분사무소 설치 가능)
 - ▶ 연혁 : '95.1.5 (3인이상 행정사로 합동사무소 설치) → '99.5.24 (폐지)
- 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중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명칭 사용
 - ▶ 연혁 : '75.12.31 (사무소의 명칭표시) → '99.5.24 (폐지)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8조제1항, 제15조제2항)

○ 행정사의 보수(제19조, 신설)

▶ 연혁 : '61.9.23 (허가관청 인가) → '75.12.31 (장관의 승인 후 도의 조례) → '95.1.5 (장관의 승인 후 대한행정사회 규정) → '99.5.24 (폐지)

- 행정사는 그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정해진 보수를 받음
- 보수의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함

☞ 위반시 업무정지(제32조제1항제3호)

○ 행정사의 교육(제25조, 신설)

▶ 연혁 : '61.9.23 (-) → '75.12.31 (행정서사의 교육) → '95.1.5 (행정사의 교육) → '99.5.24 (폐지)

- 행정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 하려면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제25조제1항)

☞ 교육받지 아니하고 신고시에는 수리거부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25조제2항)
☞ 교육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8조제2항)

○ 행정사협회 설립 및 감독(제26조, 신설)

▶연혁 : '61.9.23 (-) → '75.12.31 (행정서사회) → '95.1.5 (대한행정사회) → '99.5.24 (폐지)

- 행정사협회는 법인으로 함
- 창립총회 의결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 인가, 설립등기
- 정관 변경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

○ 행정사 자격취소(제30조,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행정사업무신고필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업무정지처분기간중 행정사업무를 한 경우
- 행정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자격취소시에는 청문을 실시

○ 행정사의 업무정지와 과태료처분(제32조, 제38조, 신설)

▶연혁 : '61.9.23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 '75.12.31 (업무정지명령) → '99.5.24 (폐지)

- 2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6월 이하 업무정지)
-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6월 이하 업무정지)
- 위임인으로부터 보수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6월 이하 업무정지)
- 행정사사무소 유사명칭사용, 자료제출 거부, 방해 등(500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처리부 미작성 등,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실시 연수 교육 미이수자(100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제33조, 신설)
 - 폐업신고 후 다시 업무신고시 폐업신고전의 행정사 지위 승계
 - 폐업신고전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위반행위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됨
- 행정사의 벌칙(제36조, 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 자격없이 행정사업무를 한 자 및 행정사(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자(신설)
 - 행정사업 신고필증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신설)
 - ▶ 연혁 : '61.9.23(-), '75.12.31(1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95.1.5(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99. 5.24(폐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 500만원)
 -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 '99.5.24(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업무상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 (신설)
 - ▶ 연혁 : '61.9.23(구류 또는 과료), '75.12.31(3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95.1.5(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99.5.24(폐지)
 - 업무정지처분 기간중 행정사업무를 한 자 (신설)
 - 100만원 이하의 벌금(신설)
 - 위촉에 관한 업무를 위반한 자 →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자
 - ▶ 연혁 : '61.9.23(구류 또는 과료), '75.12.31(3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95.1.5(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99.5.24(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타인 소송 등 업무개입 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업무 위임의 유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보수외 반대급부를 받은 자
- ▶ 연혁 : ’75.12.31(3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95.1.5(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99.5.24(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현 행	개정	
제12조(벌칙) ①행정사 자격없이 행정사업무를 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신설> ②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행정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신설> <신설> <신설> 2.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위촉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신설> 3. 법 제10조제5항의 업무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동조제6항의 부당한 업무 위촉의 유치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신설>	⇒	제36조(벌칙)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행정사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 2.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 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②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2. 업무상 알게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업무를 한 사람 ③100만원 이하의 벌금 1. 위임인으로부터 보수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사람 3.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 4.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사람 5.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사람
	⇒	

- 법 시행전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부칙)
 -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신설)
 - 행정사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신설)
 - 이 법 시행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인 사람과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 <1차시험 면제>
 - 경력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시험 전부면제>
 -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석사 및 박사의 경우에는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업무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4조, 신설)
- 대한행정사회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5조, 신설)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 신설)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 행정사 관련 기존 연구: 적정수 관련 연구 부재

- 기존에 행정사 관련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음
 -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던 2002년 보고서인 행

정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과 이상엽 교수가 2010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인 행정사 자격증의 필요성과 법률 개정 방향의 기존 연구가 있음

- 기존의 행정사 관련 연구는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행정사 자격제도를 활성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지는 않음
⇒ 따라서 기존의 자격증 관련 인원수를 산정한 연구를 찾아볼 수밖에 없음
 - 기존 연구에서의 한국행정학회 교육취업위원회의 입장은 행정학과의 위기를 타계할 목적으로 취업생을 늘리기 위한 의도가 강함
- 이러한 의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적정임금이 유지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안임

2. 전문자격인의 적정수 추정 연구들

(1)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¹⁾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5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위한 적절한 실무수습기관의 부족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음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연간 적정 선발인원수를 추정하였음
 - 첫째, 우리나라 전체의 외부감사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모두 감사하는데 몇 명의 공인회계사가 필요한지를 계산
 - 기업의 외부감사 업무는 공인회계사만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

1) 이 연구는 한국회계학회의 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보고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의 적정수준 및 실무 수습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하고 이에 대한 연구내용을 추가반영한 것임

리나라 전체의 감사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면,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인회계사의 숫자를 추정할 수 있음

- 둘째,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간(예: 국제회계사연맹 인정)의 수용능력을 추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의 적정 선발인원을 제안하는데, 이는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적절한 수습기관에서 수습시켜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추정방법임
 - 셋째, 총인구, 국내총생산(GDP), 자본시장의 규모, 경제운영방식 및 투명성 지표 등의 변수에 의한 회계사 인원 예측모형(예: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표본국가들(OECD 국가 중심)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회계사 수를 추정
 - 이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회귀모형에 기초하여 이들 국가의 평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간 몇 명의 회계사를 선발해야 하는지를 추정하는 방법임
 - 넷째, 좀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각 경제지표가 향후 일정기간 후(예: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경제상황에 걸맞는 회계사 수를 유지하려면 연간 몇 명의 회계사를 선발해야 하는지를 추정
- ⇒ 위와 같은 추정방법은 이론적 접근법에 불과하며, 연구결과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관련업 종사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197쪽) 회계전문가 1,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보완하였음

나. 우리나라의 회계사 현황 및 국제 비교

- 우리나라 회계사의 연도별 등록 및 개업인원 수의 추이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음

<표 2-3> 연도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록 및 개업 현황

(단위: 명)

연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록 합계
	등록	휴업	개업	등록	휴업	개업	
1997	4,175	790	3,385	3,272	48	3,224	7,399
1998	4,578	935	3,643	3,658	47	3,609	8,187
1999	4,987	1,185	3,798	3,999	49	3,950	8,937
2000	5,354	1,435	3,919	4,228	56	4,172	9,526
2001	5,890	1,502	4,388	4,671	72	4,599	10,489
2002	6,444	1,558	4,886	5,110	103	5,007	11,451
2003	7,148	1,753	5,395	5,811	431	5,380	12,528
2004	8,485	2,008	6,477	6,532	788	5,744	14,229
2005	9,462	2,294	7,168	7,221	1,034	6,187	16,683
2006	10,137	2,396	7,741	7,088	206	6,882	17,174
2007	11,068	2,831	8,237	7,521	241	7,280	18,668
2008	12,191	3,274	8,917	7,926	273	7,653	20,308
2009	13,098	3,672	9,426	8,354	296	8,058	21,796
2010	14,314	3,999	10,315	9,164	311	8,853	23,478
2011	15,120	4,562	10,558	9,284	325	8,959	24,404

* 자료: 정혜영 외(2006: 198)

* 2006년 이후 공인회계사 자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www.kicpa.or.kr>)참조

* 2006-2009년 세무사 자료는 『한국번호사백서 2010』의 50쪽 참조

* 2010.11-2011.3 세무사 자료는 세정신문 참조

- 표에 의하면, 2005년 12월31일 현재의 공인회계사 등록인원은 9,462명, 그리고 개업인원은 7,168명으로써 75.8%의 개업률을 보이고 있음
 - 세무사 등록인원은 7,221명, 그리고 개업인원은 6,187명으로써 85.7%의 개업률을 보이고 있어 공인회계사의 개업률보다 약 10% 포인트 높음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등록인원 합계는 16,683명, 그리고 개업인원 합계는 13,355명으로써 평균 개업률은 80.1%임
- 지난 8년간(1987-2005년) 등록인원수는 약2.24배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0.6%의 증가율을 보였음
- 국제비교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얻기 힘들어서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의 자료를 기초로 국가별 회계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 주요 비교대상 변수는 ‘인구10만명당 회계사 수’로 회계사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는 뉴질랜드(543.3명)이며, 가장 적은 국가는 그리스(4.8명)이고, 중위수(median)는 48.2명임
-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회계사 수(세무사와 합친 수로 14,229명)는 31.1명(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써 중위수인 48.2명보다 낮은 수준임
- 이 중 행정서사를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세리사 67,121명 포함)는 회계사 수가 80,307명으로 10만명당 회계사 수는 64.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국내 감사시장 규모에 기초한 연간 선발인원의 추정

- 기업의 외부감사 업무는 공인회계사만 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감사시장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면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인회계사의 숫자를 추정할 수 있음

< 추정모형 >

THOUR=기말감사 투입시간 + 반기검토 투입시간

- 공인회계사의 주요감사업무는 기말감사 업무와 반기검토 업무로 나눌 수 있음
 -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권수영 외, 2005)에 의하면, 기업별 감사투입시간은 기업규모, 산업 및 기업공개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함
- 우리나라의 모든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감사하는데 필요한 총감사시간(THOUR)은 4,997,324시간으로 추정되었음

- 공인회계사 1인이 주당 40시간씩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연간 1인당 근무 시간은 2,080시간(= 40시간 × 52주)임
 - 그런데 공인회계사들이 감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여러 업무 중에서 감사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중은 ‘감사비중 총합계/공인회계사의 총수입액’의 비율로 파악하였으며, 과거 7년간(1998-2004년)의 통계에 의하면, 이 비율은 평균적으로 0.3451이었다 함(한국상장사협의회 자료)
 - 공인회계사 1인의 연간감사업무 투입가능시간은 717.81시간(= 2080시간 × 0.3451)으로 추정할 수 있음

$$\begin{aligned} \text{적정 공인회계사 수} &= \text{총감사시간(THOUR)} \div \text{1인당 감사투입가능시간} \\ &= 4,997,324\text{시간} \div 717.81 \text{ 시간} = 6,934\text{명} \end{aligned}$$

라. 연간 필요 선발인원의 추정

- 이 연구에서의 관심은 2006년 이후의 연간 적정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추정하는 것으로 위의 2004년말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는 6,934명이었음
- 우리나라 감사시장의 과거 7년간(1998-2004년)의 총감사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1.80%였다고 함
 - 그런데 수입액의 증가는 물가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감사시장의 연간 총감사시간 증가율은 8.97%임

$$\begin{aligned} \text{연간 총감사시간 증가율} &= \text{연간 총감사수입증가율} - \text{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2) \\ &= 11.28\% - 2.83\% = 8.97\% \end{aligned}$$

- 이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차감한 우리나라 감사시장의 규모가 연간 8.97%

2) 한국은행 발표 자료 적용, 그리고 연평균 물가지수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음 즉, (2004년도 물가지수/1998년도 물가지수)^{1/6-1} = (114.7/97)^{1/6-1} = 2.83%

씩 증가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2005년 및 2006년말의 필요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각각 7,556명 및 8,234명으로 예측할 수 있음

$$2005년의\ 필요\ 공인중개사수 = 6,934 \times (1 + 0.0897) = 7,556명$$

$$2006년의\ 필요\ 공인중개사수 = 7,556 \times (1 + 0.0897) = 8,234명$$

- 2005년말의 우리나라 개업공인회계사 수는 7168명이기 때문에 388명 (=7,556명 - 7,168명)이 부족함
- 일시에 부족인원을 보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족인원을 향후 몇 년에 걸쳐 보충해야 하는지의 가정에 따라 연간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공인회계사 부족인원을 단기간에 걸쳐 줄속으로 보충하는 것보다는 좀더 장기적으로 보충함으로써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으로 1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정책을 권고함
 - 향후 1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보충한다는 가정(연간 38.8명씩 보충)을 설정할 경우, 2006년에 선발하여야 할 공인회계사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

$$2006년의\ 필요\ 선발인원 = [2006년\ 필요증가인원 + 부족\ 인원\ 보충] / \text{개업률} \\ = [(8,234명 - 7,556명)] + 38.8명] / 0.758 = 946명$$

※ 검토의견(私見): 2006년 필요증가인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시킨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공인회계사 개업률을 감안할 경우, 2006년에는 946명의 공인회계사를 선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이 연구는 주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2007년에는 1,026명, 2008년에는 1,113명을 선발해야 함

마. 국제비교를 통한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 추정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회계사의 역할은 주요 경제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회계업계는 총인구 대비 회계사 수의 비율에 의거하여 적정 회계사 수를 추정하여 왔음
- 이 연구에서는 총인구를 비롯하여 상장기업 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국민총생산, 경제운영제도, 투명성 지표 등의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한 종합 모형에 의하여 적정회계사 수를 분석

(2)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³⁾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공인노무사제도는 1984년말 입법화되어 2007년 11월말 현재까지 16차례의 시험을 통해 2,243명(노동행정경력자 584명 포함)의 공인노무사를 배출
-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및 법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의 수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됨
 - 퇴직연금제의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 공인노무사의 취약근로자 지원 등 노동관계법의 제·개정과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선발인원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음
- 1999년 이후부터 선진국 수준의 전문자격사 비율로 배출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시장수요에 따라 선발할 수 있었던 상대평가방식이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해당연도의 출제·채점의 난이도에 따라 일시에 많은 사람

3) 노동부(2007.12).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이 시험에 합격되거나 너무 적은 인원이 합격되는 등 합격인원 수의 편차가 심해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음

-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공인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심의하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시험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사전에 최소 합격인원을 공지하도록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수요와 공급 및 최소선발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했음

- 각종 통계분석과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
 - 공인노무사제도의 연혁, 최소합격인원제도의 의의, 공인노무사의 수급예측, 전문자격제도와와의 비교분석, 기업 및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한 공인노무사 선발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나. 공인노무사 수요추정

- ① 시계열 회귀추정방법
 - 수요함수는 시계열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관측값들간의 서로 연관성이 있어 분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Paris-Winsten 전환 회귀추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수요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합격자 규모의 추이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1차로 변수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음
 - 거시적 변수: GDP,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인구, 노사분규건수, 노동손실일, 노조조직률, 노동조합수, 노종조합조합원수

- 미시적 변수: 노동심판건수, 임금체불건수, 체불근로자수, 체불임금규모, 산재보험 수급자수, 고용보험 적용 징수사업장, 고용보험적용징수근로자, 실업급여지급자, 고용보험청구 및 처리

○ 총 16개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검증된 변수 8개를 이용하여 추정식을 만들

$$Y_t = \beta_1 + \beta_2 GDP_t + \beta_3 \text{경제성장률}_t + \beta_4 \text{노조조직률}_t + \beta_5 \text{노사분규건수}_t + \beta_6 \text{노동심판건수}_t + \beta_7 \text{산재보험적용징수사업장수}_t + \beta_8 \text{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_t$$

※ R²값은 0.572로 나타났음(이 모형이 실제 공인노무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

○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된 추정치와 실제 합격자수(실측치)를 비교하면 오차가 나타나고 있음

<표 2-4> 공인노무사 회귀식을 이용한 합격자수 산정 확인

연도	합격자수(실측치)	추정치	오차
1회(1986년)	111	65	46
2회(1989년)	28	23	5
3회(1991년)	31	32	-1
4회(1993년)	18	38	-20
5회(1995년)	42	34	8
6회(1997년)	43	34	9
7회(1998년)	37	79	-42
8회(1999년)	103	69	34
9회(2000년)	71	71	0
10회(2001년)	201	144	57
11회(2002년)	147	121	26
12회(2003년)	61	141	-80
13회(2004년)	275	271	4
14회(2005년)	140	292	-152
15회(2006년)	122	336	-214
합계	1,430	1,750	-320

* 노동부(2007: 36).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될수록 필요로 하는 공인노무사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공인노무사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규모와 관련되는 노동위원회 심판건수나 임금체불업체의 수 및 산재보험 수급자의 수 등은 공인노무사의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음
- 전체회귀식이 표현하는 설명력(R^2)에 비해 개별변수의 기여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나 공인노무사 수요의 규모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86년부터 추세를 바탕으로 도출된 회귀식을 통해 필요로 하는 공인노무사의 규모를 산정한 결과를 보면, 추정식은 2000년의 규모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인노무사 업무와 관련된 값들이 크게 증가하는 2000년대 중반이후에는 수요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실제 공인노무사 공급규모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출된 회귀식을 기준으로 관련데이터(독립변수)의 추정치를 이용해서 필요로 하는 공인노무사의 수요를 예측하는 단계로 이동하게 됨
- 이 연구는 2007년에 수행했던 연구이기에 2008년 이후의 예측치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예측치를 추정해야 값을 예측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변수들에 대한 추정치 연구가 없어 과거 시계열 자료를 시계열 분석방법인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추정
 - 가령, 1985년부터 파악된 노동위 심판건수는 시기별로 폭증하는 성격을 가진 데이터인데, 1988, 1989년 및 1998년 국가적 이슈와 관련하여 1.5배-2.4배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이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값과 가장 작은 관측치를 제외한 값을 중심으로 평균값을 산정한 결과 노동위 심판건수는 평균 13.8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기의 자료를 추정함수식에 대입시키면 공인노무사 수요가 산출되며, 도출된 회귀식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요를 추정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필요로 하는 공인노무사 수가 1,954명인데, 공급된 인력은 1,659명으로 약 92.16%의 충족률로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회귀식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에 걸쳐 필요한 공인노무사의 수는 1,529명의 수요가 필요해 연간 평균 380여명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잉공급을 감안하면 연간 350명 정도의 공급이 필요함

<표 2-5> 공인노무사 수요예측(2008-2012)

(단위: 명)

연 도 별	공인노무사 실측치	공인노무사 소요추정치	향후 배출추정치
2007년	229	204	229
2008년		253	273
2009년		320	320
2010년		413	403
2011년		543	508
합 계	-	1,733 ⁴⁾	1,733

* 노동부(2007: 40).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2006년 12월말 시점 현재 공인노무사의 실제 배출 인원은 1,430명으로 회귀함수식으로부터 산출한 추정치 1,750명에 비해 320명이 과소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같은 결과가 생긴 이유는 2003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노무관련 소송에 비해 공인노무사의 선발방식은 절대평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5년 동안 추정 적정인원수에 비해 과소 선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공인노무사의 향후 2011년까지의 배출계획은 2008년은 전년도까지 과소

4) 이 추정치는 시험합격자 및 노동행정경력자 자동부여자를 포함한 추정치임

공급된 수요를 맞추기 위해 273명의 배출이 적정한 수이고, 2009년부터 320명, 2010년 403명, 2011년 508명이 적정한 수요로 예측할 수 있음

- 이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족한 공인노무사의 급격한 확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관리방안의 설계와 기타 노무관련 소송의 제도변화의 가능성이며, 특히 노무관련 소송에 대한 범위 확대나 변호사의 업무대행권 등 제도적인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수요추정치 중에서 기존 자격자 중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함
 - 이같은 사유로는 사망, 해외이주, 등록반납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임
 - 자연탈락자수 만큼 수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계가 정확하게 인용된 것이 없어 다음과 같이 추정했음

<표 2-6> 공인노무사 자격탈락자 추정치(2008-2011)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격자수	1683	1750	1843	1973
탈락율	0.006	0.006	0.006	0.006
탈락자수	10	11	11	12

* 노동부(2007: 41).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 거시변수를 통해 추정한 공인노무사 예측치와 기존 자격자의 등록반납자수를 합하면 전체 공인노무사의 수요라 할 수 있음
 - 다만 노동행정경력자들에 대한 자동부여는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사람이 자동부여신청을 하는 경우 공급예측의 규모에 오차범위가 커지며, 시험합격자의 수를 줄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정책적 선택이 중요함
- 최소합격인원은 현재 선발인원에서 350명 선으로 급격히 늘리는 것보다

여러 제도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2008년에는 250명 선을 최소선발인원으로 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2008년에는 250명 선을 최소선발인원으로 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결론을 내림

(3)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⁵⁾

가. 산출의 기준

- ‘적정 변호사의 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변호사의 수’를 유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최적 효율을 실현하는데 있음
 - 사회·경제적 최적 효율 극대화는 소비자 효율과 공급자 효율이 함께 공존할 때 이루어지므로 ‘적정 변호사의 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
- 현실적으로 적정 변호사의 수를 연역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며 사회경제적 최적효율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의 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임
-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불필요한 인원은 퇴출되어 결국은 적정변호사의 수가 존재하게 될 것이므로 국가는 제한없이 이를 양산하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음

나. 산출의 방법

< 제1설 >

- 제1설은 20-25년 前 일본 변호사의 업무량과 등치시켜 현재의 우리나라의 적정 변호사 수를 추론하는 방법임

5) 서울지방변호사회(2006).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

① 변호사 적정 수에 대한 현실인식

- 변호사 적정 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현재 변호사의 사실상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변호사에 대한 수요이고, 다른 하나는 법조선진화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변호사의 이상적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전제로 추산한 변호사에 대한 수요임
- 법조선진화라는 가치지향적 목표와 부합하는 변호사의 수를 적정한 변호사 수로 추정하는데 있어서는 변호사에 대한 잠재된 수요 및 변화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장래의 수요를 동시에 감안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라는 전문직 노동시장은 심각한 수급 불균형 상태에 있고 변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임
- 우리나라 변호사의 수입료는 GNP수준을 감안할 때 독일의 약 40배, 미국의 약 12배인데 변호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대량증원이 불가피함

② 변호사 적정 수 산정방법⁶⁾

- (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수출입·저축과 투자 그리고 고용구조의 측면은 20-25년전의 일본과 유사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조체계에는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20-25년 전 일본 변호사의 업무량과 등치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1993년 우리나라 적정 변호사 수를 추산하고, 이어 변호사의 업무량 증가율에 관한 일정한 가정을 도입하여 1995년 및 2000년의 적정 변호사 수를 추산
- (나) 이 견해에 따라 산출된 1995년 적정 법조인 수는 21,251명, 2000년에는 27,898명인데, 대법원이 예상하는 2000년 법조인 수는 6,565명(변호사 포함)임

6) 조우현(1995). 법조인 적정 수에 대한 소고. 법과 사회, 11권.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따라서 2000년까지 부족한 법조인 21,333명을 추가적으로 충원하기 위한 법조인 공급계획의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지만, 2000년까지 부족한 법조인 21,333명을 추가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년을 늦추어 2010년까지 이를 증원하자면 지금부터 15년간 매년 1,422명의 추가적 증원이 필요함

(다) 1995년 현재 5,565명의 법조인 수를 2000년까지 27,898명으로 증대시키는 데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변호사를 1995년 현재 3,118명에서 2000년까지 19,112명으로 증대시키는데 있다고 할 것임

- 2000년까지 약 16,000명의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기존의 법조인 공급체계로서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10년을 늦추어서 2010년까지 1년에 최소한 1,700명 이상의 법조인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조인의 공급체계를 개혁해야 함

< 제2설 >

- 제2설은 송무사건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법과 시계열분석법에 의하여 적정변호사 수를 산출하는 방법임

① 변호사 적정 수 산정방법

(가)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함

- 첫째, 모든 소송사건의 각 당사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변호사의 수요는 민사사건으로는 본안과 신청·항고 및 재항고 등의 사건을 모두 포함시키고, 가사사건으로는 가사소송과 가시비송 사건을 전부 포함시키며, 행정소송은 전부를, 형사사건은 제1심공판사건·항소 및 상고사건·재정신청과 소년사건을 모두 포함시킨 사건의 수라고 가정
- 둘째, 변호사 1인당 담당 가능한 사건의 수는 1983년부터 1993년까지의 평균 수임건수가 연79건인 바, 이는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우리나라와 법

-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변호사 1인당 평균수임건수인 연 35건으로 가정
-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전년도 1인당 GNP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함

$$[Y_t(\text{t년도의 변호사의 수요}) = 426684.2 + 36.34 \times \text{GNP/capital}(t-1) \text{ (t는 연도를 의미)}]$$

- (나) 위 산식에 1인당 GNP의 수치를 순차적으로 대입함으로써 1인당 GNP에 따른 변호사 수를 산정하고, 변호사가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5건으로 가정하여 장래에 필요한 변호사 수를 산정
- 즉,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1996년)가 되는 그 다음해(1997년)의 변호사 수요는 예상되는 사건 수가 839,094건(최저 745,734건, 최대 932,453건)이 되므로 이를 변호사 1인당 1년간 수임건수(35건)로 나누면 대략 최저 21,307명, 최대 26,642명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옴
 - 이에 의하면 변호사의 직역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최악의 가정을 하더라도 2000년까지는 약 28,000명 이상, 2005년까지는 약 35,0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존재하여야 국민들의 송무관련 법률서비스의 수요를 원활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옴
 - 더 나아가 2010년 우리나라 송무시장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993년 현재보다 10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바, 2010년에 1993년 현재의 변호사 수 2,685명의 7배인 19,0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존재하면 여전히 35%의 사건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현재의 보수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소송당사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54,285명(= 19,000명의 변호사 ÷ 0.35)의 변호사가 필요하게 됨
 - 다만, 급격한 증원은 법조계는 물론이고 사회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2010년 기준으로 약 30,000 - 35,000명을 목표로 변호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인 증원의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최적대안

- 상기의 관점에서 이진록 변호사가 1998년의 법률시장을 기준으로 GDP 성장률과 사건증가율을 고려하여 특정시점(2010년)의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한 계산법은 대량증원론의 결점(장래 법률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와 모든 법률사건에 변호사가 선임된다는 가상적·일반적 수요를 전제로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고 있는 점)을 많은 부분에서 보완하고 있어 위 산출의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구체적 산출과정의 예

- 이 계산법은 송무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 직분과 임무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적정 변호사 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당연도 소송사건을 민사본안사건·가사사건·형사사건·행정사건으로 구분하여 실제 선임률을 측정한 후, 국민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선임률을 적용하여 필요한 변호사 총수를 계산
 - 둘째, 필요한 변호사 총수를 변호사 1인당 연간 적정 처리건수로 나누어 당해연도의 적정 변호사 수를 산출
 - 셋째, 당해연도 적정 변호사 수에 GDP성장률과 사건증가율 등을 고려하고 바람직한 변호사 증가율을 곱하여 목표연도 변호사 수를 산출
 - 넷째, 목표연도 변호사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별 법조인원 적정 선발인원을 구체적으로 추산

(1) 현 법률시장에서 바람직한 선임률 적용시 필요한 변호사의 수

- 1998년도 민사1심 합의이상 사건(83,634건), 민사1심 단독사건(173,691건), 가사(45,153건), 형사사건(263,101건), 행정사건(13,053건) 등 각 사

건 수에 바람직한 변호사 선임률을 적용할 경우 선임에 필요한 변호사 총수는 342,436명에서 409,807명으로 늘어날 것임

- 1998년도에 필요한 변호사 총수는 409,807명에 변호사 1인당 연간 적정 처리건수를 72건으로 나누면 1998년도 적정 변호사 수는 5,692명이 되는 바, 1998년 현재 등록된 변호사 3,493명보다 2,199명이 많은 수치임
- 변호사 1인당 적정 처리건수를 몇 건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정 변호사 수가 달라지는 바, 변호사 사무실 유지비·소용경비·근무시간 등을 종합할 때 변호사 1인당 연간 적정 처리건수는 약72건으로 가정하였음
 - 사무장·사무원·여직원 각 1명을 두는 경우의 인건비 합계 월 350만원 내지 450만원, 임대료 및 건물관리비 월300만원 내지 400만원, 기초 경비 100만원 내지 150만원, 세금 150만원 내지 200만원 등으로 가정할 경우, 변호사가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는 월평균 900만원 내지 1,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 변호사가 전문인력으로서 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과 비슷한 수준인 월500만원의 순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월 1,400만원 내지 1,700만원 정도의 총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월 1,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당 수입료가 250만원일 경우에 월 6건, 연 72건 정도의 사건을 수입하여야 함

(2) 목표연도(2010년)에 필요한 변호사 수 및 적정 선발인원

- GDP성장률과 사건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약 5%의 변호사 증원이 바람직하므로 2010년의 적정 변호사 수는 1998년의 5,692명에서 매년 5%씩 증가한 10,225명이라고 할 것임
- 판검사의 경우 업무개선 및 제도개혁에 의하여 업무부담을 대폭 줄이고 있고 증원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으므로 대폭적인 증원을 기대할 수 없으나 아직도 업무량에 비하여 숫자가 적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0년에는 약4,500명의 판·검사(판사 2,600명, 검사 1,900명)가 임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본 2010년의 적정 변호인수는 14,725명(적정 변호사 수 10,225명 + 적정 판검사 수 4,500명) 정도라고 할 수 있음

<표 2-7> 변호사 선발인원과 적정 변호사 수

(단위: 명)

연도	합격자수	등록 변호사수	적정 변호사수	판검사	적정 법조인수	700명 선발시
1998	700	3,493	5,692	2,597	8,289	6,090
1999	709	3,887	5,997]]	6,800
2000	801	4,228	6,276]]	7,466
2001	991	4,618	6,590]]	8,169
2002	998	5,073	6,920]]	8,828
2003	905	6,127	7,266]]	9,524
2004]]	7,629]]	10,176
2005]]	8,010]]	10,865
2006]]	8,411]]	11,511
2007]]	8,832]]	12,193
2008]]	9,274]]	12,832
2009]]	9,738	∨	∨	13,508
2010	∨	∨	10,225	4,500	14,725	14,140

법조인 수 = 전년도 법조인 × (1-사망률/100) + 사법연수원 수료자

매년도 적정 변호사 수 = 전년도 적정 변호사 수 × 105%

사망률은 '94년도 사망률 0.52% 적용

군법무관은 격년제 40명 선발기준

'98년 판·검사 수 2,597명은 적정 판·검사 현원 수임을 전제로 함

* 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2006: 91)

라. 소결론

(1) 대량증원론의 계산법과 비교한 장점

- 상기의 계산법은 바람직한 선임률 적용시 1998년의 적정 변호사 수가 5,692명임을 전제로 GDP증가율과 사건증가율을 고려하여 2010년 적정

변호사 수 10,225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사법 시험 합격자를 매년 700명씩 선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 이러한 결론에 대해 대량증원론자들은 송무사건 외에 법률자문료 등과 같은 기타 수입과 앞으로 예상되는 법률시장의 확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가할 것이 예상됨
- 또한 변호사 1인당 적정 처리건수를 몇 건으로 볼 것인지, 적정 처리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사무실 유지비용과 사건 1인당 적정 수입료 등을 얼마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법률시장은 대량증원론자들의 주장처럼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변호사들이 열악한 법률시장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률자문 등 송무 외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의 법률문화와 국민의 법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법률시장 확대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임
- 기업 등에 대한 법률자문 활동이 활발해지더라도 이는 법정에서의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 부분 송무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변호사들이 정부기관이나 기업, 병원, 시민단체 등에 진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현실의 벽은 간단하지 않고, 가사 진출한다 하더라도 결국 기업이나 단체들의 소송업무를 취급하게 될 것이므로 송무에 필요한 변호사 수와 중복될 것임
- 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들보다 훨씬 많은 유사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법률시장이 개방될 것이고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우리 변호사들의 법률시장은 크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음

- 결국 법률시장의 확대는 불확실하고 가사 있더라도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불확실하고 그다지 가능성도 없는 법률시장의 확대라는 가상적 수요는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편이 보다 현실적인 계산법이 될 수 있음
- ‘적정 변호사 수’는 가상적·일반적 수요가 아니라 구체적 수요를 기초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위 계산법은 대량증원론자들의 계산법보다 훨씬 더 ‘적정 변호사 수’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음

(2) 현실 적용상의 한계

- 위 계산법이 대량증원론자들의 계산법보다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는데 훨씬 근접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법률시장의 현실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음
- 먼저 위 계산법은 변호사가 전문인력으로서 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과 비슷한 수준인 월500만원의 순수입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1998년도 변호사 1인당 적정사건처리건수를 연 72건, 월6건임을 전제로 바람직한 선임률 적용시 그 선임에 필요한 변호사를 계산하여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고 있음
- 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1998년도 회원 1인당 수입건수가 연 65.1건, 월 5.45건으로 위 계산법이 전제하고 있는 변호사1인당 적정 사건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1998년 현재 등록 변호사 수 3,493명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줌
- 다시 말해 1998년부터는 변호사 수의 증가가 아니라 적정한 변호사 수의 유지 또는 감축을 논하여야 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계산법은 희망 사항에 불과한 바람직한 선임률을 근거로 1998년 적정 변호사 수를 5,692명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현실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국민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는 사법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선임률이 아니라 바람직한 선임률이 적용된 법률시장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바람직한 선임률을 적용할 수 있게 법률시장이 확대되고 따라서 국민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문제는 우리의 법률문화와 국민의 법 인식을 고려할 때 매년 바람직한 선임률 65-70% 적용시와 같은 증가율로 법률시장이 실제로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 바람직한 선임률대로 법률시장이 확대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전제로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인원을 계산한다면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음

(3) 변호사 적정 선발인원

-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를 700명씩 선발하여야 한다는 위 계산법은 현재의 우리 법률문화 및 국민의 법 인식과 법률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결코 적절한 선발인원이라고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그 동안 실제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996년 502명이던 것이 매년 100명씩 늘어나 1997년 604명, 1998년 700명, 1999년 709명, 2000년 801명, 그리고 2001년부터는 매년 1,000명씩 선발됨으로써 변호사 수는 법률시장의 수용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 그 결과, 변호사 1인당 사건처리건수는 1998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02년말 현재 연 47.7건, 월 3.97건에 불과하게 되었음
- 이는 위 계산법이 제시한 변호사 1인당 적정사건처리건수인 연72건, 월

6건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이르나 ‘사시재 수생’ 또는 ‘변호사 백수’의 등장은 결국 이러한 급격한 증원의 결과라고 할 것임

- 그렇다면 적정 변호사 수는 얼마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를 몇 명씩 선발하여야 하는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시험 합격자 700명은 바람직한 선임률이 적용되는 가상적인 법률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500명으로 선발된 1996년에 이미 변호사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연69.1건, 월 5.75건으로 적정 사건처리건수인 연72건, 월 6건을 밑도는 수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인원은 1998년부터라도 500명 선을 유지하는 것이 법률시장의 현실에 가장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됨
- 다만, 이 경우 적정 변호사 수는 사회·경제적 최적효용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함에도 변호사의 적정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 1인당 적정 사건처리건수에 치우친 나머지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의 확대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록 가상적인 것이지만 바람직한 선임률을 고려한 적정 변호사 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3.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 사례: 부동산중개업

(1) 문제점

- 공인중개사는 1985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제1회 자격시험에서 6만2백77명을 첫 배출해서 2004년(15회 추가시험 포함)까지 총20만7천5백68명의 자격자를 배출했음
 - 2005년 10월30일에 치러진 16회 시험에서 1차시험 9만9천5백4명이 응시했고(접수 14만1천3백92명) 2차 응시는 8만1천6백32명(접수 15

만1천6백36명)이었고 15%의 합격을 보장하는 시험이어서 합격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음

- 국가자격시험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자격자를 배출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격이 되고 말았음
- 공인중개사가 매년 몇 만명씩 배출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0명중 7명이 자격증 취득을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은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국민일보, 2005년 3월 12일자 참조)
- 부동산중개업자는 7만2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창업과 폐업이 자유로워 2004년의 경우 휴·폐업 수가 매달 4천에서 5천에 달하고 있었음
- 합격자가 늘면 부동산중개업자도 늘기 마련으로, 99년 4만4천여명이던 중개업자는 2004년 7만2천여명으로 5년 사이에 63%나 증가했음
 -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후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의 수가 급증해서, 99년 중개업자 중 공인중개사는 2만4천여명에 이르던 것이 2004년에는 5만7천여명으로 2.4배 늘었음
- 85년 자격시험 실시 후 합격자들의 창업률은 2004년 32.6%이며⁷⁾, 반면 중개인 수는 같은 기간에 1만9천8백여명에서 1만4천3백여명으로 28% 줄었는데 그 이유는 중개인들의 사망과 고령화 때문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기 시작한 85년 이전부터 소개영업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해오던 업자들로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 공인중개사제도가 개정을 거듭하면서 15회 추가까지 총 20만7천5백68명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했음

7) 한경비즈니스. 2005년 4월 18일. 통권 제489호. p.22

- 2004년 15회 자격시험을 치렀으나 난이도 실패로 1%의 합격률(1천2백58명 합격)을 나타내서,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발로 사상처음으로 추가시험을 치러 3만여명이 자격을 취득한 사태도 있었음
- 한국토지행정학회가 조사한 공인중개사의 수입면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월 평균 65만원에서 1백50만원이라는 답이 32.4%,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이하 라는 응답이 16.9%로 나타났음
 - 일반국민들은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으나 지방과 대도시의 중개업자들의 수입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음

(2) 공인중개사 과포화 산정논리

- 2006년 10월 26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토지거래 중개수수료를 0.4%와 0.5% 등 2가지로 나누어 적정 사무소수를 산출했을 경우 각각 5만947개와 6만708개로 분석됐음
- 부동산 중개업계가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중개수수료를 0.4%로 적용했을 경우 적정 중개사무소수는 5만947개로 조사됐음
 - 중개사무소의 적정이윤확보를 위해서는 토지거래 중개수수료 0.4% 적용시 300가구당 1개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지난 2003년 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당시 전국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는 6만8천193개로 나타났음
 - 이는 수수료 0.4%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적정중개업소수에 비해 1만7천246개가, 0.5% 적용시에는 7천485개가 각각 많은 것임
- 중개수수료를 0.4%와 0.5%로 적용해 적정 중개업소수를 산출한 것은 한 가구당 중개사무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의 평균

연간소득과 비교해 중개사무소의 적정한 영업이익 유지를 위한 고객가구 수를 산정한 것임

- a. 중개수수료를 0.4%로 적용했을 경우 2003년 말 전국중개사무소 총수입은 4조4천301억1천312만원, 0.5%적용시는 4조7천44억7천39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이 금액은 전국 중개사무소 연간 총 운영비용과 연간 총 영업이익을 더한 수치임
- b. 연간 총 운영비용과 연간 총 영업이익은 ▲ 수수료 0.4% 적용시는 2조6천326억9천만원과 1조7천974억2천312만원 ▲ 0.5% 적용시는 2조6천326억6천900만원과 2조1천417억8천390만원으로 산출됐음
- c. 적정 중개사무소는 도시근로자 연간평균소득을 3천528만312원으로 가정하고 수수료 0.4%를 적용했을 경우는 5만947개(연간 총 영업이익 1조7천 974억원÷3천528만312만원), 0.5% 적용시에는 6만708개(연간 총 영업이익 2조1천417억8천만원÷3천528만312만원)로 산정됐음
- d. 중개사무소의 적정한 영업 이익 유지를 위한 고객 가구수는 300가구로 이는 도시근로자 평균 연간소득(3천528만31원)÷(1조7천974억(전국 중개사무소의 연간 총 영업이익)÷1천5백 29만7천892(전국가구수)가구)를 산정한 것임

- 수수료를 0.5%로 적용했을 경우 252가구당 1개의 중개업소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3년 말 현재 중개업소수와 비교했을 경우는 1개의 중개사무소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개업소수는 227개로 분석돼 부동산 중개업의 시장이 과포화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음
 - 한편 토지거래 중개수수료는 현행 법령상 0.2%에서 0.9%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거래되고 있음

(3) 비교를 통한 과포화 산정논리

가. 비교논리

- 당시 건교부에서 2006. 6월에 조사발표한 중개업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2005년도 중개업자수 76,164명(공인중개사62,432명, 중개인13,203명,

중개법인 529)

- 1999년도 중개업자수 44,428 <외환위기 직후 과다배출 초기> (공인 중개사 24,131명, 중개인19,879명, 중개법인 418개)
- 1995년도 중개업자수 41,189 <외환위기전 부동산 정상적 수준> (공인중개사 14,373명, 중개인26,523명, 중개법인 293개)
- 1995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10년 사이에 중개업자수는 41,189개에서 76,164개로 무려 34,975명(증가율 185%)이나 대폭 증가하였음
-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개업 중개인수는 26,523명에서 13,203명으로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개업 공인중개사수는 14,373명에서 62,432명으로 무려 434%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인 것임
- 참고로 우리나라 2005년도 추계인구를 약 4,800만명으로 볼 때 개업변호사 수는 6,299명(총 변호사수는 약 11,000명임 - 2004년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약 13명 수준
- 세무사는 2006년 8월 현재 총7,252명중 개업중인 세무사수는 7,04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약15명 수준
- 인구 10만명당 중개업자수는 159명으로 세무사나 변호사에 비해 10배나 많은 실정이며, 이는 10년전인 1995년에 약90명 및 6년전인 1999년의 약 95명에 비해서도 현격히 과다한 수준임

나. 구체적인 비교

-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주택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구대비 공인중개사숫자로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타 자격사와 비교하여 할 것인지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다배출을 주장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거나, 아니면 모두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과다배출을 주장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함

- 2005년12월말 현재 공인중개사의 숫자 224.000여명이며, 중개업소는 75.500여 업소(공인중개사61.500, 중개인13.500, 법인500) 중개인을 빼면 아직도 약162.000명의 공인중개사들이 미개업 상태라고 볼 수 있음

(4) 시사점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첫 해에 무려 6만2백77명의 자격자를 배출하고 제도 도입 이전부터 소개영업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중개인들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당시 신고된 중개인은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할 수 있음
- 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당시 중개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중개인은 4만 1천7백21명이었으나 이후에도 86년과 89년에 몇 천명씩 중개인 수가 늘어났음
- 공인중개사의 과잉선발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은 현재의 행정사 적정 수 산정을 연구함에 있어 귀감을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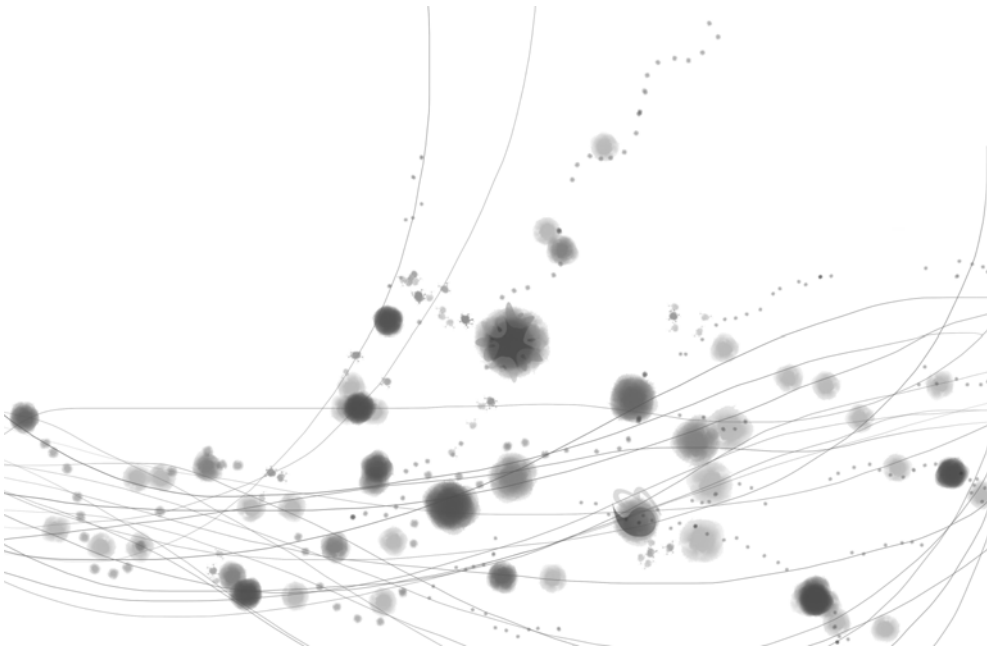
제 3 장

행정사 시장전망 분석

제1절 인식상의 조사결과

제2절 타 전문자격과의 선발제도 비교

제3절 일본의 행정사제도 사례



제 3 장

행정사 시장전망 분석

제1절 인식상의 조사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 이 연구는 2013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 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본 업무를 맡아 서비스하고 있는 행정사를 통한 업무실태 파악과 함께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통해 앞으로 행정사 시험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확보하여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음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대상은 행정사 시험이 실시됨으로써 실제적인 업무영역 및 서비스시장의 변화를 직접 받게 되는 현재 개업 중인 행정사와 현행 행정사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으로 나누어 기획하였으며, 각각 500명씩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기로 하였음
- 조사방법은 행정사의 경우 현재 전체 행정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대한행정사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지회 소속의 개업 중인 행정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한행정사협회의 공문을 각 지회로 발송하여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화를 통해 많은 행정사들의 참여를 독려했음

- 담당공무원의 경우 행정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담당 사무원이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응답을 받았음

(3) 조사기간 및 분석방법

- 조사는 당초 대한행정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공무원들의 일사분란한 체계를 생각하여 2012. 7. 16(월)~7. 27(금)로 계획하였으나, 조사방법상의 어려움과 함께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기간이 맞물렸고, 특히 행정사의 경우 현재 연령대가 높은 노령이라 이메일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팩스를 통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직접 우편으로 해당 설문지를 발송하여 수령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8. 10(금)까지 연장하였음
- 분석은 2012. 8. 16(목)~8.18(일)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SPSS Win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행정사와 공무원의 표본 특성 및 의견을 비교하였고, 필요한 경우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각 소속집단 간 의견차이를 밝혔음

(4) 표본의 특성

- 행정사의 경우 총 474명의 응답을 받았으나, 각 지회를 통해 취합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불완전한 응답지를 정리한 결과, 총 419명의 표본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공무원은 470명의 유의미한 응답지를 취합하였음

(5) 조사결과 요약

- ① 2013년 시행 행정사 시험 인지도
- 2013년 시행되는 행정사 시험과 관련한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행정사의

경우 알고 있다 58.5%, 아주 잘 알고 있다 23.6%로 82.1%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혀 모른다 1.7%, 모른다 5.7%로 7.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에는 알고 있다 44.3%, 아주 잘 알고 있다 9.1%로 53.4%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사의 82.1%에 비해 낮게 나타남. 본 조사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을 감안할 때,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우려할 수준임. 전혀 모른다는 5.3%와 모른다는 15.3%, 즉 둘을 합친 20.6%에는 행정사 시험을 실시하는 데 대한 무관심 또는 부정적인 시각도 읽을 수 있음.
- 앞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사 업무경력에 대해 35.4%가 5개월 미만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최근에 발령받았다면 내년에 실시되는 행정사 시험에 대해 더더욱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임. 해마다 치러진 시험이 아닌 내년에 처음으로 새로이 실시되는 시험이므로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당사자로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임
- 2013년에 새로이 치러지는 행정사 시험에 대한 공무원의 직급별 인지도를 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9급 및 8급의 응답자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직급일수록 행정사 시험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을 알 수 있음

② 행정사의 적정 인원

- 행정사의 수는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행정사의 경우에는 5,000명~10,000명 미만(38.6%) > 10,000명~15,000명 미만(19.8%) > 1,000명~5,000명 미만(18.1%) > 1,000명 미만(10.8%) > 15,000명~20,000명 미만(8.4%) > 20,000명 이상(4.3%)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공무원의 경우 1,000명~5,000명 미만이 26.0%로 가장 높은 응

답치를 보여 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1,000명 미만(25.7%) > 5,000명~10,000명 미만(24.0%) > 10,000명~15,000명 미만(10.6%) > 15,000명~20,000명 미만(7.0%) > 20,000명 이상(6.0%)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기타의 3명은 숫자를 기입하지 않은 사람이 2명이고, 1명은 ‘폐지’라고 써 행정사 제도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줌

③ 현재 행정사 수에 대한 의견

- 현재의 행정사 수가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행정사의 경우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적다는 응답이 41.4% (매우 적다 6.0%, 적다 35.4%)로 적정하다는 21.7%(적정하다 19.8%, 매우 적정하다 1.9%)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사가 좀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시함
- 공무원의 경우에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다는 응답이 11.6%(매우 적다 1.7%, 적다 9.9%), 적정하다는 응답이 12.7%(적정하다 25.6%, 매우 적정하다 1.7%)로 행정사 수가 더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기타의 경우에는 설문항목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공무원이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8명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사항으로 그 중 7명이 현재 행정사 수가 ‘많다’고 하였으며, 1명은 ‘불필요’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정사 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현함.

④ 행정사의 서비스 수수료

- 행정사에게는 “현재 행정사를 통해 받는 서비스 수수료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의견을 확인한 결과, 57.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21.1%에 달해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읽을 수 있음. 적정하다는 의견은 4.8%에 불과함(적정하다 3.8%, 매우 적정하다 1.0%).

- 공무원에게는 “현재 행정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수수료가 비쌀 것으로 예측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57.8%가 보통이라고 답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26.7%, 전혀 그렇지 않다가 4.7%로 부정적인 의견이 31.4%에 이르고 있음. 반면 적정하다는 의견은 9.7%, 매우 적정하다는 의견은 0.9%로 나타남. 즉, 적정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비쌀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싸다는 의미로 해석됨.
- 설문문항의 내용에 있어 미묘하게 차이가 나지만 핵심은 행정사의 서비스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묻는 사항으로, 행정사의 경우에는 78.2%가 적정하지 않고 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행정사 서비스 수수료가 비쌀 것으로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31.4%의 공무원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은 비싸지 않다, 즉 싸다고 답하고 있음.
 - 즉, 행정사와 행정사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 또한 행정사의 서비스 수수료에 대체적으로 싸다는 의견이 많음. 반면 공무원 중 1명은 설문항목에도 들어 있지 않음에도 “비쌀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⑤ 행정사의 적정 선발인원

- 2013년에 시행되는 행정사 시험의 적정 선발인원으로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행정사의 경우에는 200명~300명 미만(35.5%) > 300명~500명 미만(26.5%) > 100명~200명 미만(14.0%) > 100명 미만(11.1%) > 500명~700명 미만(8.5%) > 700명 이상(4.3%)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100명 미만(25.1%) > 200~300명 미만(23.2%) > 100명~200명 미만(20.4%) > 300명~500명 미만(19.1%) > 500명~700명 미만(6.6%) > 700명 이상(5.5%)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⑥ 행정사 자격 취득계획

- 현재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6.4%에 불과함(긍정적 14.5%, 매우 긍정적 1.9%). 반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1.3%,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2.6%로 53.9%가 2013년에 실시되는 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하고 있음.

⑦ 행정사의 적정 보수

- 행정사의 월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행정사의 경우 39.7%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4.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3.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9.6%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공무원에서는 행정사의 적정 월 보수로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4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0.8%, 100만원 미만 7.1%의 순으로 답하고 있어 행정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정 월 보수수준을 다소 낮게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⑧ 행정사의 월 평균 소득

-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설문에서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상(24.6%) > 100만원 미만(23.4%)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1.7%)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3.9%), 500만원 이상(0.5%)은 소수에 그치고 있음.
- 앞에서 행정사의 월 평균 운영경비(임대료, 종업원 월급 등 포함)를 살펴 보았는데,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29.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19.1%, 150만원 이상

16.1%, 4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16.1%,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3.2%, 30만원 미만 4.6%의 분포를 나타냈음.

- 행정사의 월 평균 소득(매출)에서 월 평균 운영경비(임대료, 종업원 월급 등 포함)을 공제한다면 실제 수익은 200만원 선에 머무른다고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임
- ⑨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 행정사를 대상으로 가장 수입이 높은 업무 분야와 1건당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본 결과, 각 가장 많은 208명이 행정심판 분야라고 답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인허가 업무(20명), 음주운전 구제(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⑩ 가장 수입 낮은 업무분야
 - 행정사를 대상으로 가장 수입이 낮은 업무분야를 알아본 결과, 출입국업무 > 내용증명 > 가족관계 > 민원서류 작성 > 일반민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⑪ 수입업무 증가 여부
 - 행정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수입업무의 증가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에서 39.0%가 감소했다고 응답하고 있고, 증가했다는 응답율은 35.4%로, 변화 없다는 응답이 25.7%로 전체적인 시장흐름을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됨.
- ⑫ 향후 증가할 수입 업무
 - 향후 증가할 수입 업무에 대해 행정사는 행정심판, 심사청구(43.2%) > 복합민원업무(23.3%) > 외국인 관련업무(20.9%) > 인허가 등 신청대리(12.7%)의 순으로 답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복합민원업무(28.4%) > 인허가 등 신청대리(28.2%) > 행정심판, 심사청구(23.0%) > 외국인 관련업무

(23.0%)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 행정사들의 경우 행정심판, 심사청구에 대한 관심과 그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기대 또한 높는데 반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수임 업무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⑬ 향후 감소할 수임 업무

- 향후 감소할 수임 업무로 행정사와 공무원 모두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행정사 55.7%, 공무원 49.2%), 그 다음으로 일반민원업무(행정사 29.4%, 공무원 38.8%)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행정사의 경우 감소할 수임 업무로 행정심판, 심사청구가 9.6%, 인허가 등 신청대리가 5.0%인데 반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허가 등 신청대리가 6.3%로 행정심판, 심사청구의 5.2%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여줌.

- 가족관계 등록사무나 일반민원업무 등의 경우 정부기관의 행정절차 간소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처리절차가 간편해 지고, 또 관계기관의 공익요원 등을 이용한 안내인 파견 및 인터넷의 발달로 젊은이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거부감이 줄어들어 따른 것으로 분석됨.

⑭ 행정사의 수익 전망

- 향후 행정사의 수익 전망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설문에 행정사의 경우에는 타 자격사에 비해 수익전망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48.7%, 수익전망이 좋다는 의견이 47.0%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타 자격사에 비해 수익전망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77.7%로 절대 다수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앞에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53.6%가 부정적이

라고 응답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6) 조사결과의 시사점

- 현재의 행정사가 과소한가 과잉공급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설문결과를 볼 때, 행정사 및 잠정 행정사 인력인 공무원은 기존 행정사를 활용함에 있어 큰 무리가 따르지 않고 높은 수수료를 낸다고 보지는 않음
- 매년 얼마만큼의 행정사가 증가하고 있는지의 추세를 보면 평균적으로 3%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즉, 07년도 대비 08년은 1.97%, 08년도 대비 09년은 2.93%, 09년도 대비 10년도는 3.97%로 평균적으로 2.9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공무원들의 인식과 별개로 행정사들은 기존 행정사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잠재적인 공급자인 공무원들의 인식을 볼 때, 행정사의 공급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음
- 그렇다면 공급과 수요를 인식조사를 볼 때, 서로의 입장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현재의 행정사 수요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인원을 대량증원할 시에는 행정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큼
-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걱정수가 얼마이냐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주된 관건이라 할 수 있음

2. 인구통계학적 조사결과

(1) 표본의 특성

- 행정사의 경우 총 474명의 응답을 받았으나, 각 지회를 통해 취합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불완전한 응답지를 정리한 결과, 총 419명의 표본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공무원은 470명의 유의미한 응답지를 취합하였음

가. 행정사 및 공무원의 표본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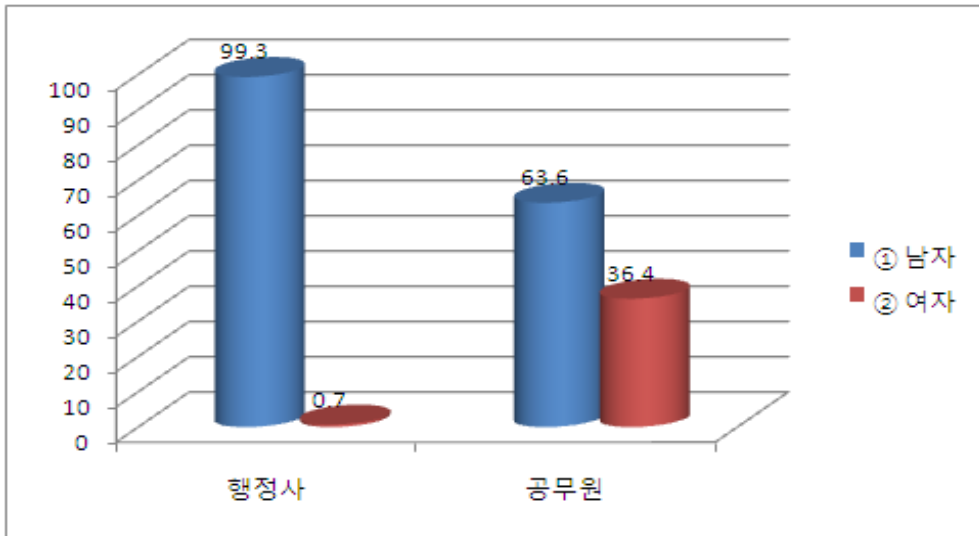
① 성별 비교

- 행정사의 경우 419명의 응답자 중 여성 응답자는 3명에 불과함. 실제로 개업하고 있는 행정사 중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고, 설문지가 대한행정사 협회를 통해 각 지회별로 내려간 때문에 주로 지회의 업무에 간여하는 간부급 행정사들이 많이 응답한 때문으로 풀이됨
- 공무원의 경우에는 470명의 응답자 중 남성이 299명(63.6%), 여성이 171명(36.4%)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들의 남녀비율을 감안하면 조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 것으로 보여짐.

< 표 3-1 > 응답자 성별 비교

성별	행정사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남자	416	99.3	299	63.6
② 여자	3	.7	171	36.4
합계	419	100.0	470	100.0

< 그림 3-1 > 행정사와 공무원의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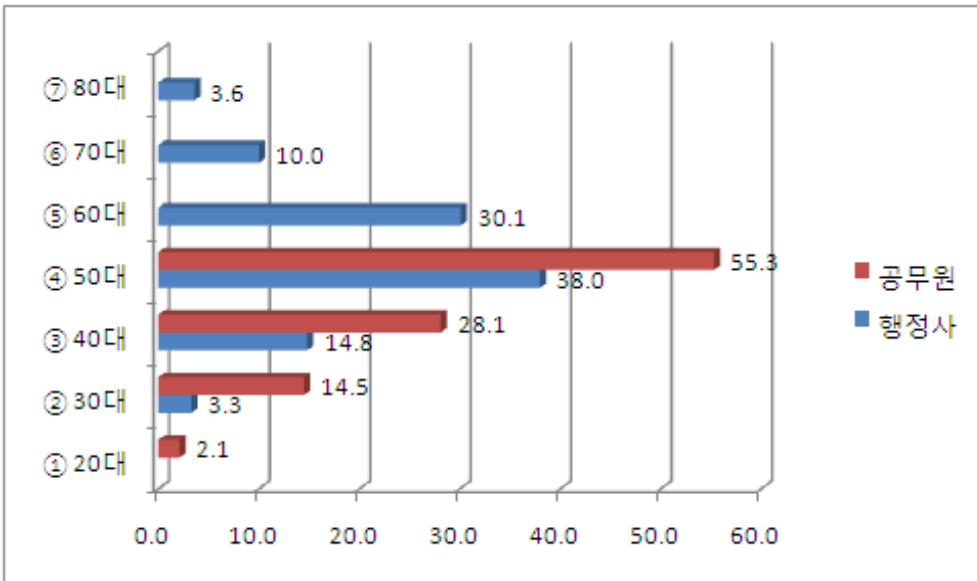
② 연령별 비교

- 연령별 특성을 비교해 보면 행정사의 경우 지금까지 일반직 및 교육직, 혹은 특정직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군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또 한번 자격을 취득한 이상 지병이나 달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특성상 연령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 경찰이나 군인출신의 행정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처음부터 시험을 치러 선발하는 관계로 행정사 관련분야에서 첫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20대부터 50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다만, 정년으로 인한 퇴직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60대는 찾아볼 수 있음

< 표 3-2 > 응답자 연령별 비교

연령	행정사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20대	-	-	10	2.1
② 30대	14	3.3	68	14.5
③ 40대	62	14.8	132	28.1
④ 50대	159	38.0	260	55.3
⑤ 60대	126	30.1	-	-
⑥ 70대	42	10.0	-	-
⑦ 80대	15	3.6	-	-
합계	418	100.0	470	100.0

< 그림 3-2 > 행정사와 공무원의 연령별 비교



③ 업무경력별 비교

- 업무경력별 특성을 비교해 보면, 행정사의 경우 5년 미만이 3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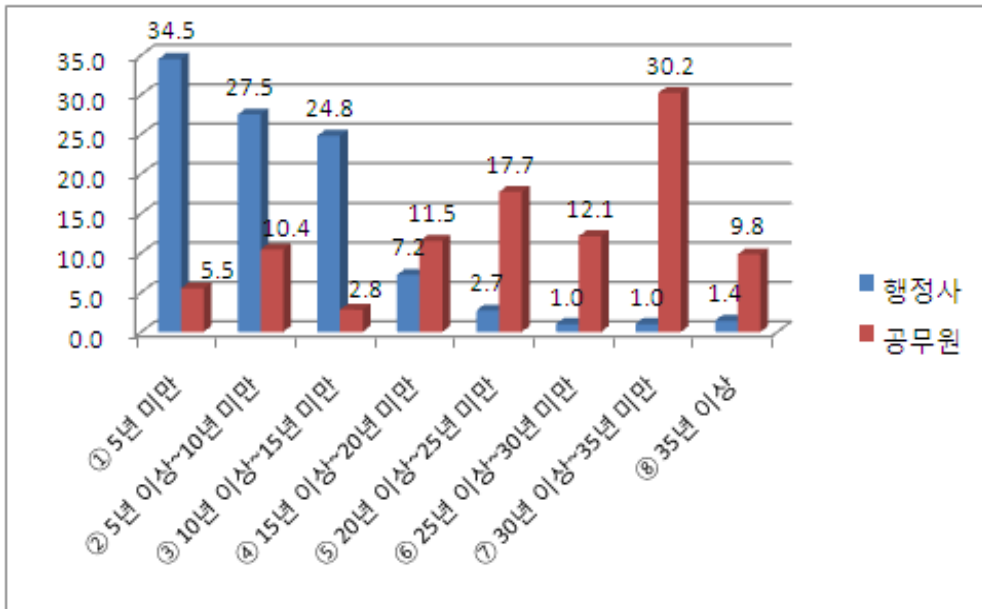
27.5% > 10년 이상 ~15년 미만 24.8% > 15년 이상~20년 미만 7.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35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중에는 40년과 45년, 그리고 51년 1개월 동안 행정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각각 1명씩 나타남

- 행정사의 전반적인 연령층이 높아서 직접 면접조사가 아닌 이메일 및 팩스를 이용한 데 조사방법의 불편과 함께 아울러 젊은 층일수록 최근의 변화에 민감하면서 설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행정사의 업무경력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공무원의 분석자료는 근무경력이라 할 수 있겠는데, 30년 이상~35년 미만 경력자가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5년 이상 장기근무자도 9.8%에 이르는 등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높음.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담당 및 과장, 그리고 팀장에 이르기까지 직급별·경력별 고른 배치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표 3-3 > 응답자 업무경력별 비교

업무 경력	행정사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5년 미만	143	34.5	26	5.5
② 5년 이상~10년 미만	114	27.5	49	10.4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103	24.8	13	2.8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30	7.2	54	11.5
⑤ 20년 이상~25년 미만	11	2.7	83	17.7
⑥ 25년 이상~30년 미만	4	1.0	57	12.1
⑦ 30년 이상~35년 미만	4	1.0	142	30.2
⑧ 35년 이상	6	1.4	46	9.8
합계	415	100.0	470	100.0

< 그림 3-3 > 행정사와 공무원의 업무경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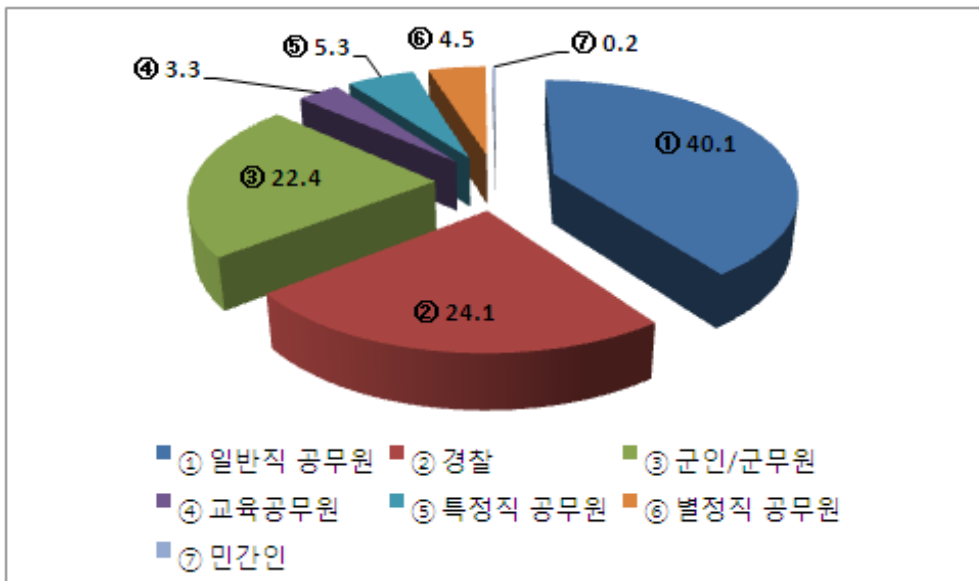
④ 출신별 비교

- 2013년 행정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현재 지금까지 행정사가 되는 데에는 경찰이나 군인 혹은 군무원 등으로, 혹은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직·기능직·특정직 공무원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재직하고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행정사 업무를 서비스하고 있으면서 설문에 응답한 행정사들 중 40.1%가 일반직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으며, 경찰 출신은 24.1%, 군인/군무원 출신은 22.4%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음. 기타 교육공무원이나 특정직, 혹은 별정직 공무원 출신자는 소수로 나타남
- 이에 비해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이 99.6%이고, 군인/군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므로 이는 응답과정에서의 오류로 보여짐

< 표 3-4 > 응답자 출신별 비교

출신	행정사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일반직 공무원	168	40.1	468	99.6
② 경찰	101	24.1	-	-
③ 군인/군무원	94	22.4	1	.2
④ 교육공무원	14	3.3	-	-
⑤ 특정직 공무원	22	5.3	1	.2
⑥ 별정직 공무원	19	4.5	-	-
⑦ 민간인	1	.2	-	-
합계	419	100.0	470	100.0

< 그림 3-4 > 행정사의 출신별 특성



⑤ 거주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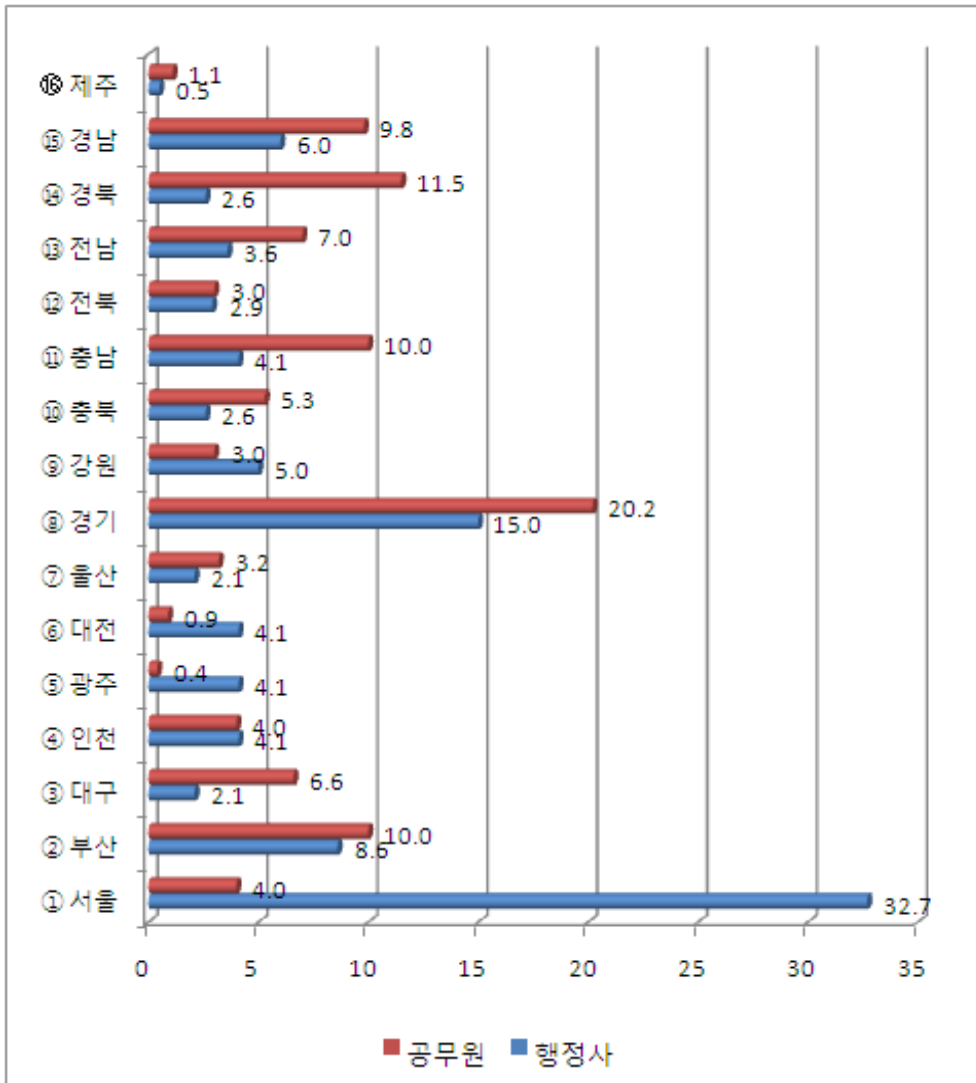
- 거주지역별로 보면 행정사의 경우 서울이 32.7%로 가장 많고, 그 뒤를 경기(15.0%), 부산(8.6%), 경남(6.0%) 등 지역별로 현재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행정사 숫자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표 3-5 > 응답자 지역별 비교

거주지역	행정사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서울	137	32.7	19	4.0
② 부산	36	8.6	47	10.0
③ 대구	9	2.1	31	6.6
④ 인천	17	4.1	19	4.0
⑤ 광주	17	4.1	2	.4
⑥ 대전	17	4.1	4	.9
⑦ 울산	9	2.1	15	3.2
⑧ 경기	63	15.0	95	20.2
⑨ 강원	21	5.0	14	3.0
⑩ 충북	11	2.6	25	5.3
⑪ 충남	17	4.1	47	10.0
⑫ 전북	12	2.9	14	3.0
⑬ 전남	15	3.6	33	7.0
⑭ 경북	11	2.6	54	11.5
⑮ 경남	25	6.0	46	9.8
⑯ 제주	2	.5	5	1.1
합계	419	100.0	465	100.0

- 이와는 달리 공무원의 경우, 경기(20.2%), 경북(11.5%), 충남과 부산이 각각 10.0%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전반적으로 응답율이 상당히 저조함. 담당공무원 숫자에 있어서 지역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또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역과 거주지역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에서 4명, 광주에서 2명만 응답한 것은 바쁜 업무 및 휴가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사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림 3-5 > 행정사와 공무원의 거주지역별 비교



나. 행정사의 특성

① 행정사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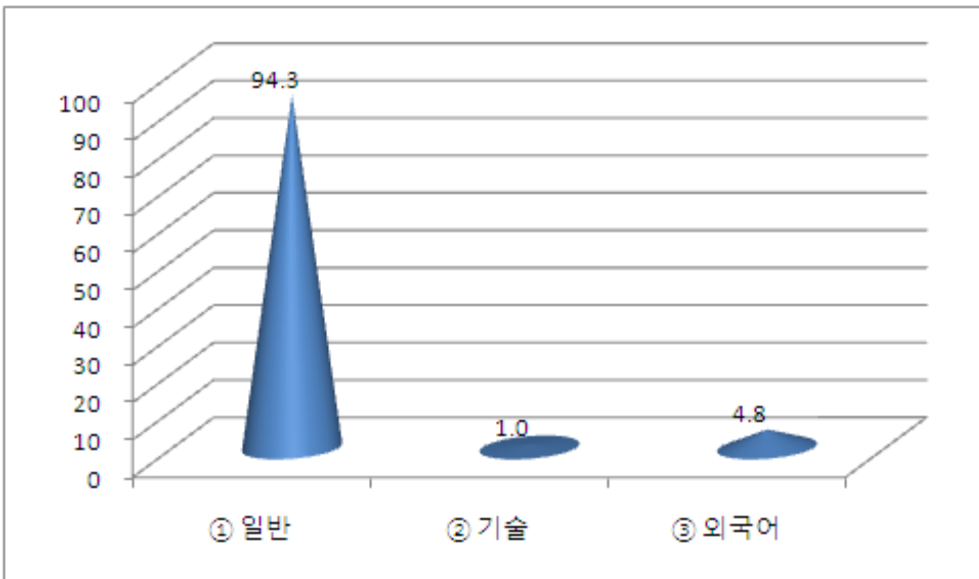
- 설문에 응답한 419명의 행정사를 그 자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94.3%가 일반으로, 4.8%는 외국어, 그리고 1.0%는 기술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향후 행정사가 보다 전문자격사로 인정받으면서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업무가 보다 세부적으로 전문화시켜 양질의 서비스와 그에 걸맞은 수입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표 3-6 > 행정사 종류

행정사 종류	빈도	퍼센트
① 일반	394	94.3
② 기술	4	1.0
③ 외국어	20	4.8
합계	418	100.0

< 그림 3-6 > 행정사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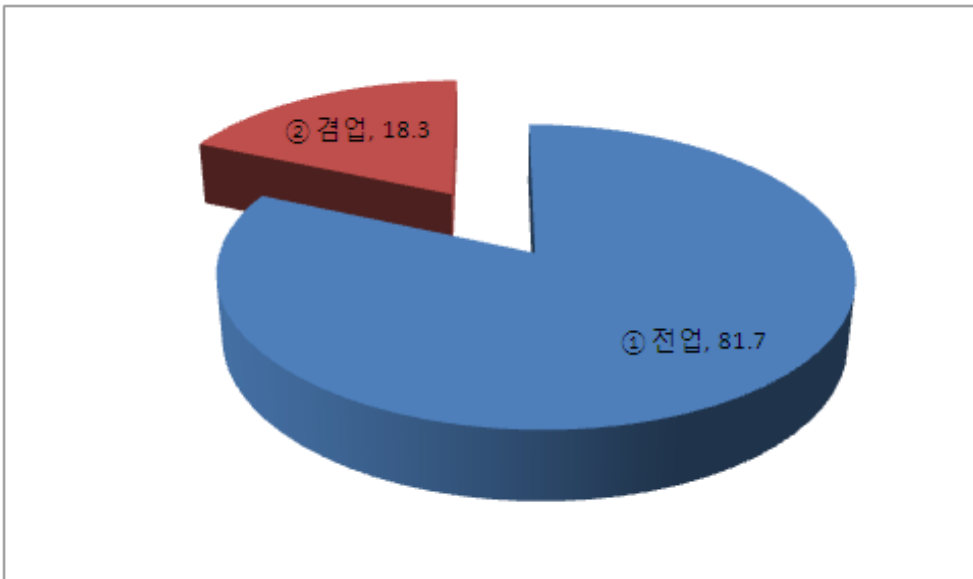
② 행정사 전업 여부

- 현재 개업하여 업무 중에 있는 행정사들에게 행정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81.7%가 전업으로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18.3%는 타 자격을 겸업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타 자격 겸업자(76명)의 경우 어떤 자격을 겸하고 있는지 알아보니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하면 부동산 중개업이 11명으로 가장 많으며, 농업이 5명, 보험과 상담업무가 각각 2명씩, 그리고 건축사, 노무, 자영업, 개인사업, 연금생활이라고 기입한 응답자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남.

< 표 3-7 > 행정사 전업 여부

행정사 전업여부	빈도	퍼센트
① 전업	339	81.7
② 겸업	76	18.3
합계	415	100.0

< 그림 3-7 > 행정사 전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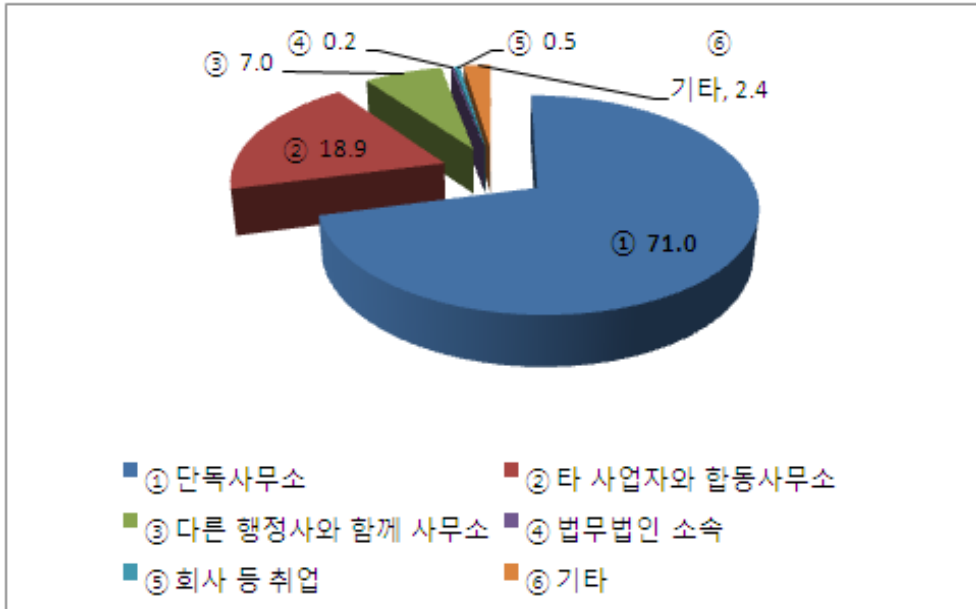
③ 사무소 형태

- 현재 개업 중인 행정사의 사무소 형태들을 보면 단독사무소가 7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8.9%는 타 사업자와 합동사무소 형태로 꾸려가고 있다고 답하고 있음. 그리고 다른 행정사와 함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0%에 이르고 있으며, 기타 법무법인 소속이나 회사 등에 취업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함
- 전반적으로 단독사무소 및 합동사무소 형태의 사무실 운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법무법인 소속이나 기타 다른 회사 등에 취업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각각 1명과 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번 설문조사가 대한행정사협회를 통해 각 지방의 지회로 연결되어 이루어졌으므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협회 및 지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으로 해석되며, 법무법인이나 다른 회사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설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던 때문으로 생각됨

< 표 3-8 > 사무소의 형태

사무소의 형태	빈도	퍼센트
① 단독사무소	296	71.0
② 타 사업자와 합동사무소	79	18.9
③ 다른 행정사와 함께 사무소	29	7.0
④ 법무법인 소속	1	.2
⑤ 회사 등 취업	2	.5
⑥ 기타	10	2.4
합계	417	100.0

< 그림 3-8 > 행정사의 사무소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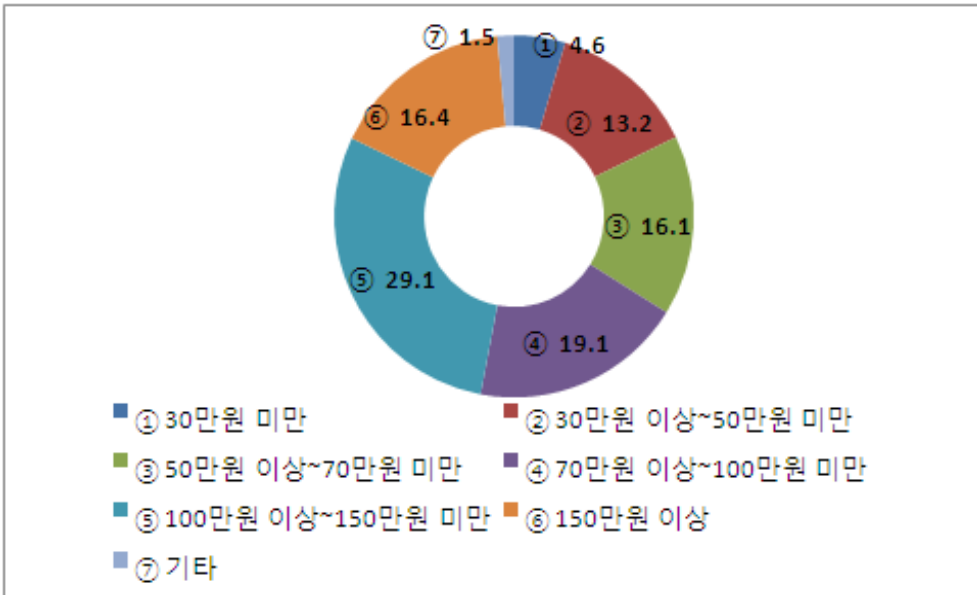
④ 사무소의 월 평균 운영경비

- 임대료 및 종업원 월급 등을 포함한 사무실의 월 평균 운영경비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행정사의 29.1%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19.1%) > 150만원 이상(16.4%) >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16.1%) >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3.2%) > 30만원 미만(4.6%)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 앞에서 71.0%의 응답자가 단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타 사업자와 합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18.9%, 그리고 다른 행정사와 함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7.0%인 점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임대료 및 종업원의 월급 등을 포함한 운영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으며, 이는 다시 행정사들의 사무소가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줌

< 표 3-9 > 사무실의 월 평균 운영경비

사무실의 월 평균 운영경비	빈도	퍼센트
① 30만원 미만	19	4.6
②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4	13.2
③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66	16.1
④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78	19.1
⑤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19	29.1
⑥ 150만원 이상	67	16.4
⑦ 기타	6	1.5
합계	409	100.0

< 그림 3-9 > 사무실의 월 평균 운영경비



다. 공무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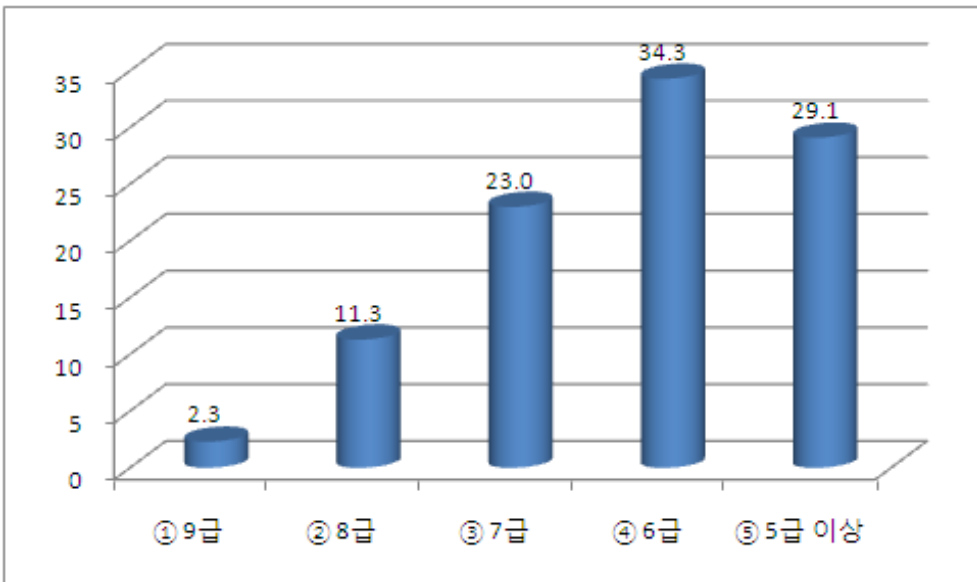
① 직급

- 설문에 응답한 470명 공무원들의 직급별 분포를 보면, 6급이 3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5급 이상(29.1%) > 7급(23.0%) > 8급(11.3%) > 9급(2.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3-10 >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

직급	빈도	퍼센트	직급	빈도	퍼센트
① 9급	11	2.3	④ 6급	161	34.3
② 8급	53	11.3	⑤ 5급 이상	137	29.1
③ 7급	108	23.0	합계	470	100.0

< 그림 3-10 >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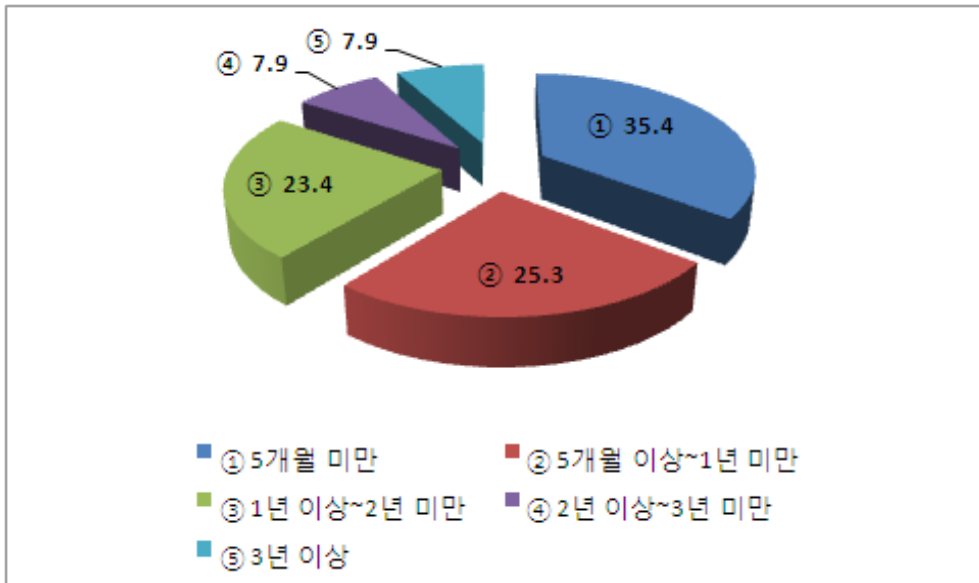
② 행정사 업무 경력

- 설문에 응답한 470명 중 행정사 업무 경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367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 경력을 비교해 보면, 5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개월 이상~1년 미만이 25.3%, 1년 이상~2년 미만은 23.4%, 2년 이상~3년 미만이 7.9%, 그리고 3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7.9%로 나타나고 있음
- 전반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담당할 경험이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행정사 경력이 51년 1개월이라는 행정사도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에서 행정사 업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행정사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해당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어진 일상업무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해당 자격사인 행정사에게로 전가됨으로써 행정사 제도전반에 대한 침체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됨

< 표 3-11 > 공무원의 행정사 업무경력별 분포

행정사 업무 경력	빈도	퍼센트
① 5개월 미만	130	35.4
② 5개월 이상~1년 미만	93	25.3
③ 1년 이상~2년 미만	86	23.4
④ 2년 이상~3년 미만	29	7.9
⑤ 3년 이상	29	7.9
합계	367	100.0

< 그림 3-11 > 공무원의 행정사 업무경력별 분포



3. 각 문항별 세부조사결과

- 행정사와 행정사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공통된 질문이 있어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이 있고, 또 행정사 혹은 담당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을 삽입하여 실시하였음.

(1) 2013년 시행 행정사 시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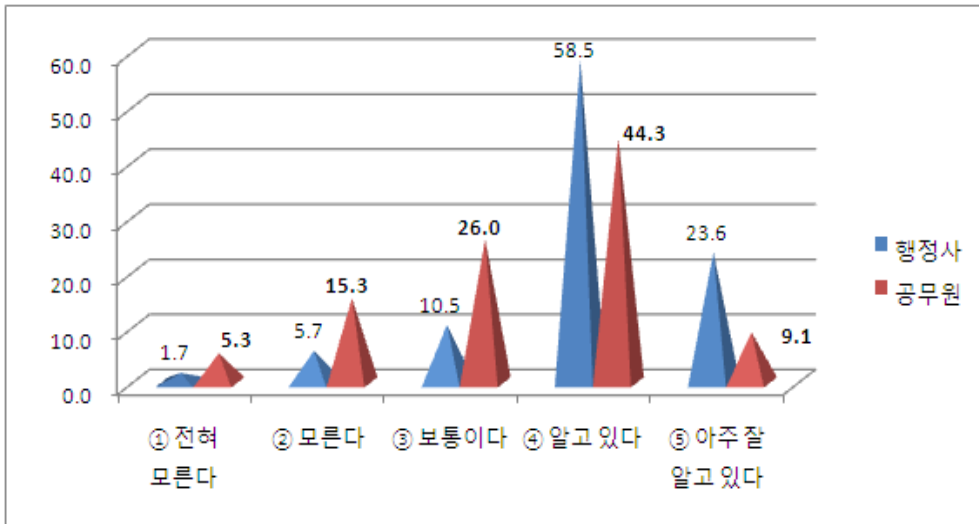
- 2013년 시행되는 행정사 시험과 관련한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행정사의 경우 알고 있다 58.5%, 아주 잘 알고 있다 23.6%로 82.1%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혀 모른다 1.7%, 모른다 5.7%로 7.4%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에는 알고 있다 44.3%, 아주 잘 알고 있다 9.1%로 53.4%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사의 82.1%에 비해 낮게 나타남. 본 조사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을 감안할 때,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우려할 수준임. 전혀 모른다는 5.3%와 모른다는 15.3%, 즉 둘을 합친 20.6%에는 행정사 시험을 실시하는 데 대한 무관심 또는 부정적인 시각도 읽을 수 있음
- 앞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사 업무경력에 대해 35.4%가 5개월 미만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최근에 발령받았다면 내년에 실시되는 행정사 시험에 대해 더더욱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임. 해마다 치러진 시험이 아닌 내년에 처음으로 새로이 실시되는 시험이므로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당사자로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임

< 표 3-12 > 2013년 실시 행정사 시험 인지도 비교

행정사 시험 인지도	행정사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전혀 모른다	7	1.7	25	5.3
② 모른다	24	5.7	72	15.3
③ 보통이다	44	10.5	122	26.0
④ 알고 있다	245	58.5	208	44.3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99	23.6	43	9.1
합계	419	100.0	470	100.0

< 그림 3-12 > 2013년 시행 행정사 시험 인지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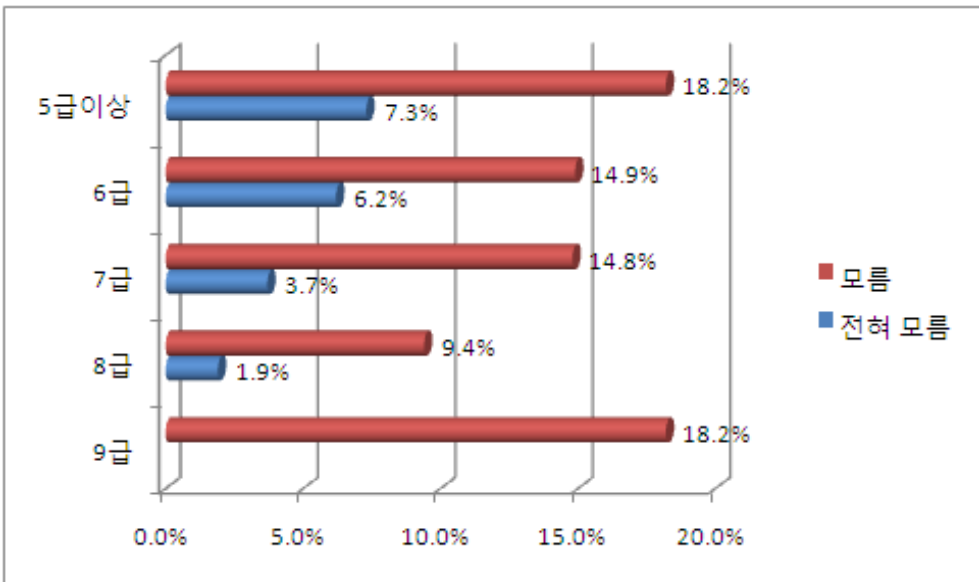


- 2013년에 새로이 치러지는 행정사 시험에 대한 공무원의 직급별 인지도를 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9급 및 8급의 응답자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직급일수록 행정사 시험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아래의 그림은 공무원의 직급별 2013년에 시행되는 행정사 시험에 대한 인지도(전혀 모른다/모른다)를 나타낸 그래프임. 도표에서 보듯이 9급의 경우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는 없이 모른다는 응답자가 18.2%인데 비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8급에서는 1.9%, 7급에서는 3.7%, 6급 6.2%, 5급 이상 7.3%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른다는 응답치 또한 직급에 따라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3-13 > 공무원 직급별 행정사 시험 인지도

행정사 시험 인지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아주 잘 안다	전체	
직급	9급	빈도		2	1	7	1	11
		%		18.2%	9.1%	63.6%	9.1%	100.0
	8급	빈도	1	5	16	25	6	53
		%	1.9%	9.4%	30.2%	47.2%	11.3%	100.0
	7급	빈도	4	16	31	44	13	108
		%	3.7%	14.8%	28.7%	40.7%	12.0%	100.0
	6급	빈도	10	24	36	76	15	161
		%	6.2%	14.9%	22.4%	47.2%	9.3%	100.0
	5급 이상	빈도	10	25	38	56	8	137
		%	7.3%	18.2%	27.7%	40.9%	5.8%	100.0
	전체	빈도	25	72	122	208	43	470
		%	5.3%	15.3%	26.0%	44.3%	9.1%	100.0

< 그림 3-13 > 직급별 행정사 시험 인지도(전혀모름/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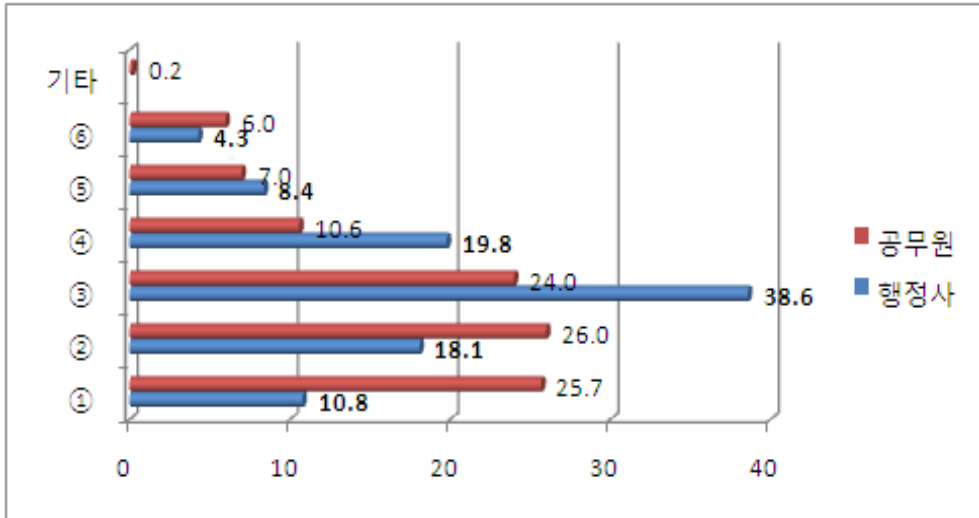
(2) 행정사의 적정 인원

- 행정사의 수는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행정사의 경우에는 5,000명~10,000명 미만(38.6%) > 10,000명~15,000명 미만(19.8%) > 1,000명~5,000명 미만(18.1%) > 1,000명 미만(10.8%) > 15,000명~20,000명 미만(8.4%) > 20,000명 이상(4.3%)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공무원의 경우 1,000명~5,000명 미만이 26.0%로 가장 높은 응답치를 보여 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1,000명 미만(25.7%) > 5,000명~10,000명 미만(24.0%) > 10,000명~15,000명 미만(10.6%) > 15,000명~20,000명 미만(7.0%) > 20,000명 이상(6.0%)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기타의 3명은 숫자를 기입하지 않은 사람이 2명이고, 1명은 ‘폐지’라고 써 행정사 제도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줌

< 표 3-14 > 행정사 적정인원에 대한 의견 비교

행정사의 적정 인원	행정사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1,000명 미만	45	10.8	121	25.7
② 1,000명~5,000명 미만	75	18.1	122	26.0
③ 5,000명~10,000명 미만	160	38.6	113	24.0
④ 10,000명~15,000명 미만	82	19.8	50	10.6
⑤ 15,000명~20,000명 미만	35	8.4	33	7.0
⑥ 20,000명 이상	18	4.3	28	6.0
기타			3	.2
합계	415	100.0	470	100.0

< 그림 3-14 > 행정사 적정인원에 대한 의견 비교



- ① 1,000명 미만
- ② 1,000명~5,000명 미만
- ③ 5,000명~10,000명 미만
- ④ 10,000명~15,000명 미만
- ⑤ 15,000명~20,000명 미만
- ⑥ 20,000명 이상

(3) 현재 행정사 수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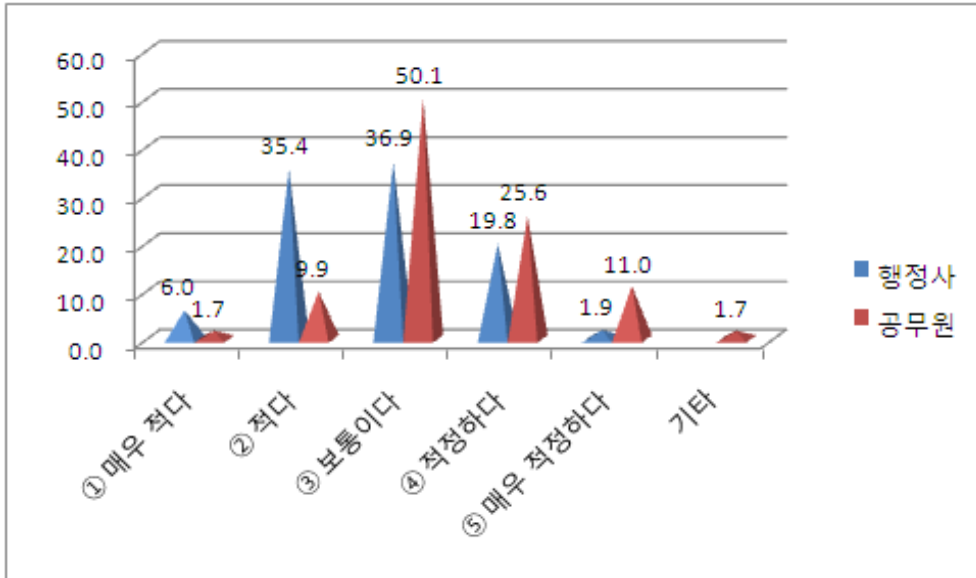
- 현재의 행정사 수가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행정사의 경우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적다는 응답이 41.4% (매우 적다 6.0%, 적다 35.4%)로 적정하다는 21.7%(적정하다 19.8%, 매우 적정하다 1.9%)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사가 좀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시함
- 공무원의 경우에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다는 응답이 11.6%(매우 적다 1.7%, 적다 9.9%), 적정하다는 응답이 12.7%(적정하다 25.6%, 매우 적정하다 1.7%)로 행정사 수가 더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기타의 경우에는 설문항목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공무원이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8명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사항으로 그

중 7명이 현재 행정사 수가 ‘많다’고 하였으며, 1명은 ‘불필요’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정사 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현함

< 표 3-15 > 현 행정사 수에 대한 의견 비교

현 행정사 수에 대한 인식	행정사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매우 적다	25	6.0	8	1.7
② 적다	147	35.4	46	9.9
③ 보통이다	153	36.9	233	50.1
④ 적정하다	82	19.8	119	25.6
⑤ 매우 적정하다	8	1.9	51	11.0
기타			8	1.7
합계	415	100.0	465	100.0

< 그림 3-15 > 현 행정사 수에 대한 의견 비교



- 대한행정사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012년 현재 행정사 자격 취득자는 약 20,000명 정도이고, 그 중에서 활동 중인 행정사는 10,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앞에서 살펴 본 행정사 수의 적정인원에 대해 행정사들의 경우에는 적정하다는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38.6%), 또 현재의 행정사 수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파악할 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짐. 하지만 2013년 행정사 시험을 통해 새로이 배출되면서 더 늘어날 행정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행정사들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쪽에서는 행정사 시험을 통해 행정사 수가 더 늘어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음

(4) 행정사의 서비스 수수료

< 표 3-16 > 현 행정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행정사의 의견

행정사의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	빈도	퍼센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88	21.1
② 그렇지 않다	238	57.1
③ 보통이다	71	17.0
④ 적정하다	16	3.8
⑤ 매우 적정하다	4	1.0
합계	4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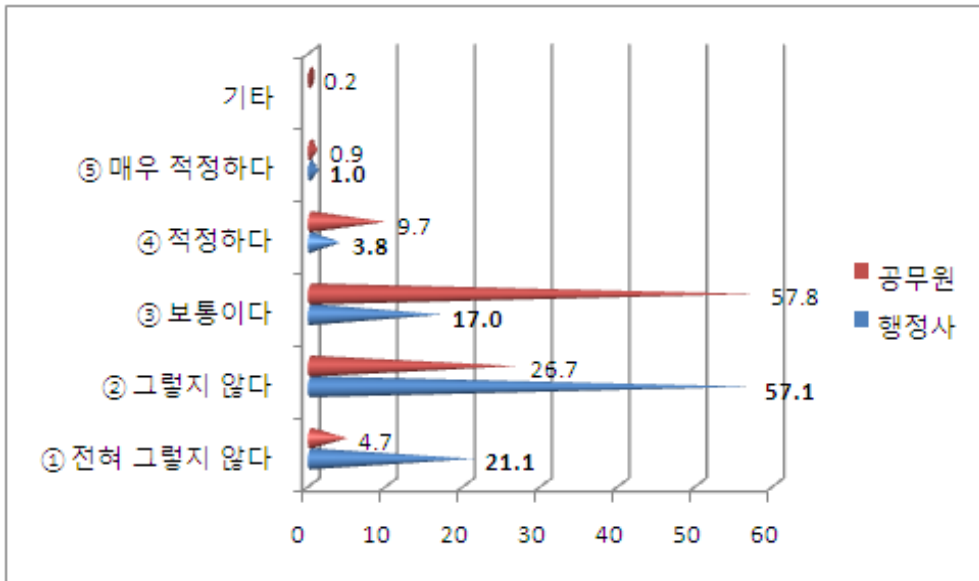
- 행정사에게는 “현재 행정사를 통해 받는 서비스 수수료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의견을 확인한 결과, 57.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21.1%에 달해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읽을 수 있음. 적정하다는 의견은 4.8%에 불과함(적정하다 3.8%, 매우 적정하다 1.0%)

< 표 3-17 > 현 행정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

행정사의 서비스 수수료가 비쌀 것으로 예측되는가	빈도	퍼센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2	4.7
② 그렇지 않다	124	26.7
③ 보통이다	268	57.8
④ 적정하다	45	9.7
⑤ 매우 적정하다	4	.9
기타	1	.2
합계	464	100.0

- 공무원에게는 “현재 행정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수수료가 비쌀 것으로 예측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57.8%가 보통이라고 답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26.7%, 전혀 그렇지 않다가 4.7%로 부정적인 의견이 31.4%에 이르고 있음. 반면 적정하다는 의견은 9.7%, 매우 적정하다는 의견은 0.9%로 나타남. 즉, 적정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비쌀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싸다는 의미로 해석됨
- 설문문항의 내용에 있어 미묘하게 차이가 나지만 핵심은 행정사의 서비스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묻는 사항으로, 행정사의 경우에는 78.2%가 적정하지 않고 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행정사 서비스 수수료가 비쌀 것으로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31.4%의 공무원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은 비싸지 않다, 즉 싸다고 답하고 있음
- 즉, 행정사와 행정사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 또한 행정사의 서비스 수수료에 대체적으로 싸다는 의견이 많음. 반면 공무원 중 1명은 설문항목에도 들어 있지 않음에도 “비쌀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그림 3-16 > 행정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의견 비교



(5) 행정사의 적정 선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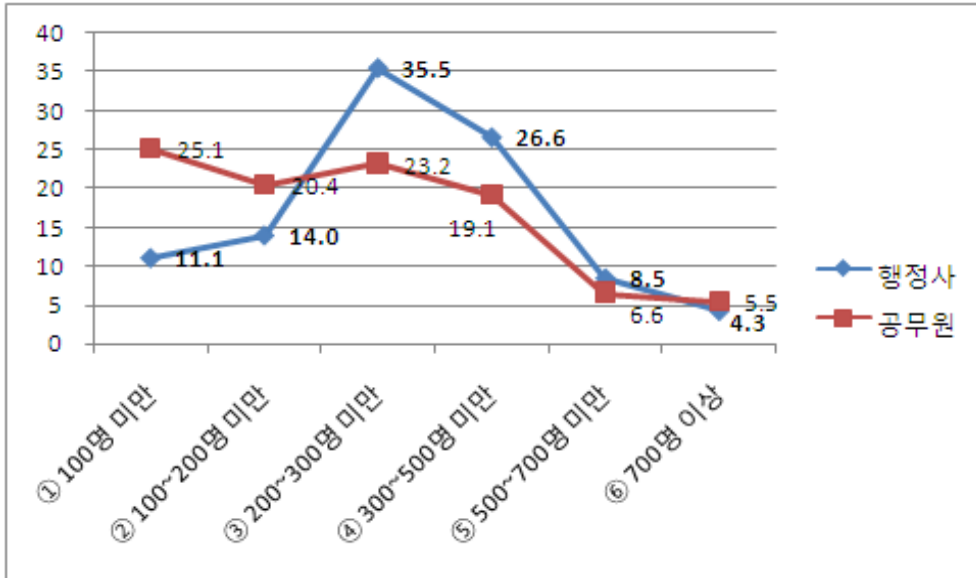
- 2013년에 시행되는 행정사 시험의 적정 선발인원으로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행정사의 경우에는 200명~300명 미만(35.5%) > 300명~500명 미만(26.5%) > 100명~200명 미만(14.0%) > 100명 미만(11.1%) > 500명~700명 미만(8.5%) > 700명 이상(4.3%)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100명 미만(25.1%) > 200명 이상~300명 미만(23.2%) > 100명 이상~200명 미만(20.4%) > 300명 이상~500명 미만(19.1%) > 500명 이상~700명 미만(6.6%) > 700명 이상(5.5%)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 행정사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좀더 많은 수의 선발인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행정사는 타 자격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현실과 함께 기존 회원들의 노령화 등을 감안하면서도 시험을 통해

새로이 배출되는 행정사들로 인해 현재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하고 있음.⁸⁾

< 표 3-18 > 행정사 적정 선발인원에 대한 의견 비교

2013년 행정사 시험 적정 선발인원	행정사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100명 미만	46	11.1	118	25.1
② 100~200명 미만	58	14.0	96	20.4
③ 200~300명 미만	147	35.5	109	23.2
④ 300~500명 미만	110	26.6	90	19.1
⑤ 500~700명 미만	35	8.5	31	6.6
⑥ 700명 이상	18	4.3	26	5.5
합계	414	100.0	470	100.0

< 그림 3-17 > 행정사 적정 선발인원에 대한 의견 비교



8) 대한행정사협회 회장 및 홍보이사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한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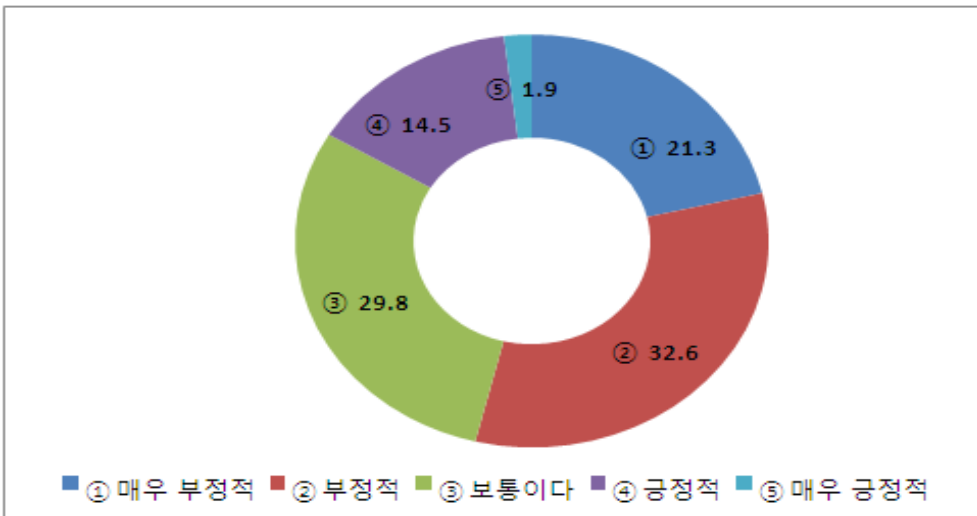
(6) 행정사 자격 취득계획

< 표 3-19 > 행정사 자격 취득계획(공무원)

행정사 시험 응시계획 여부	빈도	퍼센트
① 매우 부정적	100	21.3
② 부정적	153	32.6
③ 보통이다	140	29.8
④ 긍정적	68	14.5
⑤ 매우 긍정적	9	1.9
합계	470	100.0

- 현재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6.4%에 불과함(긍정적 14.5%, 매우 긍정적 1.9%). 반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1.3%,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2.6%로 53.9%가 2013년에 실시되는 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하고 있음

< 그림 3-18 > 행정사 자격 취득계획(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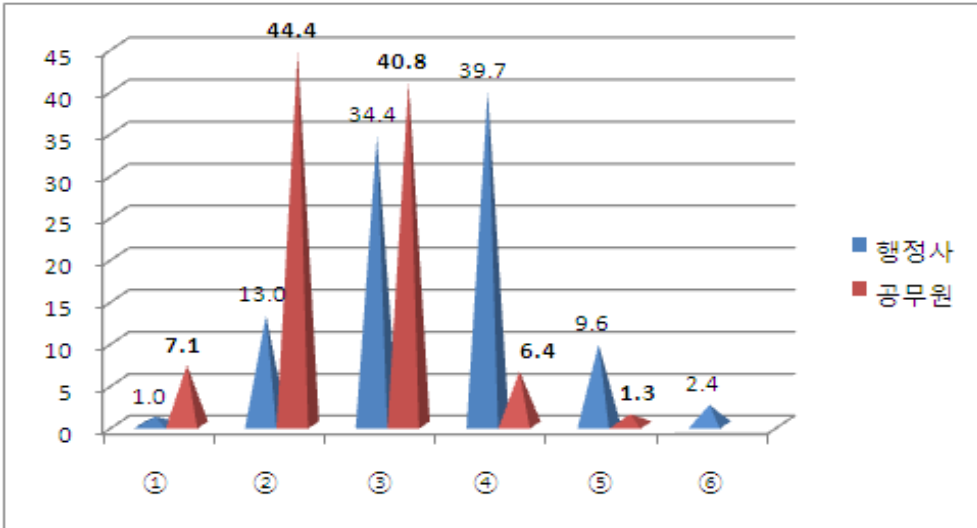
(7) 행정사의 적정 보수

- 행정사의 월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행정사의 경우 39.7%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4.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3.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9.6%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공무원에서는 행정사의 적정 월 보수로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4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0.8%, 100만원 미만 7.1%의 순으로 답하고 있어 행정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정 월 보수수준을 다소 낮게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표 3-20 > 행정사의 적정 보수에 대한 의견 비교

행정사의 적정 월 보수	행정사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100만원 미만	4	1.0	33	7.1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4	13.0	208	44.4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43	34.4	191	40.8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65	39.7	30	6.4
⑤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0	9.6	6	1.3
⑥ 500만원 이상	10	2.4	-	-
합계	416	100.0	468	100.0

< 그림 3-19 > 행정사의 적정 보수에 대한 의견 비교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⑤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8) 행정사의 월 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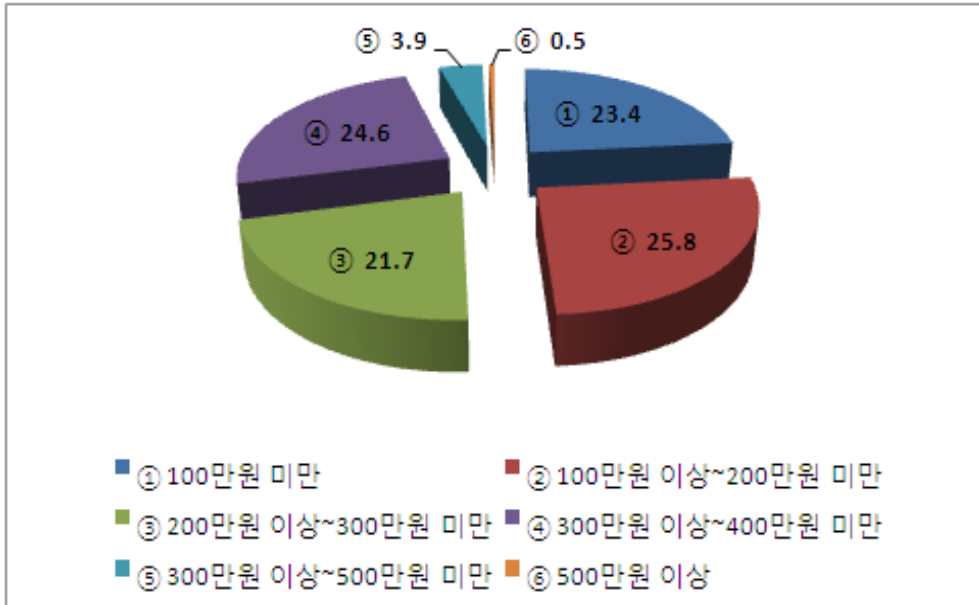
○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설문에서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5.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상(24.6%) > 100만원 미만(23.4%)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1.7%)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3.9%), 500만원 이상(0.5%)은 소수에 그치고 있음

< 표 3-21 > 행정사의 월 평균 소득(매출)

월 평균 소득(매출)	빈도	퍼센트
① 100만원 미만	97	23.4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7	25.8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90	21.7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02	24.6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6	3.9
⑥ 500만원 이상	2	0.5
합계	414	100.0

- 앞에서 행정사의 월 평균 운영경비(임대료, 종업원 월급 등 포함)를 살펴 보았는데,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29.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19.1%, 150만원 이상 16.1%, 4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16.1%,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3.2%, 30만원 미만 4.6%의 분포를 나타냈음
- 행정사의 월 평균 소득(매출)에서 월 평균 운영경비(임대료, 종업원 월급 등 포함)을 공제한다면 실제 수익은 200만원 선에 머무른다고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림 3-20 > 행정사의 월 평균 매출(소득)



(9)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 행정사를 대상으로 가장 수입이 높은 업무분야와 1건당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본 결과, 각 가장 많은 208명이 행정심판 분야라고 답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인허가 업무(20명), 음주운전 구제(11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혹은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1건당 수수료를 천원 단위로 기재하였는 바, 그 의견을 많은 수가 응답한 분야부터, 그리고 같은 수의 응답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함. 수수료 단위가 천원임을 명기하였으나 간혹 이해하기 힘든 숫자가 기록되기도 했는데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대로 정리함

< 표 3-22 >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수입 높은 업무 분야	1건당 수수료(단위 : 천원)																																												
행정심판 (208명)	10, 20, 30, 40, 50(2명), 100(8명), 150(6명), 200(14명), 250(18명), 300(44명), 350(27명), 400(20명), 450(4명), 500(51명), 550, 600, 700, 1000(4), 1500, 7000, 35000000																																												
인허가업무 (20명)	10, 20(5명), 100, 200, 400, 450, 470, 500(3명), 700(2명), 1000(4명)																																												
음주운전 구제(11명)	50(6명), 300(3명), 350, 500																																												
내용증명(7명)	20(2명), 30(4명), 50(1명)																																												
외국인업무(5명)	100(2명), 170, 200, 700																																												
토지보상(5명)	1000(3명), 3000, 10000																																												
진정서분야(4명)	50, 70(2명), 1000																																												
복합민원(4명)	35, 80, 100, 750																																												
심판(4명)	500(3명), 1000																																												
행정(3명)	20(2명), 250																																												
민원업무대행(2명)	50, 1000																																												
수용재결(2명)	1000, 1500																																												
이의신청(2명)	30, 300																																												
소송서류(2명)	30, 50																																												
탄원서(2명)	30, 70																																												
기타	<table border="0"> <tr> <td>가족관계</td> <td>- 250</td> <td>계약서</td> <td>- 15, 20</td> </tr> <tr> <td>공장허가</td> <td>- 2000</td> <td>교통면허</td> <td>- 200</td> </tr> <tr> <td>국제결혼</td> <td>- 300</td> <td>권리의무</td> <td>- 30</td> </tr> <tr> <td>도로교통</td> <td>- 500</td> <td>법무</td> <td>- 50</td> </tr> <tr> <td>부동산중개</td> <td>- 1000</td> <td>사실조사</td> <td>- 29000</td> </tr> <tr> <td>소청</td> <td>- 1000</td> <td>신청</td> <td>- 20</td> </tr> <tr> <td>연구분야</td> <td>- 100</td> <td>영업용 차량등록</td> <td>- 700</td> </tr> <tr> <td>일반행정</td> <td>- 10</td> <td>자격변경</td> <td>- 50</td> </tr> <tr> <td>중중등록</td> <td>- 60</td> <td>차량등록</td> <td>- 200</td> </tr> <tr> <td>채권채무</td> <td>- 100</td> <td>토지거래허가</td> <td>- 500</td> </tr> <tr> <td>토지형질변경</td> <td>- 700</td> <td>합의서</td> <td>- 20</td> </tr> </table>	가족관계	- 250	계약서	- 15, 20	공장허가	- 2000	교통면허	- 200	국제결혼	- 300	권리의무	- 30	도로교통	- 500	법무	- 50	부동산중개	- 1000	사실조사	- 29000	소청	- 1000	신청	- 20	연구분야	- 100	영업용 차량등록	- 700	일반행정	- 10	자격변경	- 50	중중등록	- 60	차량등록	- 200	채권채무	- 100	토지거래허가	- 500	토지형질변경	- 700	합의서	- 20
가족관계	- 250	계약서	- 15, 20																																										
공장허가	- 2000	교통면허	- 200																																										
국제결혼	- 300	권리의무	- 30																																										
도로교통	- 500	법무	- 50																																										
부동산중개	- 1000	사실조사	- 29000																																										
소청	- 1000	신청	- 20																																										
연구분야	- 100	영업용 차량등록	- 700																																										
일반행정	- 10	자격변경	- 50																																										
중중등록	- 60	차량등록	- 200																																										
채권채무	- 100	토지거래허가	- 500																																										
토지형질변경	- 700	합의서	- 20																																										

(10) 가장 수입 낮은 업무분야

- 행정사를 대상으로 가장 수입이 낮은 업무분야와 1건당 수수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표 3-23 > 가장 수입 낮은 업무분야

수입 낮은 업무 분야	1건당 수수료(단위 : 천원)
출입국(75명)	5, 10, 15(4명), 20(29명), 25(4명), 30(20명), 35(2명), 50(12명), 300
내용증명(41명)	3(2명), 10(2명), 20(3명), 30(5명), 40(2명), 50(26명), 100
가족관계(25명)	10(2명), 40(2명), 50(20명), 100
민원서류작성(12명)	1, 3, 5(2명), 15, 20(3명), 50(2명), 80, 500, 15000
일반민원(7명)	10, 20, 30(2명), 50(3명)
외국인관련(6명)	5(2명), 10(2명), 20, 50
호적(6명)	5, 10, 40(3명), 50
복합민원(4명)	10, 30, 50(2명)
사실확인(3명)	20(3명)
이의신청(3명)	10, 50, 100
가사분야(2명)	10, 100
영업정지(2명)	200(2명)
진정서(2명)	10, 50
합의서(2명)	20(2명)
기타	계약서 - 30 사문서 - 5 서류작성 - 15 서류접수 - 20 신고사무 - 1 신고서류 - 20 일반대서 - 10 최고서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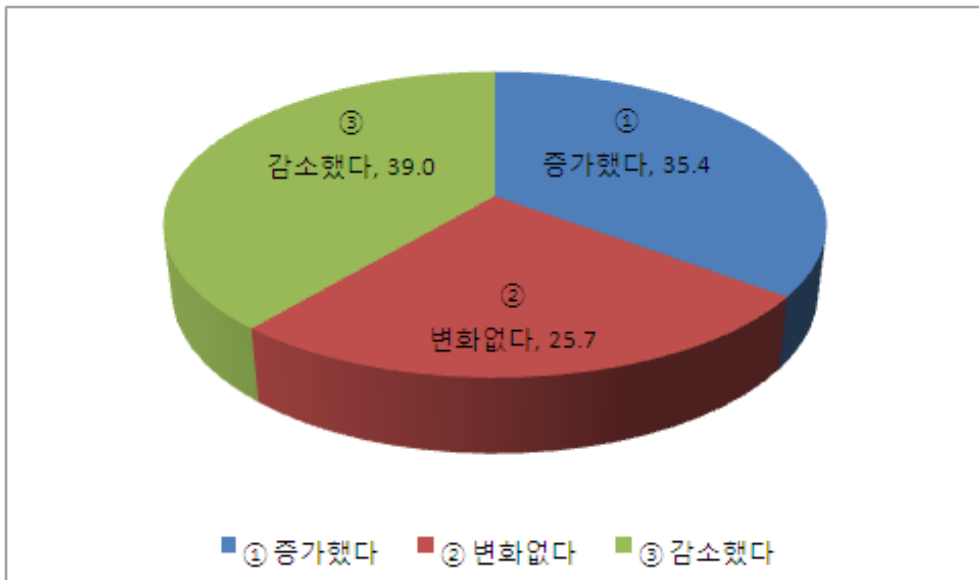
(11) 수입업무 증가 여부

< 표 3-24 > 최근 3년간 수입업무 변화

최근 3년간 수입업무 변화	빈도	퍼센트
① 증가했다	146	35.4
② 변화없다	106	25.7
③ 감소했다	161	39.0
합계	413	100.0

- 행정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수입업무의 증가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에서 39.0%가 감소했다고 응답하고 있고, 증가했다는 응답율은 35.4%로, 변화 없다는 응답이 25.7%로 전체적인 시장흐름을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됨

< 그림 3-21 > 최근 3년간 행정사의 수입업무 변화



(12) 향후 증가할 수입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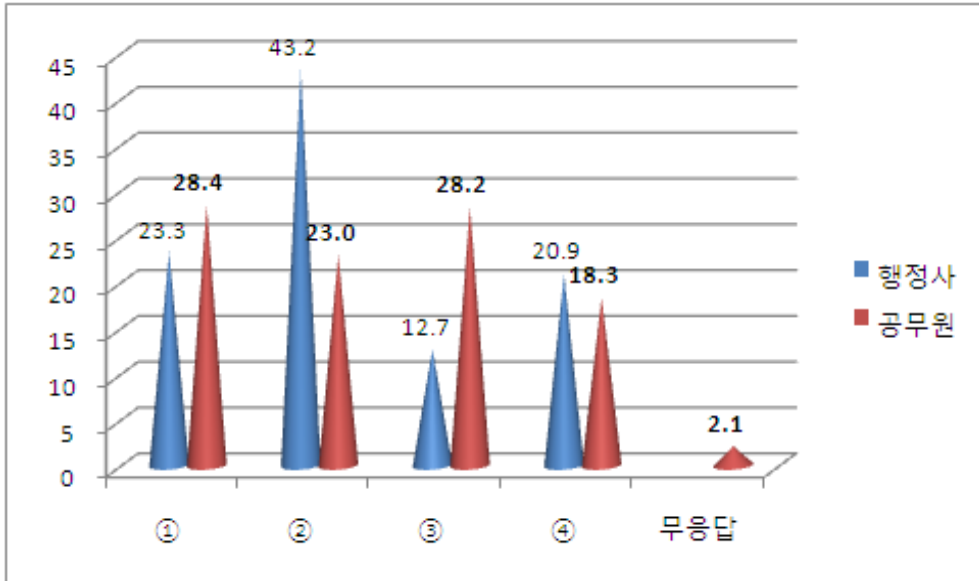
- 향후 증가할 수입 업무에 대해 행정사는 행정심판, 심사청구(43.2%) > 복합민원업무(23.3%) > 외국인 관련업무(20.9%) > 인허가 등 신청대리(12.7%)의 순으로 답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복합민원업무(28.4%) > 인허가 등 신청대리(28.2%) > 행정심판, 심사청구(23.0%) > 외국인 관련업무(23.0%)의 순으로 답하고 있음
- 행정사들의 경우 행정심판, 심사청구에 대한 관심과 그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은데 반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수입 업무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⁹⁾

< 표 3-25 > 향후 증가할 수입 업무에 대한 의견 비교

향후 증가 수입업무	행정사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복합민원업무	97	23.3	137	28.4
② 행정심판, 심사청구	180	43.2	111	23.0
③ 인허가 등 신청대리	53	12.7	136	28.2
④ 외국인 관련업무	87	20.9	88	18.3
무응답			10	2.1
합계	330	100.0	472	100.0

9) 행정사의 경우, 향후 증가할 수입업무 유형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100명 이상이어서 무응답자를 제외한 통계량이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무응답자가 10명에 불과하여 함께 산출함. 그리고 1명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표시하여 중복으로 계산함으로써 전체 응답자 수에 변화가 있음.

< 그림 3-22 > 향후 증가할 수입 업무에 대한 의견 비교



① 복합민원업무
③ 인허가 등 신청대리

② 행정심판, 심사청구
④ 외국인 관련업무

(13) 향후 감소할 수입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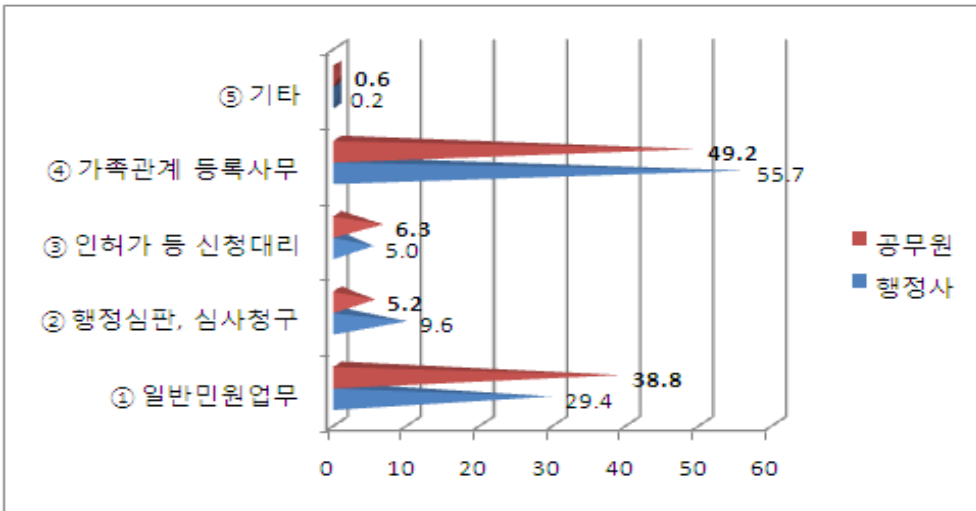
- 향후 감소할 수입 업무로 행정사와 공무원 모두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행정사 55.7%, 공무원 49.2%), 그 다음으로 일반 민원업무(행정사 29.4%, 공무원 38.8%)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행정사의 경우 감소할 수입 업무로 행정심판, 심사청구가 9.6%, 인허가 등 신청대리가 5.0%인데 반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허가 등 신청대리가 6.3%로 행정심판, 심사청구의 5.2%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여줌
- 가족관계 등록사무나 일반민원업무 등의 경우 정부기관의 행정절차 간소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처리절차가 간편해 지고, 또 관계기관의 공익요원 등을 이용한 안내인 파견 및 인터넷

의 발달로 젊은이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거부감이 줄어들어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표 3-26 > 향후 감소할 수입 업무에 대한 의견 비교

향후 감소 수입업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일반민원업무	123	29.4	186	38.8
② 행정심판, 심사청구	40	9.6	25	5.2
③ 인허가 등 신청대리	21	5.0	30	6.3
④ 가족관계 등록사무	233	55.7	236	49.2
⑤ 기타	1	.2	3	.6
합계	417	100.0	477	100.0

< 그림 3-23 > 향후 감소할 수입 업무에 대한 의견 비교



(14) 행정사의 수익 전망

- 향후 행정사의 수익 전망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행정사의 경우에는 타 자격사에 비해 수익전망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48.7%, 수익전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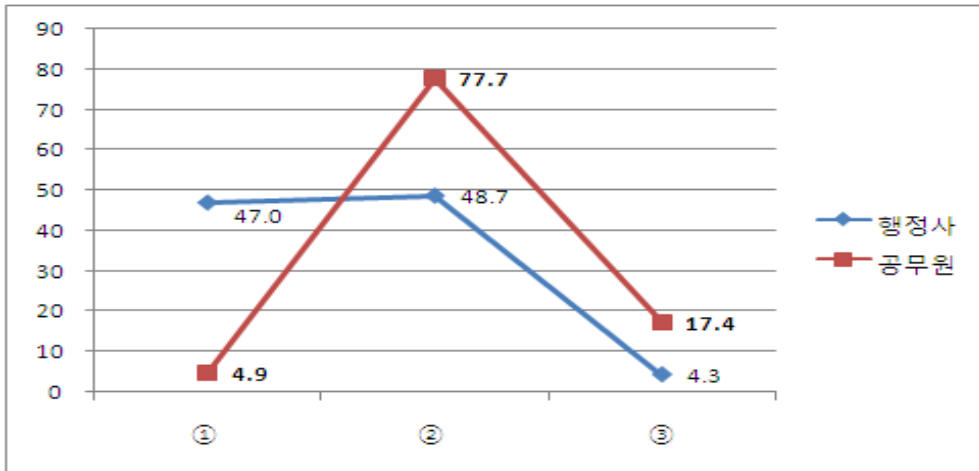
좋다는 의견이 47.0%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타 자격사에 비해 수익전망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77.7%로 절대 다수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앞에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53.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표 3-27 > 행정사의 수익전망에 대한 의견 비교

타 자격사와 비교한 향후 수익 전망	행정사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① 타 자격사에 비해 수익전망이 좋다	196	47.0	23	4.9
② 타 자격사에 비해 수익전망이 떨어진다	203	48.7	365	77.7
③ 변화가 없다고 본다	18	4.3	82	17.4
합계	417	100.0	388	100.0

< 그림 3-24 > 행정사의 수익전망에 대한 의견 비교



- ① 타 자격사에 비해 수익전망이 좋다
- ② 타 자격사에 비해 수익전망이 떨어진다
- ③ 변화가 없다고 본다

(15) 소속기관에서 행정사 시험 응시 예상인원

○ 소속기관에서 2013년에 시행되는 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예상인원에 대한 설문에 다수가 응답하였지만, 소속기관을 명확하게 기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소속기관은 기입하였더라도 예상인원을 기입하지 않은 응답지를 제외하고 통계에 활용할 수 있는 응답지는 337건임. 예상인원은 합부로 해석할 수 없기에 응답지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정리함. 전국단위에서 5,000명이라는 응답자가 1명 있음.

< 표 3-28 > 소속기관별 행정사 시험 응시 예상인원

광역단체	기초단체
① 서울 (50,1000-3)	동작구(20), 관악구(10), 서대문(10), 성북(50,100,100), 영등포(10,10,15)
② 부산 (20,20,25)	동구(0,2,100), 해운대(20,50), 사하구(5,10,10), 중구(10,20,30), 남구(5,10,10), 기장군(5,10,10), 강서구(5,10,50), 동래구(0,0,3), 연제구(2,3,4), 부산진구(0,0,0)
③ 대구 (10,20,50)	북구(50), 남구(0,0,20), 달서(0,2), 달성(3,4,4), 동구(30,30,50), 서구(5,5,5), 수성구(0,0,0), 중구(2,5,10)
④ 인천 (0,0,0)	계양(10), 남동구(10,10,10), 동구(2,3,5), 부평(3,5,5), 연수구(0,1), 중구(0,20,50),
⑤ 광주	
⑥ 대전 (20,50)	
⑦ 울산 (50,50)	중구(20,50,50), 남구(20), 동구(10,10,30), 북구(2,5,5), 울주군(2,2)
⑧ 경기 (2,10,10,20, 20,100,500, 1000)	성남(2,2,3), 연천(0,0,0), 가평(2,5), 과천(1,2,50), 양평(5,10), 여주(2,2,5), 의왕(0,0,2), 오산(10,30,30), 포천(5,10,10), 안성(5,10,10), 구리(10), 이천(20,20,100), 김포(3,20), 광주 (10,10,20), 군포(4,5,5), 파주(10,100,100), 광명(10,10), 화성(10,20,100), 시흥(10), 평택(10,15), 의정부(80,100,120), 남양주(0,3,20), 안양(1,1,2), 용인(30), 부천(5,10,30),

광역단체	기초단체
⑨ 강원	강릉(0), 양양(3), 영월(10), 인제(5, 10, 20), 화천(5, 10, 30), 원주(5, 30)
⑩ 충북 (5)	제천(0,0,0), 영동(2), 청원(5), 청주(30,30,35), 충주(2,5)
⑪ 충남 (4,5,10,10, 10,20,30,100,300,500)	천안(20,20), 서산(5), 논산(6), 계룡(0,2,2), 당진(2,2), 금산(2,10,10,10,10), 서천(1,2,2), 예산(2,10), 태안(10)
⑫ 전북 (100)	고창(10), 군산(5,10,10), 부안(10,10), 임실(1), 진안(5,7,10)
⑬ 전남	보성(2,3,3), 여수(30,40,50), 강진(2), 광양(3,5,6), 구례(0,3,10), 나주(10), 보성(5,10,10), 순천(3,5,10), 함평(0,0,0), 해남(3,5,20)
⑭ 경북 (4,10,30,40)	고령(5,5,5), 구미(80, 100, 100), 문경(3,3,5), 봉화(10, 15, 20), 성주(20, 20, 30), 영양(5, 10, 30), 울릉(5), 의성(10, 20, 30), 청송(300), 경산(4, 10), 영주(5, 5, 5), 울진(10), 포항(10, 20, 50)
⑮ 경남 (100)	거창(0), 김해(15,20), 산청(5), 의령(1), 창녕(2), 통영(20,20), 남해(2,5,10), 밀양(3,5,6), 하동(5,10), 함양(2,10), 함천(5), 거제(10,10), 양산(150,150,150), 함안(1,10,10), 창원(10,20,20)
⑯ 제주 (0,10,20)	서귀포(10)

제2절 타 전문자격과의 선발제도 비교

1. 법무사

(1) 법무사의 역할

- 법무사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무사의 본질은 법무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 따라서 법무사 시험제도는 이와 같은 법무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직무능력의 구비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법률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법률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무사의 역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법무사 수	2,278	2,949	4,272	5,224	5,363	5,517	5,683	5,826	6,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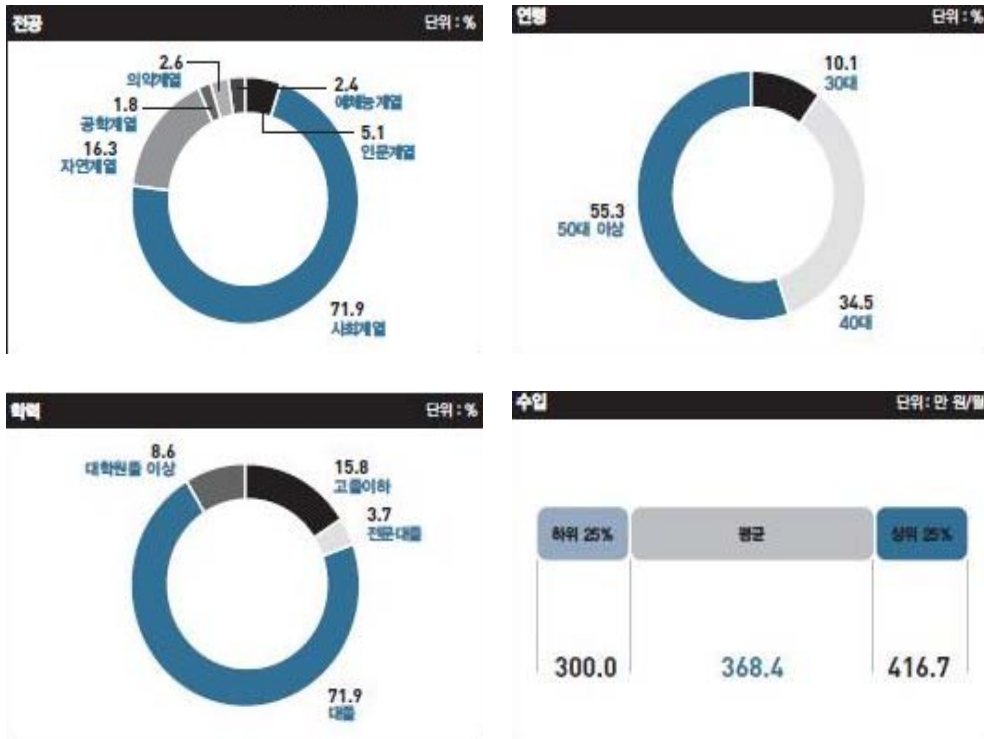
자료: 대한법무사회, 내부자료

<http://www.work.go.kr/constiJobCarpa/srch/kor.JobProspect/kor.JobProspectDtlInfo.do?pageType=SrchBy.JobCl&fjobCd=KR040003&choiceCode=KR01&tabNo=4>

- 연도별 법무사의 수를 보면 2002년 2,278명에서 2005년 5,224명으로 129.3%나 증가하였음
 - 법무사의 업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기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법무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경기불황으로 2005년 이후 법무사의 증가추세는 한해 100~200명 수준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법무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6,030명임(법무사회 2010년 법무사 현황자료)
- 법무사의 주 업무로 볼 수 있는 비송사건(등기, 가족 관계법, 공탁)에 대한 실적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등기신청건수는 11,009,569건이며 가족관계 비송사건은 328,090건, 공탁사건은 209,935건으로 경기의 변동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건의 처리가 확대되고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첨부서류 등이 더욱 간소화되면 일반인의 직접 소송이 가능해지므로 법무사의 등기업무 등에 대한 수요는 다소 위축될 수 있음
 - 특히 업무의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와의 경쟁, 경매 및 공매와 관련한 공인중개사와의 경쟁 등으로 경쟁력이 있는 법무사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됨
 - 법무사협회 등에서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법무사의 업무를 경매 및 공매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대리 등으로 확대했음
 - 향후 소액소송사건에서 법무사가 변호사처럼 소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된다면 법무사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 과거 공무원 경력자가 법무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가 폐지되고,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면제하고 있어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 법무사 지망생들에게 응시기회가 더 주어질 것으로 보임
 - 법무사 시험은 응시하는 사람에 비해 합격하는 사람이 매우 적어 입직 경쟁률은 높은 편임

<그림 3-25> 법무사 증서현황 및 수입



<http://www.work.go.kr/constJobCarpa/srch/korJobProspect/korJobProspectDtlInfo.do?pageType=SrchByJobCI&fjobCd=KR040003&choiceCode=KR01&tabNo=3>

(2) 법무사의 시험제도

가. 시험과목

- 법무사 시험제도는 제1차와 2차, 그리고 제3차로 나누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제1과목에서 제4과목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음
 -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제1차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제1과목에서 제4과목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루게 되어 있음
 - 3차 시험은 면접에 의한 구술시험으로 치고 있음

나.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과와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제2항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응시과목들의 평균 점수를 합격 점수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별표 3] <신설 2004.1.24>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의 일부면제자의 합격점수(제13조제3항관련)

$$= \text{전과목 응시자중 최종 순위} \times \text{전과목 응시자의} \\ \text{합격자의 전과목 평균점수} \quad \text{3·4과목 평균점수}$$

$$\text{전과목 응시자의} + \text{전과목 응시자의} \\ \text{1·2과목 평균점수} \quad \text{3·4과목 평균점수}$$

(합격점수 및 위 각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평정점수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평정점수의 평균이 "중"(2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표 3-30> 법무사 시험과목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1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다. 시험 일부면제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함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라. 법무사의 선발예정인원제도

-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선발하되, 그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 표 3-31> 법무사 선발예정인원

연도	92	94	96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인원	60	60	80	30	50	8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 자료: 노동부(2007: 50).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 실제 합격자 추이를 보면, 제1차 합격자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수의 3배-5배로 되어 있으며, 동점자를 처리하기 위해 그보다 약간 웃도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2004년부터 선발예정인원을 120명을 유지하면서 120명을 약간 웃돌고 있음

< 표 3-32> 법무사 합격자 추이

구분	92	94	96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1차 합격자	311	301	421	127	154	245	312	307	318	388	365	373	386
2차 합격자	59	60	80	30	52	80	101	100	100	121	122	123	121

* 자료: 노동부(2007: 51).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마. 최근의 법무사의 시험 동향

- 법원행정처는 2012년 5월 1~7일 올해 법무사시험 원서를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음
- 제1차시험은 6월 30일(토)로 지난해보다 닷새 늦춰졌으며, 제2차시험도 1주일 가량 늦어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며, 제3차시험은 2013년 1월 17일 실시될 예정임
- 1차 합격자는 8월 8일, 2차는 11월 28일이며 최종합격자는 2013년 1월 29일 발표할 예정임
- 선발인원은 올해와 같이 120명임
- 한편, 최근 법무사 인기가 떨어지면서 올해도 출원자가 감소로 이어질지도 하나의 관심사임
 - 지난해의 경우 총 3,798명이 출원해 31.7대 1의 경쟁률에 그쳤는데, 이는 전년도(4,100명)에 비해 302명인 7.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12년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출원자 감소는 법무사 업계의 불황에다 전망조차 밝지 않다는 게 중론이며,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법조 유사직역의 불안정성이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임

2. 세무사

(1) 세무사의 역할

- 세무사는 독립된 전문인으로서 세무와 관련된 일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형성하는데 조력하며, 세무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여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함

- 오늘날 대부분의 조세가 신고납세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세무사의 역할은 중요한데 세무사의 직무는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법률과 회계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 2009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자료에 따르면 세무사 종사자수는 8,752명(2010년 기준 한국세무사회 개업 세무사 수)
-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세무 업무를 할 수 있음

<그림 3-26> 세무사 종사현황 및 수입



<http://www.work.go.kr/constJobCarpa/srch/korJobProspect/korJobProspectDtlInfo.do?pageType=SrchByJobCl&fjobCd=KR010005&choiceCode=KR01&tabNo=3>

(2) 세무사의 시험제도

가. 시험과목

- 세무사 자격시험은 1, 2차 필기시험으로 나누어지고 학력, 전공 등의 제한은 없음
 - 시험과목에서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 법률(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등의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 경영, 법학, 세무회계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함
 - 이 외에 사설 학원에서도 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간의 집합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는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세무사 시험은 1, 2차 필기시험으로 나뉘며 1차에서는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영어를 비롯해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일하여 객관식 필기시험을 보고 2차에서는 세법학, 회계학 등의 주관식 필기시험을 봄
- 2009년도 기준으로 세무사 시험에 응시한 2,398명 중에 26.3%인 631명이 합격하였음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① 재정학 ②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제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③ 회계학개론 ④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5지택일형)
제2차 시험	①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② 회계학2부(세무회계) ③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④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 관 식 필기시험

-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되며,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음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일반응시자 기준점수	530	197	71	700	625	레벨2의 65점	625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352	131	-	350	375	레벨2의 43점	375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의 점수를 인정. 다만,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시험장관할 지부·지사)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12. 3. 28)까지 성적 발표가 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나.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 시험
 -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함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시험 일부면제

-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 2011년도 제4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3) 세무사의 최소합격인원제도

- 2002.1.18. 규제개혁위원회는 세무대리인이 국민에게 저가·양질의 조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운영토록 의결하였음
 - 세무사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세무사의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절대평가제)로 결정하나, 최소합격인원제는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자로 결정
 - 이에 따라 동점자를 합격처리함에 따라 매년 700명을 약간 웃도는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음

< 표 3-33> 세무사 연도별 최소합격인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원(명)	700	700	700	700	700

* 자료: 노동부(2007: 47).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 표 3-34> 세무사 연도별 합격자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	2007	2008	2009
합격자	717	702	706	704	-	704	707	633	631

* 자료: 노동부(2007: 47).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내부자료 참조

(4) 최근의 세무사의 시험 동향

- 향후 5년간 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세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에서도 납세자가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세무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향후 세무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수에 비해 자격 취득자가 적어 경쟁이 치열한 편임

- 한국세무사회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개인 및 법인의 세무사는 2010년 기준으로 8,752명임
- 2007년까지 매년 700명 내외가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다가 2008년부터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에서 630명으로 약 10% 감소하였음
-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업체와의 거래가 줄고,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세무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세무사의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실제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실제 세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합격자 중 70%가량인데다 세무사업계에서도 세무사 합격자 수를 줄일 것을 제안하여 최소합격자 수가 감소하게 되었음

○ 자격을 취득하고도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기가 쉽지 않게 되면서 자격증을 활용해 일반기업이나 공기업 혹은 정부부처 등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세무사가 주식회사의 이사와 공동으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회계참여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참여제도’, 세무사가 법정에 출두하여 납세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조력하는 ‘사법보좌인 제도’ 도입 등 세무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상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기존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세무사가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국가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세무사

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됨

3. 변리사

(1) 변리사의 역할

- 변리사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그 소송을 대리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대리인임
 - 변리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등록, 취득, 보존하는 업무를 대행함
 -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과 저작권(著作權)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함
 - 산업재산권(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함)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취득되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변리사임
-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받고, 등록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출원업무와 지식재산권관련 분쟁업무로 분류됨
 - 특허출원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국내출원, 한국 국민이 외국특허청에 출원하는 해외 진출출원(outgoing), 외국인이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국내 진출출원(incoming)으로 나눌 수 있음
 - 해외진출출원의 경우 특허명세서를 한글로 써서 다시 이를 영문 등으로 번역해 외국의 변리사를 통해 외국 특허청에 출원하며, 국내진출출원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영문명세서를 번역하여 이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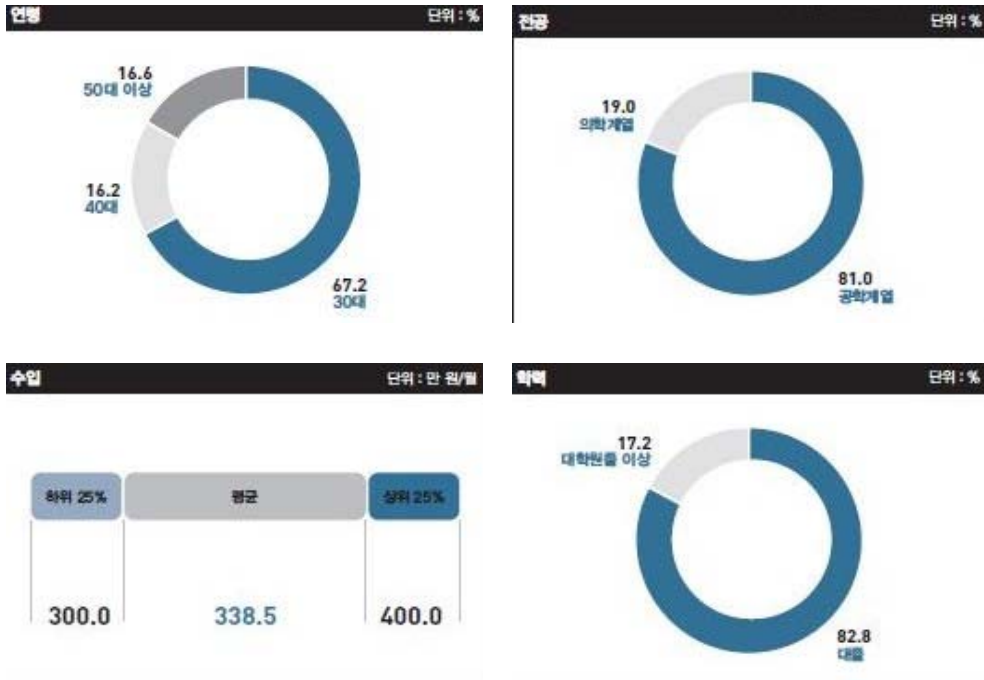
특허청에 제출하여 등록받는 절차로 이루어짐

- 국내출원의 경우 ‘의뢰인과의 상담 →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조사·검토 → 특허등록이나 소송을 위한 문서작성 → 특허권 출원, 청구’의 과정을 거쳐 이뤄지며,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뢰를 받은 변리사는 발명자나 출원인과 출원서의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함
- 그 후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 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하며, 다른 지식재산권에의 침해 여부 및 두 개의 발명이나 고안이 같은지 아니면 유사한지의 여부,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 등도 하게 됨
- 위와 같은 조사 및 검토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특허등록을 위한 문서작성(또는 소송을 위한 문서작성)을 하고 초안이 완성되면 고객과 초안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특허권을 출원·청구함

○ 변리사는 특허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함

- 권리분쟁에 관한 이의신청, 심판이나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하며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준비 절차나 변론 기일에 참석해 변론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함
- 또한, 특정 특허가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도 수행하며, 이 외에 기업 간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이나 지식재산권관련 법률자문, 국제 분쟁의 조정 등 변리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변리사의 업무가 전문화되어 크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분야로 나뉘고 더 나아가 대형 특허사무소인 경우에는 전자, 기계, 화학공학 등 전공 분야별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음

<그림 3-27> 변리사 증서현황 및 수입



<http://www.work.go.kr/constJobCarpa/srch/korJobProspect/korJobProspectDtlInfo.do?pageType=SrchByJobCI&fjobCd=KR040004&choiceCode=KR01&tabNo=3>

(2) 변리사의 시험제도

가. 시험과목

-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리사로 등록해야 함
- 변리사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지만 산업발전 추세를 반영해 대학에서 전자, 기계, 화학공학, 건축공학, 물리, 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함
 -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1, 2차 필기시험으로 보게 됨
 - 시험 과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업

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히 대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함

-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은 매년 1회 치러지는데, 시험은 1차 객관식 필기시험(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과 2차 논술형 필기시험(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기타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짐
 - 공인된 영어능력검정시험(TOEFL, TOEIC, TEPS)에서 일정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1개월, 특허사무소(기업체 지식재산팀, 연구소 등)에서 11개월 등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함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존의 특허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되거나 고용변리사로서 취업할 수 있으며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취직할 수 있음
 - 변리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수습과정을 마친 후에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변리사 5인 이상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대기업, 종합법률사무소 특허증 등에 특별 채용되기도 함

①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5지택일형

- ①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포함)
- ②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③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 ④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②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① 특허법(조약 포함)	② 상표법(조약 포함)	③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과목)	①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② 저작권법	
	③ 산업디자인	④ 기계설계	⑤ 열역학
	⑥ 금속재료	⑦ 유기화학	⑧ 화학반응공학
	⑨ 전기자기학	⑩ 회로이론	⑪ 반도체공학
	⑫ 제어공학	⑬ 데이터구조론	⑭ 발효공학
	⑮ 분자생물학	⑯ 약제학	⑰ 약품제조화학
	⑱ 섬유재료학	⑲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됨
-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373	146	41	387	420	51(level-2)	350

※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 제1차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 다만, 수험원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 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제2차 시험의 일반 응시자의 경우,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특허청 경력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다. 시험 일부면제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 가령, 2011년 제48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2년 제49회 변리사 제1차시험 면제

< 제48회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제1차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일반응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금회 제1차시험 재응시를 희망할 경우 기 제출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으로 다시 제출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시험에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고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 처리

- 특허청 경력자
 -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시험 초일)는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제1차시험 면제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시험 초일)는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

(3) 변리사의 최소합격인원제도

- 2002년부터 변리사시험제도의 절대평가제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험에 의한 변리사의 배출이 확대되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운영토록 의결(2001.12.7.)함에 따라 특허청장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절대평가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시험관리를 위하여 1차 시

험의 합격자를 최소합격인원의 일정배수(2005년까지는 5배수, 2006년은 4배수, 2007년부터는 3배수)로 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 당초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이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절대평가제)를 합격자로 결정토록 하였음
-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1차 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고득한 자로 하고, 특허청장이 최소합격인원으로 공고한 인원의 일정배수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대평가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차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특허청장이 정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미만자도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임
- 2차 시험에서 출제의 난이도나 채점의 점수분포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자가 특별히 적게 나올 수도 있음
- 이것은 합격자 수를 가급적 많이 배출하기 위해 절대평가제로 제도를 개선한 근본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를 보완하기 방안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한 일정수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최소합격인원이 200명으로 시행되면서 2차시험 합격자는 동점자가 있어 200명을 약간 웃돌고, 1차시험 합격자는 매년 최소합격인원의 약 3-5배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표 3-35> 2012년 변리사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 표 3-36> 변리사 최소합격인원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원(명)	200	200	200	200	200	200

* 자료: 노동부(2007: 44).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 표 3-37> 변리사 연도별 최소합격인원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원(명)	200	200	200	200	200	200

* 자료: 노동부(2007: 44).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5) 최근의 변리사의 시험 동향

- 향후 5년간 변리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에 변리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변리사의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출원’과 ‘심판 청구 및 처리’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향후 변리사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관련한 출원 건수가 2005년에 359,207건에서 2009년 364,990건으로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심판청구 처리건수가 2005년 11,919건에서 2009년 15,234건으로 27.8% 늘어났음

연도	출원건수	심판청구건수	심판채위건수
1999	231,028	7,413	7,279
2000	283,087	5,496	6,079
2001	289,420	7,028	5,996
2002	290,792	7,729	6,890
2003	306,001	8,398	7,120
2004	327,516	9,667	8,875
2005	359,207	12,754	11,919
2006	372,520	15,491	15,336
2007	380,203	17,600	17,368
2008	372,697	18,864	17,359
2009	364,990	15,583	15,234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 수요 증가 때문에 등록된 변리사는 2005년 1,138명에서 2009년 2,464명으로 약 116.5% 증가하였음
 - 특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변리사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합격자 수가 2000년 120명에서 2001년부터 200명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매년 약 200여 명의 변리사가 배출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단순히 기술개발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대외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에서 변리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변리사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변리사 수	611	668	726	766	1,088	1,138	1,853	2,086	2,304	2,464

자료: 대한변리사회 소속 회원 수(변리사 회원 포함)

-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재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내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로 첨단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어 출원 및 심판청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변리사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산업 중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IT 분야와 생명공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리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와 이에 따른 특허분쟁사례 증가, 국제출원 업무의 증가 등 변리업무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외국어 능력을 갖춘 변리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더불어 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는 등 일반기업에서의 변리사 활동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변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매년 200명씩 선발되고 변리사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변리사로 활동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몇몇 대형법인의 시장 과점현상과 수입 단가의 자유화 때문에 영세한 특허법률사무소나 개인사무소는 경영난을 겪는 등 업계 간 양극화가 심해 변리사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변리사 시험의 1차 합격자 과다 배출로 고시 낙방생이 대거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 향후 변리사시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6) 2012년 제49회 변리사 원서접수 통계

< 표 3-38> 변리사 접수자 접수현황

구 분	계	일반응시자 (1차 대상자)	시험일부면제자 (1차 면제자)	비고
2012년도 제49회	4,325	3,605	675	
2011년 제48회	4,609	3,921	688	

< 표 3-39> 변리사 접수자 성별

구 분	계	남 성	여 성
성 별	4,325	3,245(75%)	1,080(25%)

< 표 3-40> 변리사 접수자 연령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성 별	4,325	1	2,493	1,423	354	4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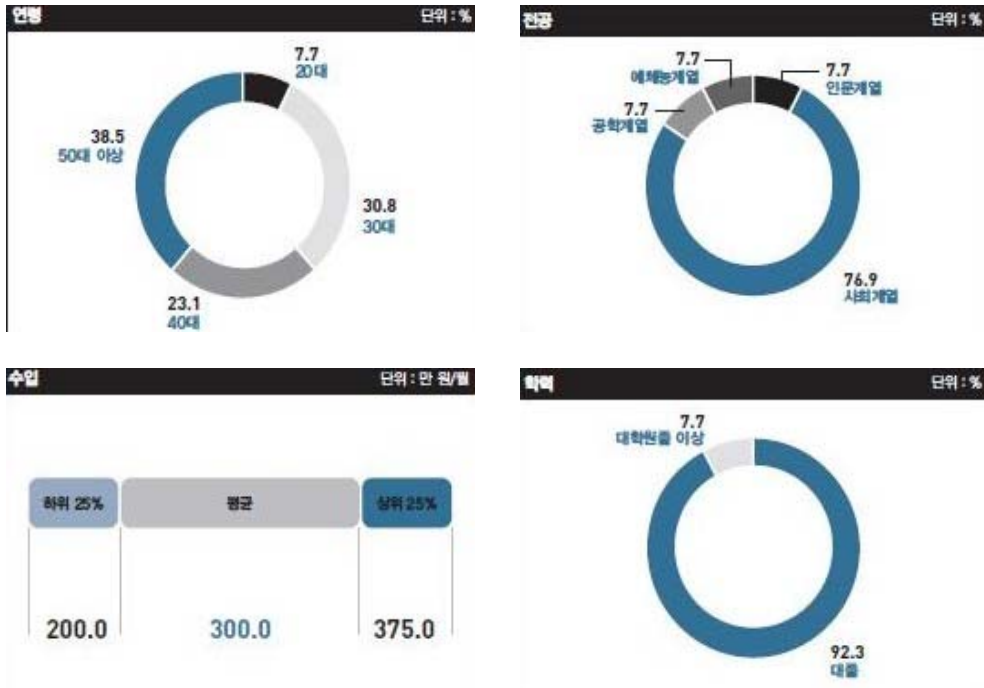
4. 공인노무사

(1) 노무사의 역할

-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전문자격사로,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노무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자 측과 근로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공정한 조정을 수행
- 노무사의 주요 업무는 크게 노동관련 업무를 대행·대리하는 일과 노동문제 및 노무관리 전반을 컨설팅 하는 일로 구분됨
 - － 경영진 측과 노조 측이 파업 등의 극단적 대립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정하는 중재역할을 담당하며, 종업원이 채용되어 퇴직할 때까지

의 인사노무관리, 집단적 노사관계(노사협의, 단체교섭, 임금협약,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상담, 지도 등의 자문을 수행

- 사업장 내의 고용, 임금, 근로시간, 직무분석, 직무평가, 인사고과, 교육훈련, 승진, 복지후생, 안전보건, 퇴직, 노사관계 등 인사노무관리 및 집단 노사관계관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노무관리진단을 고유 업무영역으로 하는 등 노·사 대상 각종 컨설팅 사업을 실시
- ‘국선노무사’로 활동하기도 하는데, 월평균 임금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을 때 국선노무사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



<http://www.work.go.kr/constJobCarpa/srch/korJobProspect/korJobProspectDtlInfo.do?pageType=SrchByJobCI&fjobCd=KR010002&choiceCode=KR01&tabNo=3>

(2) 노무사의 시험제도

가. 시험과목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12년도 제21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의 공고를 보면,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50명임

<표 3-42>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제1차시험 (5과목)	필수 과목 (4)	①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②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③민법[100점]	총칙편, 채권편
		④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선택 과목 (1)	⑤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100점]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구 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제2차시험 (4과목)	필수 과목 (3)	①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인사노무관리론 [100점]	
		③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 (1)	④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제3차시험	면 접 시 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제1차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25문제씩 출제)
- 제2차시험 : 논문형(과목당 3문제씩 출제, 노동법은 4문제)
- 제3차시험 : 면 접

나. 합격자 결정기준

①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

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1.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text{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의 총합계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의 거듭제곱근

-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이하 영어시험성적표라 한다)로 대체
 -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음

영어능력 검정시험	토플(TOEFL)	토픽 (TOEIC)	텡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기준점수	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② 제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시험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

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

1. $(\text{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div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2.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2\}$ 의 총합계 $\div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의 거듭제곱근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다. 시험 일부면제

①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시험 면제 : 2011년 제20회 제1차시험 합격자
-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2011년 제20회 제2차시험 합격자

②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 a.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b.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1996년 8월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 c.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d.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e.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③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면제
 -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②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2012. 10.24)

(3) 노무사의 최소합격인원제도

- 공인노무사의 선발제도는 그 동안 시장수요에 따라 선발할 수 있었던 상대평가 방식이 1999년 이후부터 선진국 수준의 전문자격사를 배출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해당 연도의 출제·채점의 난이도에 따라 일시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합격되거나 너무 적은 인원이 합격되는 등 합격인원 수의 편차가 심해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음
- 2007년 8월 3일에 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는 공인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관련 업무를 심의하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회가 시험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사전에 최소합격인원을 공지하도록 하는 ‘최소합격인원제도’의 내용을 담아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게 되었음
-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인노무사 선발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시험공고시 정한 최소합격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 과목이 4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최소합격인원만큼을 선발하게 되는 것임

<표 3-43> 공인노무사 시험합격자 배출현황

(단위: 명, %)

연도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노동행정 경력자
1회(1986년)	45,785	111	0.00	4
2회(1989년)	2,059	28	0.00	6
3회(1991년)	2,426	31	0.01	8
4회(1993년)	555	18	0.02	17
5회(1995년)	409	42	0.07	33
6회(1997년)	531	43	0.05	119
7회(1998년)	570	37	0.05	100

연도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노동행정 경력자
8회(1999년)	962	103	0.08	0
9회(2000년)	793	71	0.07	51
10회(2001년)	979	201	0.16	25
11회(2002년)	1,035	147	0.11	65
12회(2003년)	1,405	61	0.03	3
13회(2004년)	1,650	275	0.13	1
14회(2005년)	2,140	140	0.05	0
15회(2006년)	3,072	122	0.03	1
16회(2007년)	3,574	229	0.05	38
17회(2008년)	4,009	208	0.05	-
18회(2009년)	4,945	247	0.05	-
19회(2010년)	2,565	253	0.09	-
20회(2011년)	2,909	244	0.08	-

* 노동부 노동통계 2007. 재구성; 노동부(2007: 34).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 2008년 이후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고(노동행정경력자 수 제외)

(5) 최근의 노무사의 동향

- 향후 5년간 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인노무사는 노사관계 관련 대표적인 전문자격사로, 1986년 제1호 공인노무사가 탄생한 이래 2009년 12월 현재 2,112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음
 - － 향후 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아직은 노동시장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
 - － 2008년부터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노무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매년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심의를 통해 적정한 인원의 규모를 정하고 있음
 - － 최소합격인원제도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250명가량의 공인노무사가 배출될 예정이며, 공인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대다수의 사람이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음

연도별 공인노무사 합격자 수					(단위: 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격자 수	140	122	229	208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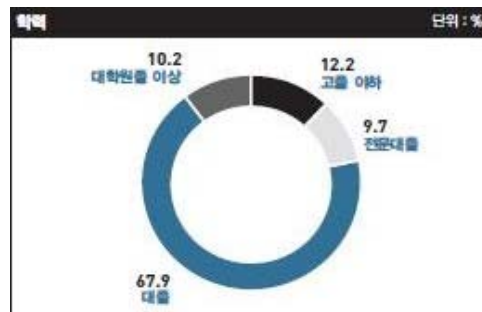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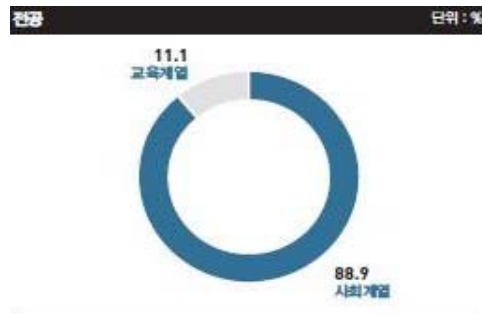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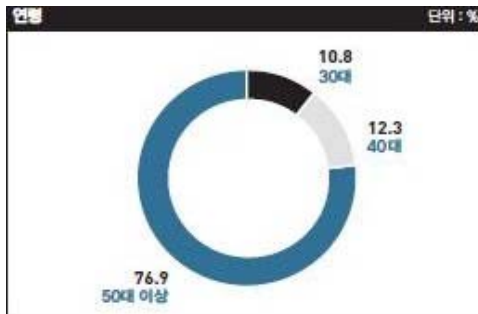
자료: 한국공인노무사회 내부 자료

-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허용, 노사관계의 재정립 등 노동관련 이슈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 노동관계법령이 수시로 변화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 노사관리 문제가 기업운영에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 기업에서는 노무법인에 위탁해 사건을 처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인사나 노사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으로 노무사를 채용하고 있음
 - 앞으로도 노동쟁의 발생 시 분쟁을 조정하거나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노무사에 대한 필요와 고용은 기업체와 공공조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근로자들도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면서 부당해고, 업무상 재해, 임금체납 등 기업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에 대한 문제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노무사가 필요함
 -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용과 임금 등에서 차별과 부당함을 조사하는 ‘노무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노무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인사 및 노무 컨설팅업계에서도 외국계 컨설팅업체가 진출하면서 외국계 CEO와 의사소통하고 선진 사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외국어 실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노무사에 대한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5. 관세사

(1) 관세사의 역할

- 관세사는 원재료나 제품 등을 외국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임
 - 세관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해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돕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관련 법령을 파악해 관련 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 관세사들의 주요 업무임
- 관세사는 수출·수입품의 통관절차를 대신해주거나 관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관세법상의 행정상 의무를 대행하고, 관세관련 분쟁 발생 시 관세법에 의한 의의 청구와 심판 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하는 관세 전문인임



<http://www.work.go.kr/constJobCarpa/srch/korJobProspect/korJobProspectDtlInfo.do?pageType=SrchByJobCI&fjobCd=KR010006&choiceCode=KR01&tabNo=3>

- 수출입의 신고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일반인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확인사항, 품목분류, 관세평가, 검역 등 통관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들을 알기 어려워 관세사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입 통관 업무를 수행함
- 관세사의 주요업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업무,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 업무,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물품의 검역·검사업무 등 대행,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종 전문상담, 무역송장(무역계약 성립 후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명세, 가격, 수량 등을 나타내는 서류) 작성, 클레임 해결 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무역관련 업무절차를 대행하는 것이거나 물류관련 연계서비스에 해당함
- 관세사는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통관을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취합하는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함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신기 전까지 과정에서 수출할 품목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를 확인하고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함
 - 서류작성은 관세청의 UNI-PASS 또는 수출입통관 EDI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신고자료 전송 후 해당 세관에서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아 화주(화물의 주인)에게 발급함
 - 환급에 필요한 소요량 계산서의 작성,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반송신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적재스케줄 변경 신고 등의 서류 작성을 대행함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업무를 대리하며,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업무 등을 함

- 기업의 자율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을 위해 관세 심사의 중요 결정사항인 과세가격결정과 세율책정, 감면 여부 등에 대해 조언해주고 통관한 물건의 심사를 도모여, 이 밖에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 세액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관세사의 시험제도

가. 시험과목

-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함
 -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함
 - 관세법, 내국소비세법, 회계학(회계원론과 회계이론에 한함), 관세유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무역영어 등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의 전공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에 유리함
 -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주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세 및 상품학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외국어 실력도 필요함
-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자격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구분해 시행되며, 각각 과락(40점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됨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하는데, 2009년도 기준으로 관세사 시험에 지원한 1,596명 중 123명만이 합격

하였음(합격률 7.7%)

구 분	교 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분)	①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② 무역영어
	2교시	11:10	11:30 ~ 12:50 (80분)	③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에 한함) ④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 관한법률은 폐지

구 분	교 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제2차 시 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분)	①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교시	11:10	11:30 ~ 12:50 (80분)	②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13:50	14:10 ~ 15:30 (80분)	③ 관세평가
	4교시	16:00	16:20 ~ 17:40 (80분)	④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행계획 공고일” 현
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나.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씩 출제)
- 제2차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6문제씩 출제)
- 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
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시험 일부면제

- a.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 제1차시험 면제
 - 1) 2011년도 제28회 관세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b.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
 -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 3)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기 관 명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기획재정부	관세국
관 세 청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 부서
세 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심사·조사·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
감 시 소	전 부서

(3) 관세사의 최소합격인원제도

○ 2012년도 제29회 관세사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5명임

< 표 3-44> 관세사 최소합격인원 및 2차 시험 합격자수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최소합격인원	75명	75명	75명	75명	75명
2차시험 합격인원	140명	75명	75명	75명	75명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최소합격인원	75명	75명	75명	75명	75명
2차시험 합격인원	75명	86명	75명	75명	75명

(4) 최근의 관세사의 시험 동향

- 향후 5년간 관세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수출과 수입을 통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국내외의 경제상황 때문에 연도별로 수출·수입 건수와 금액규모는 변동이 있지만 그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통관절차를 담당할 관세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임
- 세관을 통한 수출입신고의 대다수(약 90%)가 관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과 수출규모의 증가는 관세사의 수요를 더욱 높일 것임

연도	수출	수입
2000	3,615,252	3,302,214
2001	3,601,725	3,222,718
2002	4,011,473	3,801,904
2003	4,307,567	4,037,458
2004	4,633,632	4,337,168
2005	4,720,201	4,781,811
2006	4,841,731	5,216,317
2007	5,028,135	5,667,966
2008	5,223,726	5,850,875
2009	5,359,331	6,089,545

자료 : 통계청, 내부자료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한 시장 상호개방은 우리나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됨
 - 201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10개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 칠레, 싱가포르 등 39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협상을 타결하거나 서명을 끝낸 미국, 페루, 그리고 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터키, 중동국가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와의 FTA체결국은 더 확대될 예정이므로 자유무역협정(FTA)이 계속 확대되면 관세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국가마다 협약 내용과 범위가 달라 협정품목 확인, 협정관세율 확인,

- FTA 통관절차 확인, 원산지증명서 확인 등 수입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확인 업무가 증가할 것임
-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과 FTA 최대 수혜자가 되기 위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출입과정에서 FTA 관련 업무의 종합 서비스 제공 등 관세사의 활동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임
-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일반인도 관세업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이 관세 및 무역 업무에 관한 자체 조직을 갖추는 것은 관세사의 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인터넷통관시스템(유비쿼터스 세관 : Ucustoms), 통관업무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 기존 수출입 통관신고업무에 대한 수익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관세사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 개업관세사는 2000년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에 1,071명이던 개업관세사는 2009년에 1,368명으로 27.7%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이후 관세사자격 취득자는 매년 약 120명~130명 수준임
 -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 관세사 시험에 지원하는 사람은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 입직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함

연도	자격소지자 수	개업자 수
2000	1,725	739
2001	2,200	809
2002	2,831	848
2003	3,020	914
2004	3,133	998
2005	3,271	1,071
2006	3,414	1,120
2007	3,557	1,191
2008	3,687	1,280
2009	3,810	1,368

자료: 한국관세사회 내부자료

6. 시사점

- 전문자격사의 최소선발인원합격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변리사의 경우 2002년부터 변리사시험제도의 절대평가제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험에 의한 변리사의 배출이 확대되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운영토록 의결(2001.12. 7)함에 따라 특허청장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절대평가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시험관리를 위하여 1차 시험의 합격자를 최소선발인원의 일정배수(2005년까지는 5배수, 2006년은 4배수, 2007년부터는 3배수)로 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최소합격인원이 200명으로 시행되면서 2차 시험 합격자는 동점자가 있어 200명을 약간 웃돌고, 1차 시험합격자는 매년 최소합격인원의 약 3-5배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세무사의 경우, 최소합격인원을 2002년부터 현재까지 700명으로 정해오고 있으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하되,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자로 결정함
 - 이에 따라 동점자를 합격처리함에 따라 매년 700명을 약간 웃도는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음
- 법무사의 경우, 최종합격자수는 2004년부터 선발예정인원을 120명을 유지하면서 120명을 약간 웃돌고 있음
 - 제2차 시험합격자는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선발하되, 그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 실제 합격자 추이를 살펴보면 1차 합격자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수의 3배-5배로 되어 있으며, 동점자를 처리하기 위해 그보다 약간 웃도는

경우가 있음

- 관세사의 경우, 최소합격인원수를 전년도 합격자의 $\pm 20\%$ 범위 내에서 정하되, 매년 최소 일정인원(2003년부터 현재까지 75명)이상이 되도록 함
 - 2003년에는 가산점을 받는 전산자격 소지자가 대거 합격해 선발예정인원의 거의 2배 수준의 합격자를 냈으나, 그 후로는 선발예정인원(75명)과 같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음

<표 3-45> 타 자격증과 종사자 비교방식을 통한 적정 행정사 산정

자격별	연도별	종사자	합격인원 (종사자 대비)	응시인원
법무사	2011	6,203명	121명 (1.9%)	3,798명 (합격률 3.1%)
세무사	2011	9,779명	630명 (6.4%)	6,103명 (합격률 10.3%)
변리사	2011	2,997명	240명 (8.0%)	2,868명 (합격률 8.4%)
노무사	2011	1,823명	244명 (13.3%)	2,909명 (합격률 8.4%)
관세사	2011	1,434명	75명 (5.2%)	1,324명 (합격률 5.7%)
일본행정사	2011	42,328명	5,337명 (12.6%)	66,297명 (합격률 8%)

- 타자격증 선발인원과의 비교를 통해 선발인원 산정
 - 타 자격별 선발인원은 대부분 종사자 수의 5~13% 수준 선발
 - 합격률은 3-10%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사의 경우도 타 자격증 선발사례를 참고로 하여 선발인원 및 합격률을 고려하여 선발인원 산정에 참조하여야 할 것임

제3절 일본의 행정사제도 사례

1. 지방분권화와 행정서사제도

(1) 지방분권화와 행정서사 제도

- 지방행정의 사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대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행정서사”제도는 1951년 법제정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 일본의 행정서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현장조사에 기초한 도면 등을 포함)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행정서사법(이하 법으로 약칭), 제1조2항)
- 이들 업무는 다른 법률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서사의 독점 업무로 되어 있으며, 행정서사가 아닌 자는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법 제19조1항)
- 이들 업무 외에 업무독점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정서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얻어, 행정서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대신하여 주거나, 해당서류의 작성에 대해서 상담에 응할 수 있게 되어 있음(법 제1조3항)
- 이러한 행정서사의 업무는 관공서에서 공무의 원활한 집행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깊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은 행정서사의 자격, 등록, 책무, 행정서사회 및 일본행정서사연합회의 역할 등을 정하며, 업무의 적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의뢰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 행정서사에 대한 입회검사 및 의무의 금지 등의 처분, 그리고 각 도도부현의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행정서사회에 대한 감독은 각 도도부현 지사

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법 제13조, 18조의 6 등)

- 종래에는 자치성(현재의 총무성)에서 행정서사제도의 기획입안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도도부현이 행정서사회나 행정서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음
- 행정서사 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각 도도부현이 보고를 요구해 왔으나 지방분권일괄법에 의거하여 동사무가 도도부현으로 이양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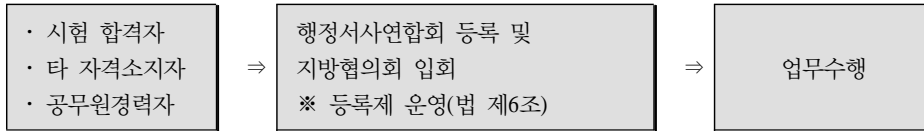
2.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범위

(1) 일본의 행정서사 제도

- 연혁
 - 1951. 2. 행정서사법 제정(총무성 주관)
 - 1953. 2. 행정서사회 연합회 설립(임의회)
 - ※ '60. 12 강제회 전환, '71. 12 법인격 부여
 - 1995. 5.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기관위임사무 폐지 권고
 - 행정서사 사무 도도부현으로 이양
 - 2000~ 시험관리업무 행정서사시험연구센터 위탁
- 일반현황
 - 관련법규 :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 시행규칙
 - 기 능 : 다른 법률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관공서 제출,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등 작성 및 제출대행
 - 인 원 : 35,163명(2000.4.1기준)
 - 자격대상자
 - 행정서사시험 합격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리사 자격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경력자

- 관할기관 : 도도부현 자체사무(←총무성의 기관위임사무)
단, 중앙연합회의 회칙개정 인가권은 총무성

○ 절차



(2) 주요 내용

○ 업무범위

-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대행 및 이에 대한 상담(법 제1조3항)

<구체적 업무내용>

① 주요 업무목록

건설업 허가관계, 농지법관계, 주식회사 등 설립, 상속·유언, 정관규약 작성, 각종 계약서 작성, 주택조성, 도시계획, 사회·노동보험 적용, 도로점용·사용허가, 풍속영업허가, 토지이용허가, 자동차 등록, 운송업허가, 국유재산 관련

② 기타 업무목록

교통사고관계, 고소고발장, 외국인등록, 입국관리업무, 여권업, 조성금 급부금 신청, 묘지관계, 대금업 등록, 전기공사업의 등록, 식품영업, 산림법 관계, 의료법인 관계, 회사의 합병, 주류판매업의 면허, 운전면허, 학교법인의 설립 등

※ 신고·신청 등의 대리 불인정

○ 등록현황(2000년 자료)

- 등록자수 : 35,163명('99신규등록 1,359명)
- 구 성
 - 행정서사시험 합격자 20,773명(60%)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리사 자격자 3,919(11%)

- 공무원 경력자 10,351(29%)

<표 3-46> 행정서사 등록자 현황

년도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 계	35,345	35,509	35,659	35,737	35,652	35,393	35,163
증감수	137	164	150	78	-85	-259	-230
증감비(%)	0.4	0.5	0.4	0.2	-0.2	-0.7	-0.6

년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35,024	35,319	36,417	37,607	38,105	38,875	38,883	39,203	39,846	40,475
증감수	-139	295	1098	1190	498	770	8	320	643	629
증감비(%)	-0.4	0.8	3.1	3.3	1.3	2.0	0.0	0.8	1.6	1.6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06052.pdf

○ 운영실태(2004. 7. 월간일본행정 자료)

－ 연령별 구성 및 업무경력

	연령별 구성				업무경력		
	40세 이하	41~60세	61~70세	71세 이상	10년 이하	11~20년	20년 이상
인원 (비율)	591(8.7%)	2,844(47.6%)	1,675(28%)	943(15.8%)	2,367(40.9%)	2,018(34.9%)	1,402(24.2%)

* '94년 실태조사에 비해 약간 고령화 경향 보임

－ 연간 수입

	300만엔 미만	300~500만엔	500만~1천만엔	1천만~5천만엔	5천만~1억엔	1억엔이상
비율	64.4%	10.5%	11.8%	11.8%	1.0%	0.5%

○ 겸업현황

- 총 등록자 중(35,163) 전업자는 17,908명(50.9%), 겸업자 17,255((49%)
- 겸업종별로 보면 세리사(5,179명), 토지가옥조사사(499명), 사법서사(4,010명), 택지건물소개주임자(3,430명)

○ 교육 실시현황('99)

	실사회수	참가인원
도도부현 행정서사회	508	24,795
일본행정서사연합회	9	1,568
합 계	517	26,363

※ 교육방법 : 연수회, 강습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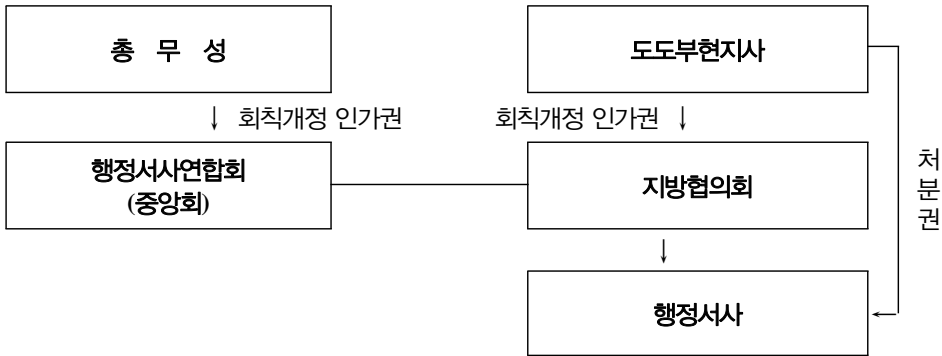
○ 시험제도

- 시험 실시기관 : (財)행정서사시험연구센터
- 시험주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
- 시험방법 및 과목
필기시험으로 하되, '일반교양'은 선택형, '행정서사관련 법령'은 선택형 또는 주관식으로 함

○ 기타

- 지도감독
 -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행정서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였으나 지방분권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서사 사무가 도도부현으로 이양
 - 현재 도도부현이 행정서사 사무검사 등 행정서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총무성은 행정서사연합회의 회칙인가

<지도감독 체계>



- 유관기관 : 행정사시험연구원, 행정서사회, 행정서사정치연맹, 유한회
사전행단

3.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내용

(1) 행정서사의 업무내용

- 일본의 행정서사 업무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용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음(http://gyoseisyoshi-shiken.rdy.jp/modules/faq/index.php?content_id=39)
 - 행정서사는 도시의 법률가라는 호칭도 있지만, 특히 행정 절차의 전문가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직업임
 - 복지 행정이 중시되는 오늘날, 주민 등이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고 있지만, 그것을 만드는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서류도 증가하고 있음
 - 행정서사가 의뢰를 받아 서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만들어 국민의 제반 권리·여러 이익이 지켜지고 또한 행정에서도 제출 서류가 정확하고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확보되어 공공

의 이익에도 연결되어 행정서사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 되고 있음

- 최근 행정서사법 개정에 따라 행정 서사에 대리권이 인정되는 등의 직역의 확대가 도모되고, 행정 서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점은 행정 서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발로라고도 할 수 있음
- 관공서에 신청 서류 작성·제출 대리 업무 외에도 주요 업무로서 "유언장 등의 권리 의무, 사실 증명 및 계약서 작성 대행 업무", "상담 업무" 등이 있으며, 그 활약 장소는 매우 넓은 것으로 되어 있음
 - 행정 서사, 행정 서사 법에 의한 국가 자격자이지만, 이 법에서는 행정 서사가 될 시에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음
- 행정 서사가 될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 서사가 될 자격이 있음
 - ① 행정 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② 변호사가 될 자격을 가진 자
 - ③ 변리사가 될 자격을 가진 자
 - ④ 공인 회계사가 될 자격을 가진 자
 - ⑤ 세무사가 될 자격을 가진 자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행정 사무를 담당 기간 및 특정 독립 행정 법인 (독립 행정 법인 통칙 법 (1999 년 법률 제 103 호) 제 2 조제 2 항에 규정하는 특정 독립 행정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정 지방 독립 행정 법인 (지방 독립 행정 법인 법 (2003 년 법률 제 118 호) 제 2 조제 2 항에 규정하는 특정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일본 우정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행정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 기간이 통산하여 20 년 이상 (학교 교육법 (1947 년 법률 제 26 호)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동법 제 56 조에 규정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17 년 이상)되는 사람

- 일본의 행정서사는 그 업무의 내용이 수십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주요 업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건설업의 허가관계(10.1%)가 가장 많고, 농지법 관계(9.3%), 주식회사 등 설립(7.1%), 상속·유언(6.0%), 의사록·정관·자치회규약·유업규정 등의 작성(5.8%), 차고증명(5.3%), 각종 계약서의 작성(4.5%), 내용증명(4.1%) 등으로 나타났음

(2) 행정서사 자격제도의 운영현황

가. 연령별 구성

- 40세 이하 591명(8.7%), 41-60세 2,844명(47.65%), 61-70세 1,675명(28.0%), 71세 이상 943명(15.8%) 이었음
- 1994년의 실태조사에 비해서 약간 고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참고로 1994년에는 40세 이상 10.4%, 41-60세 43.1%, 61세 이상 45.5%로 나타났음

나. 업무경력

- 업무의 경력이 10년 이하는 2,367명(40.9%), 11-20년 2,018명(34.9%), 21년 이상 1,402명(24.2%)로 나타났음

다. 직업속성

- 행정서사 전업자가 3647명으로 61.6%이고, 타자격점업자가 2269명으로 38.4%로 나타났음. 전업자의 부업유무는 부업있음이 1363명으로 37.4%였으며 그 중에서 부업의 내용을 보면,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손해보험대리점, 자사경영(사장) 등으로 많이 나타났음

라. 타 자격검업의 내역

- 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토지가옥조사가 591명(검업자 중 비율은 26.1%), 다음으로 세리사 493명(21.7%), 사법서사 466명, 사로사(社勞士) 451명(19.9%), 그리고 마지막으로 宅建主任者 268명(11.8%)로 나타났음

마. 사무소의 형태

- 단독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5261명으로 86.6%이고, 타사업자와 합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466명으로 7.8%이고, 마지막으로 다른 행정서사와 함께 사무소를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210명(3.5%)으로 되었음

바. 연간수입

- 행정서사가 업무에 대한 보수는 이전에는 법률로 그 기준을 정했었으나, 2000년부터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어 행정서사가 당사자와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어떤 업무에 대하여 성공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성공보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임
 -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서류취급의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성공, 실패의 첨예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임
- 연간수입은 1997년의 행정서사업무에 한정해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300만엔 미만은 64.4%로 과반수를 넘었고, 500만엔 미만 10.5%, 1천만엔 11.8%, 3천만엔 미만은 10.0%, 5천만엔 미만은 1.8%, 그리고 마지막으로 1억엔 미만은 1.0%, 1억엔 이상은 0.5%로 나타났음(이는 사무소의 단위로 계산한 것으로 개인의 연간수입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수 있음)

사. 공직유무

- 공공직업을 담당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공직에 취임하고 있다고 한 자는 917명으로 15.8%에 해당하며, 이들의 구체적인 공직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위원 95명, 행정상담원 78명, 기타가 666명으로 나타났음
 - 의원 등으로는 국회의원이 1명, 현의회의원이 1명, 시의회의원이 68명이며, 단체장이 1명으로 나타났음

(3) 일본 행정서사의 개업 및 등록 현황

① 행정서사의 등록자 수

- 전체 개인회원수(2011년 10월 1일 기준) 중에서 주요 지역별 개인과 법인 수의 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 개인회원수는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42,328명이고, 법인회원수는 241개로 나타났음

<표 3-47> 주요 지역의 회원수 분포

단위회	개인회원수			법인회원수		
	2011. 10.1	2011 4.1	증감	2011. 10.1	2011. 4.1	증감
홋카이도	1,573	1,556	17	14	12	2
아오모리현	291	290	1	2	2	0
이와테현	314	302	12	0	0	0
미야기현	312	314	△2	1	1	0
아키타현	732	717	15	6	6	0
야마 가타현	789	784	5	7	6	1
후쿠시마현	393	387	6	0	0	0
이바라키현	5,148	4,943	205	61	60	1
토치 기현	2,280	2,218	62	16	14	2
군마현	1,764	1,716	48	10	7	3
사이 타마현	1,064	1,055	9	5	6	△1
치바현	779	774	5	1	1	0

단위회	개인회원수			법인회원수		
	2011. 10.1	2011 4.1	증감	2011. 10.1	2011. 4.1	증감
도쿄도	2,136	2,078	58	13	13	0
카나 가와현	1,079	1,073	6	2	2	0
니가타현	1,006	1,006	0	1	1	0
도야마현	319	311	8	1	1	0
이시카와현	1,496	1,493	3	7	7	0
후쿠이현	828	809	19	6	6	0
야마나 시현	2,637	2,596	41	16	13	3
나가노현	835	827	8	0	0	0
기후현	706	701	5	1	1	0
시즈오카현	339	340	△1	0	0	0
아이치현	332	330	2	2	2	0
미에현	396	391	5	1	1	0
시가현	432	416	16	2	2	0
교토	2,606	2,558	48	21	17	4
오사카부	796	785	11	8	7	1
효고현	357	354	3	1	1	0
나라현	357	356	1	0	0	0
와카야마현	1,676	1,664	12	10	8	2
돗토리현	209	210	△1	2	2	0
시마네현	270	267	3	0	0	0
오카야마현	749	739	10	3	3	0
히로시마현	1,085	1,054	31	2	2	0
야마 구치현	470	468	2	1	1	0
토쿠시마현	388	384	4	2	2	0
카가와현	377	374	3	0	0	0
에히메현	242	240	2	0	0	0
고치현	554	550	4	4	3	1
후쿠오카현	1,208	1,187	21	4	4	0
사가현	210	208	2	0	1	△1
나가사키현	356	350	6	1	1	0
구마 모토현	543	534	9	2	1	1
오이타현	305	297	8	0	0	0
미야자키현	507	514	△7	1	1	0
카고시 마현	761	744	17	2	1	1
오кина와	322	320	2	2	2	0
합	42,328	41,584	744	241	221	20

<http://www.gyosei.or.jp/unit/kaiin-list.html>(2011 년 10 월 1일 기준)

- 행정 서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받는 보수 액수는 각 행정 서사가 자유롭게 정하여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에서는 이러한 보상 금액에 대한 고객의 선택

및 행정 서사의 업무의 편의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서사법 제10조의 2 제2항에 따라 2년에 한 번 전국적인 보수액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http://www.gyosei.or.jp/gyomu/reward.html>)

- 동일 업무에서도 구체적인 취급 내용 등에 따라 행정 서사가 받는 보수액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의뢰 때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행정서사와의 상담이 필요함

② 행정 서사 시험의 합격 기준

- 배점 및 합격 기준은 "행정 서사 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및 예년의 합격 기준에 따라 사이트(http://gyoseisyoshi-shiken.rdy.jp/modules/faq/index.php?content_id=37)에서 예상하여 만든 것으로, 공식적인 것은 없음
- 공식적인 합격 기준은 합격 발표시 (재)행정서사시험연구센터 HP((財) 行政書士試験研究センターHP)에서 공개됨
- 다음의 요건을 충족자를 합격으로 함

다음의 요건의 충족자를 합격으로 한다.	
(1)	행정서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 과목의 점수가 122점 (만점의 50 % 이상) 자.
(2)	행정서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 지식 등 과목 점수가 24점 이상 (만점의 40 % 이상) 자.
(3)	전체시험 점수가 180 점 (만점의 60% 이상) 자.
(주) 합격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의 난이도를 평가하고 수정 조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① 행정서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 과목의 점수가 122점(만점의 50% 이상) 자
- ② 행정서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 지식 등 과목 점수가 24점 이상(만점의 40 % 이상) 자
- ③ 전체 시험 점수가 180점 (만점의 60 %이상) 자
- (주) 합격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의 난이도를 평가하고 수정 조치를 추가할 수도 있음

- ①의 요구 사항은 매년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③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배점에 필연적으로 ①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격 기준 ② 및 ③이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시험 제도가 된 2006년 이후 합격 기준에 대해 "문제의 난이도를

평가하고 수정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부언되고 있음

–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절대평가시험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합격률의 경우, 2006년도 4.79%, 2007년도 8.64%, 2008년도 6.47%, 2009년도 9.05%, 2010년도 6.60%로 나타났을 때, 한번도 보정 조치는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이점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출처: http://gyoseisyoshi-shiken.rdy.jp/modules/faq/index.php?content_id=37

○ 시험과목과 출제형식

시험과목	출제형식		출제수	만점
법령등	택일식	5 지택일식	4 0 문	1 6 0 점
		다지선택식	3 문	2 4 점
	기술식		3 문	6 0 점
	계		4 6 문	2 4 4 점
일반지식등	택일식	5 지택일식	1 4 문	5 6 점
합계			6 0 문	3 0 0 점

○ 행정서사 시험의 개요

– 공식적인 시험 개요는 2012 년 7 월 상순에 공시된 (재) 행정 서사 시험 연구 센터 HP에 게재됨

신입서 (시험안내) 배포	2012 년 8 월 상순부터 8 월 하순까지
원서수부	2012 년 8 월 상순부터 8 월 하순까지
시험일	2012 년 11 월 11 일 (일) 오후 1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합격발표	2013 년 1 월 하순
수험자격	연령, 학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험지	각 도도부현
시험방법	필기시험
수험수수료	7, 0 0 0 엔

시험방법	택일식으로 단답형
	행정 서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 등 (택일 식 및 단답형)
	행정 서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 지식 등 (택일 가능)
출제수	60분
	행정 서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 : 4 6 문
	행정 서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 지식 등 : 1 4 문
시험시간	3 시간

행정 서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
헌법, 민법,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적인 법 이론, 행정 절차법, 행정 불복 심사 법, 행정 사건 소송법 국가 배상법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상법 (회사법 포함) 및 기초 법학 중에서 각각 출제 법령은 2012 년 4 월 1 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대해 출제.
행정 서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 지식 등
정치 · 경제 · 사회, 정보 통신, 개인 정보 보호, 문장 이해

○ 행정서사 시험의 합격률

- 다음은 행정 서사 시험의 합격률 추이하므로 참고하되, 비고란 코멘트는 이 사이트 관리자의 사견을 기반으로 한다고 사이트에 적시되어 있음

년도	수험자수	합격자수	합격율	비고
平成元年度	21167	2672	12.62%	
平成2年度	22406	2480	11.07%	
平成3年度	26228	3092	11.79%	
平成4年度	30446	2861	9.40%	
平成5年度	35581	3434	9.65%	
平成6年度	39781	1806	4.54%	
平成7年度	39438	3681	9.33%	
平成8年度	36655	2240	6.11%	
平成9年度	33957	2902	8.55%	
平成10年度	33408	1956	5.85%	
平成11年度	34,742	1,489	4.29%	
平成12年度	44,446	3,558	8.01%	시험제도 개정에 의해 지금까지의 논술식의 문제 (800

년도	수험자수	합격자수	합격율	비고
				자식)이 없어지고, 또한 시험위원이 확대되는 등의 변경이 있었다. 또한, 1999년부터 주간 모닝에 연재되는 "카바치 타레!"의 영향으로 응시자 수가 증가한다.
平成13年度	61,065	6,691	10.96%	교양과목의 출제 실수로 전원 배점이 이루어져서 높은 합격률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드라마판 "카바치 타레!"가 방송된 영향으로 응시자 수가 증가한다.
平成14年度	67,040	12,894	19.23%	2년 연속 교양과목 출제 미스. 작년과 같이 출제실수는 전원 배점되어 최고의 합격률 나타나게 된다. 또한, 행정 서사법의 개정으로 행정서사에 서류 제출 절차 및 계약서 작성의 대리권이 부여된다는 직역 확대가 이뤄졌다.
平成15年度	81,242	2,345	2.89%	전년의 높은 합격률 조정을 위해 합격률 "2.89%"는 2003년까지 최저 합격률을 기록한다.
平成16年度	78,683	4,196	5.33%	또다시, 교양 과목의 출제 미스로 모두 배점된다. 하지만 시험의 난연화의 영향으로 합격률은 그다지 높지 않고, 또한, 행정 서사법의 개정으로 행정서사 법인설립이 가능해졌다.
平成17年度	74,762	1,961	2.62%	"행정서사 시험시행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출제 시험과목 삭제 (행정서사 법률, 호적법, 세법 등) 및 시험 시간 변경 (2 시간 30분 → 3시간) 등 새로운 시험제도가 공표 된다. 또한 올해의 "2.62%"는 행정서사 시험에 있어서 사상 최저의 합격률이다.
平成18年度	70,713	3,385	4.79%	새로운 시험 제도가 적용되는 원년이다. 수험생의 새로운 시험 제도에 대한 대응 준비 부족 (40자 단답형 등)도 시험 위원 측의 예상보다 약간 낮은 합격률과 또한 새로운 試制로 합격자 보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4.79%는 하한으로 적정한 합격률 (합격자)의 범위는 것이 확정했다고 할 수 있다.
平成19年度	65,157	5,631	8.64%	학원 및 수험생의 새로운 시험 제도의 대응이 되었음을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는 택일 식의 고득점자가 속출하고 단답형의 점수 조정으로 엄격하게 됐다고 소문이 나돌고 있다.
平成20年度	63,907	4133	6.47%	행정서사법의 개정으로 행정 서사 청문회·해명 절차의 대리권이 부여된다는 직역 확대가 이뤄졌다.
平成21年度 (2009년)	67,348	6095	9.05%	도쿄도 행정서사회가 ADR 인증기관의 인증증서를 교부 받는다. 출제 미스가 있던 년도를 제외하면 최근에는 가장 높은 합격률이다. 택일식 중 일반 지식에서 고득점자가 속출하고 단답형의 점수 조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한 새로운 試制로 합격자 보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9.05%가 상한으로 적정한 합격률 (합격자)의 범위는 것이 확정했다고 할 수 있다.
平成22年度 (2010년)	70,586	4,662	6.60%	드라마판 "특상 카바치!"가 방송된 영향도 있어, 수험자 수가 증가한다. 지난해 도쿄도 행정서사회의 ADR 인증기관의 인증 증서의 교부에 이어 많은 행정서사회가 교부 받았다. 또한, 합격 발표 전까지의 평가로 문제 난이도가 새로운 시험 제도 이후 후에 가장 높았다고 되어 있었지만, 단답형의 채점 기준이 아주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균적인 합격률이 된다. 단답형의 평가 기준으로 실질적인 합격률 조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平成23年度 (2011년)	66,297	5,337	8.05%	시험 위원의 수가 지금까지 20명 안팎의 체제에서 6명 증원되어 26명이 되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택일 난화와 기술의 채점이 유연화된 경향이며, 기술의 평균 점수는 사상 최고를 추측된다.

<표 3-48> 2011년도 행정사사시험/도도부현별시험결과 일람

<http://gyosei-shiken.or.jp/gokaku/ichiran.htm>

도도부현	수험신입자수	수험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홋카이도	2,922	2,335	151	6.47
아오모리현	437	357	20	5.60
이와테현	516	407	17	4.18
미야기현	1,405	1,098	88	8.01
아키타현	377	306	19	6.21
야마 가타현	433	343	7	2.04
후쿠시마현	740	571	32	5.60
이바라키현	1,229	995	55	5.53
토치 기현	1,036	818	40	4.89
군마현	1,209	975	50	5.13
사이 타마현	4,344	3,486	271	7.77
치바현	3,650	2,913	223	7.66
도쿄도	19,225	14,882	1,592	10.70
카나 가와현	4,582	3,595	296	8.23
니가타현	1,091	887	59	6.65
도야마현	513	410	34	8.29
이시카와현	586	464	29	6.25
후쿠이현	307	256	17	6.64
야마나 시현	477	385	30	7.79
나가노현	1,033	819	43	5.25
기후현	892	730	39	5.34
시즈오카현	1,815	1,434	92	6.42
아이치현	5,141	4,128	372	9.01
미에현	736	594	32	5.39
시가현	959	746	50	6.70
교토	2,258	1,787	185	10.35
오사카부	6,999	5,630	457	8.12
효고현	3,872	3,153	261	8.28
나라현	568	445	40	8.99
와카야마현	572	463	30	6.48
돗토리현	186	135	8	5.93
시마네현	387	309	23	7.44
오카야마현	1,181	948	66	6.96
히로시마현	1,547	1,207	82	6.79
야마 구치현	555	455	30	6.59
토쿠시마현	431	339	21	6.19
카가와현	615	499	43	8.62

도도부현	수험신입자수	수험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에히메현	645	531	31	5.84
고치현	325	271	16	5.90
후쿠오카현	3,285	2,606	171	6.56
사가현	500	382	16	4.19
나가사키현	480	401	24	5.99
구마 모토현	867	692	49	7.08
오이타현	521	406	20	4.93
미야자키현	482	407	20	4.91
카고시 마현	854	687	53	7.71
오кина와	758	610	33	5.41
計	83,543	66,297	5,337	8.05

③ 행정 서사 개업과 관련한 개인 사이트 내용 발췌

(http://gyoseisyoshi-shiken.rdy.jp/modules/topics/details.php?blog_id=211)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년도 시험 합격자를 바탕으로 합격증이 도착할 것 같고, 실무자를 목표로, 등록 절차 및 실무 강습회 참가 등 개업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격도장에서도 졸업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 Facebook의 페이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교환의 장으로 도움 주시면 생각합니다. 보기 위해서는 Facebook 계정이 필요합니다.(<http://www.facebook.com/groups/goukakudojyo/>)

오늘은 합격 후 "행정 서사 개업에 대해"가 테마 입니다만, 나는 행정 서사를 개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처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격 도장 고문이며, 이미 실무 법률가로서 활약하는 KEN의 행정서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가. 개업하거나 아니면 자격으로 활용할 것인가

합격했다고 해서 반드시 개업해야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식을 살리면서 다른 일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자

격 수당이 나올 수도 있고, 법무에 관한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독립 개업을 목표로 얻을 수많은 자격이지만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은 자유업. 별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 해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일을 하면 그대로 수입이 되는 것 등, 직장인과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우선 조력자가 되어 경험을 쌓은 후 일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은 독립 개업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하는 개업 1 명의 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외곽은 구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일하려 한다면, 변호사 사무소 · 법무사 사무소도 포함하여 찾으면 좋을 지도 모릅니다.

나. 개업하려면, 무엇을?

각 도도부현의 행정서사회를 통해, 등록하지 않으면, 행정서사 개업 할 수 없습니다. 그 때, 등록만으로 20만엔 이상이 듭니다. 몇 가지 등록 조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사회에 문의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려면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거실에서도 괜찮습니다, 생활공간이 아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 초보자와 비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 장소가 있으면 아마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사무실을 빌려 개업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 몇몇 합동 사무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사무실에서 시작하는 것이 많은 듯합니다만, 점포형은 고객의 신용을 얻기 쉽습니다. 그 외, 전화나 팩스·복사기 간판 등 나름대로 개업 준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하거나, 자금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게 되겠지요.

다. 등록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이 인정되면 교부식이 있습니다. 등록증 및 휘장 (코스모스 배지) 등을 받을 수 있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부식에서 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에 필요한 증서 등이 수중에 없기 때문에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등록되어 있으면 "행정서사"를 자칭하고 개업 준비가 진행되게 됩니다.

원래 공무원으로 무시험으로 등록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인'인 나이에는 비싸지만, 신인 행정 서사에 대한 규칙과 윤리를 가르쳐주는 작업장이 어느 지방에서도 있습니다. 단, 어디 까지나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전문적인 내용은 실무를 쌓거나 연수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어떻게 적립?

개업하면 매일 근무일이며, 휴일이기도 합니다. 일이 많이 들어가면 방학이 없어집니 다만, 매일 봉급날이 됩니다. 반대로 일이 오지 않으면, 평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영업 활동 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작업 (= 수익)가 증가하는 것인가? 전직 특기 및 커넥터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 영업도 쉽고 고객도 얻을 쉬울지도 모릅니다. 전직의 특기 등이 없고, 전문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개업한다면 온 의뢰는 거절하지 않고 공손하게 업무를 진행하게 하고, 소문으로 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상당한 특권과 위치에 있는 사무소가 아닌 한 간판을 올릴 뿐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몇몇 선배에게 물어도 처음 2년 정도는 비용을 내는 것이 큰 적자였다고 합니다. 물론, 폐업하신 분도 있었지요. 때문에 신용을 쌓아두는 것의 여부가 갈림길에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 자신의 전문은 어떻게 결정?

자신의 전문 분야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안합니다만, 이야기를 듣고, 전문 분야는 "결정"이라기보다는 "점점 정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직에서 운송업과 건설업을 하였던 분으로, 그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정했다"기 보다는 고객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정해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분야에 한정하여 개업할 수 있지만 직업을 결정 및 작업 폭은 좁아지기 때문에 인맥보다 실력이 없으면 쇠퇴가 될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전문 분야를 짜낼 생각이 아니더라도 전문 분야는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해일 피해가 있어서 건설업 허가 등의 수요가 증가해서 신인에서도 의뢰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소가 경찰서나 차량 자리에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수속의 의뢰가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이혼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일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기본은 "사람 (자신)"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분야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많은 "첫 일"을 경험하여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대기 자세" 밖에 할 수 없다면 다시 취직하고 고용되는 것이 맞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 어느 정도 돈벌이 것일까

솔직히, 수입은 다양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적어도 과반수의 '신인'이 은퇴 공무원으로 같았습니다(무시험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무리하게 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역 공헌 봉사 활동을 통해 좋은 이미지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봉으로 치면 아르바이트 정도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직을 살려 열심히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연봉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법인 고객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딜러에서 차량 관련 절차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상당한 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정 손님이 없어도 지명도가 올라가면 어떤 분야에서도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실적 만들기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사. 전문가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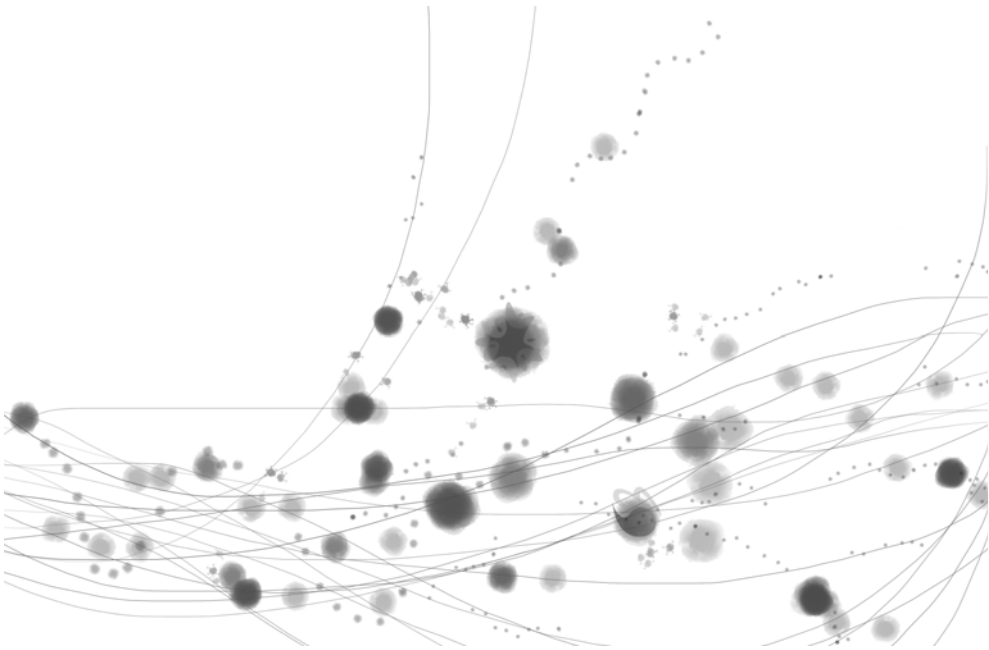
등록 개업을 하고 시작 될 것입니다. 독점 업무가 있다고는 해도, 간판을 올리면 대박일 수는 없다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프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면, 모두 "프로"의 일이기 때문에 직장인도 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걸려오는 뜻으로, 인사 업무는 전문직일지도 모릅니다. 회사로 말하면 사원도 자신이지만 사장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회사라면 실수를 해서 보충해 줄 수 있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회사의 간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업무 (특히 1 명의 경우)라면 그렇게는 안됩니다. 간단한 허가 신청 의뢰가 이쪽의 사정으로 지연되면 고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만엔의 보수 작업에서 실수를 하면 100 만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 회계와 납세자도 스스로 처리하게 됩니다 (번성하면, 사무원 및 세무사를 고용합니다.)

제 4 장

행정사 발전전략

제1절 적정 최소선발인원 산정

제2절 적정 수수료 산정



제 4 장

행정사 발전전략

제1절 **적정 최소선발인원 산정**

- 향후 행정사 최소선발은 행정서비스의 공급자 지위에 있는 행정사, 특히 행정사와 그 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모여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완성되어야 함
- 행정사 최소선발은 현실적 상황에 기초한 결과이어야 함
- 행정사 최소선발인원 산정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의 산출례를 통한 모형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 번째 방법은 행정사에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출해서 다중회귀분석과 시계열분석법에 의하여 적정 행정사 수를 산출하는 방법임
 - 두 번째 방법은 일본 행정사의 업무량과 등치시켜 현재의 우리나라 적정 행정사 수를 추론하는 방법이지만 이는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와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1. 회귀분석을 통한 적정 인원 산정

(1) 적용 방법론

- 행정사 관련 수요함수는 시계열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관측값들간의 서로 연관성이 있어 분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PLS 회귀추정방법을 사용하고 자 함
- 기존에 공인노무사 추정에 활용되었던 Prais-Winsten 전환 회귀추정방법을 이 연구에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해 보았으나 연구데이터의 자료축적의 한계 및 과도한 다중공선성이 발생되어 적용이 불가능함
- PLS모형을 적용하여 인력추정에 적용한 연구는 지방공무원 정원산정에 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PLS 모형은 1960년 Herman Wold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마케팅 조사, 분석 화학, 생태학, 농업, 식품 과학, 의학, 산업 등에서 널리 이용되었음
 - PLS 모형은 최초로 사회과학분야에서 계량경제학에 적용되었고, 대중화된 것은 화학분야에서이며(Geladi&Kowalaki, 1986; 박종선·정운정, 2005:29) 이후 PLS 모형은 사회과학분야인 마케팅 조사에서 응답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 때, 또는 응답들이 다른 조사에서의 응답과 관련이 있을 경우(다중공선성의 문제)에 적용되었음(Graber, Czellar, Denis, 2002; 김영찬·차재성, 2003; 김종옥·신승균·김병근, 2004; 박종선·정운정, 2005)
- PLS 모형¹⁰⁾은 다중회귀분석에서의 가정들을 공유하며, 요인들의 수가 많거나 매우 높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질 경우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임

10) PLS 모형을 다른 말로는 '부분최소제곱회귀' 또는 '부분최소자승회귀'라고 일컫기도 함(박종선·정운정, 2005; 박진표·정윤희, 2003)

- 이론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은 매우 많은 요인들이 사용할 경우, 표본데이터에는 모형이 완벽하게 적합될 수 있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은 실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과대적합(over-fitting)이라고 함
- 상기의 경우 많은 명백한 요인이 있을지라도 오직 몇 개의 잠재 요인들(latent factor)만이 반응변수의 변동의 대부분을 설명할 것임
- PLS 모형은 반응에 대한 모형화가 수행하는 동안 가능한 한 명백한 요인 변동, 즉 잠재 요인을 추출하는 것에 있음(박종선·정윤정, 2005:28)
- PLS 모형의 목적은 모집단에서 반응변수를 예측하기 위해(또는 변수를 예측하는) 요인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추출된 표본 요인과 반응변수에서 각각 T와 U라는 잠재변수¹¹⁾을 추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행됨
- 추출된 요인 T는 Y의 점수 U를 예측하는데 사용되고, 예측된 Y점수는 반응변수의 예측을 위한 것에 사용됨(박종선·정윤정, 2005:29)
- 즉, 통계 기술적 측면에서 주성분 요인분석, 경로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함께 사용하는 통계분석방법임(Wold, 1985)

(2) 변수 도출

- 이 연구에서는 행정사의 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한 공통된 변수와 함께, 행정사 합격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음

① 공통변수

-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변수는 **①GDP**가 대표적이며, 이에 더하여 **②경제활동인구**, **③인구수** 등을

11) 잠재변수(latent variable)란 직접 관찰할 수 없으나 측정된 변수들의 특성에 의해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을 말함(박종선·정윤정, 2005:28).

활용하고 있음

- 이는 곧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에서이며, 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② 특성변수

- 다음으로 행정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업무가 어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음
 - a.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 b.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 c.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 d.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e.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f.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g.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하는 일

(3) 모형 구성 및 분석

-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전산화와 국민 교육수준의 향상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일과 행정사 등 행정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 및 탄원서, 청원서, 이의신청, 인·허가, 면허, 승인, 신청, 호적에 관한 개명·취적·호적정정, 토질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협약서, 확약서, 행정심판청구서, 소청심사청구서, 해난심판청구서, 법인정관, 법인설립서류, 사실조회신청,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동업계약서, 지불이행 각서, 유체동산 매도증서, 채권포기각서, 채권양도증서, 공증서류 일체, 번역 서류 등 이외에도 각 부처의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업무가 많이 있어 그 모두를 기재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통적으로는 ①민원처리건수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②고충민원과 관련이 있으며, 고충이 제대로 해결이 안될 시 ③행정심판과 관련되어 있으며, ④자료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변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거시적 변수: GDP, 경제활동인구(행정사와 관련된 업무는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로 한정)
 - 미시적 변수: 민원처리건수, 고충민원건수, 행정심판건수, 국가기록물 열람
- 총 6개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식을 만들면 다음과 같음

$$Y_t = \beta_1 + \beta_2 GDP_t + \beta_3 \text{경제활동인구}_t + \beta_4 \text{민원처리건수}_t + \beta_5 \text{고충민원건수}_t + \beta_6 \text{행정심판건수}_t + \beta_7 \text{국가기록물열람}_t$$

※ R²값은 99.4%로 나타났음(이 모형이 실제 행정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

<표 4-1> 행정사 회귀식을 활용할 변수

연도	행정사수	경제활동 인구 (천명, 12월 기준)	GDP(억원)	민원처리 건수 (접수, 천건)	고충민원	행정심판건수 (접수건수)	국가기록물 열람 현황
2007	6858	23,993	975,013.0	15,207	23,681	23,330	511,892
2008	6996	24,032	1,026,451.8	18,247	27,372	24,194	410,807
2009	7207	24,063	1,065,036.8	25,711	31,614	29,574	645,793
2010	7505	24,538	1,173,274.9	31,289	32,584	31,019	864,409
2011	6984	24,880	1,237,128.2	38,582	36,293	28,058	803,421

- 종속변수인 행정사 수에 대한 값은 행정안전부 내부자료를 통해 구성하였음
 - 2011년 행정사 신고자수는 6,984명('11년) (7% 감소)으로 나타나서 그간 상승 추세의 행정사와 다른 특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13년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로 기존 행정사업 신고기록을 정비토록 하고 기 폐업신고자는 더 이상 행정사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시달한('12.1.3) 결과 때문임('13.1.1 현재 미신고자는 행정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에서 제외)
 - '10년(590건) 대비 영업신고 건수 46% 증가한 것은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등 제도개편 내용이 홍보됨에 따라 시험전부 면제 대상자들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13년 이전에 자격을 취득코자 영업신고를 집중적으로 한 영향으로 판단됨
 - '11년 영업신고자의 증가를 반영해 실제 영업중인 행정사는 전년 대비 13% 증가
- ⇒ 결국, 2011년 행정사 수 데이터는 2010년보다 줄어들었으나,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 전의 현상과 중앙정부의 정비지침의 영향으로 실제로는 영업중인 행정사가 느는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2011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결과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독립변수들은 자료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e-나라지표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음
 - 독립변수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또한 공식적으로 올라온 지표를 활용하여야만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총 6개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식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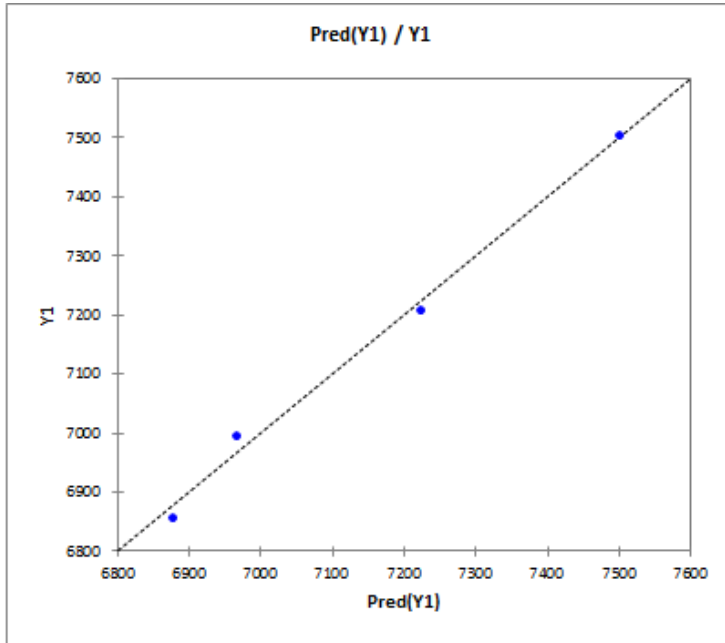
$$Y1 = 1044.83487370468 + 0.184482357873476 * X1 + 6.11621406575767E-04 * X2 + 7.05949589419347E-03 * X3 + 1.17334497146702E-02 * X4 + 1.28393618883454E-02 * X5 + 2.41984931914958E-04 * X6$$

Y1 : 행정사 수
 X1 : GDP
 X2 : 경제활동인구
 X3 : 민원처리건수
 X4 : 고충민원건수
 X5 : 행정심판건수
 X6 : 국가기록물열람건수

- 행정사 수와 독립변수들간의 관계를 보는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Variables	X1	X2	X3	X4	X5	X6	Y1
X1	1.000	0.942	0.855	0.697	0.761	0.894	0.911
X2	0.942	1.000	0.967	0.895	0.904	0.890	0.992
X3	0.855	0.967	1.000	0.957	0.983	0.915	0.991
X4	0.697	0.895	0.957	1.000	0.959	0.767	0.929
X5	0.761	0.904	0.983	0.959	1.000	0.902	0.950
X6	0.894	0.890	0.915	0.767	0.902	1.000	0.915
Y1	0.911	0.992	0.991	0.929	0.950	0.915	1.000

- 상관분석 결과 행정사 수와 독립변수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행정사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회귀모형식이 행정사 수를 추정하는데 얼마만큼 설명력이 있는지를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된 추정치와 행정사 수(실측치)를 비교하면 오차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회귀식이 표현하는 설명력(R2)이 99.4%이기 때문에 회귀모형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표 4-2> 적정 행정사 회귀식을 이용한 추정치 비교

연도	행정사수(실측치)	모형을 통한 추정치	모형치-실측치=오차
2007년	6,858	6,876	-18
2008년	6,996	6,966	29
2009년	7,207	7,223	-16
2010년	7,505	7,499	5
2011년	6,984	7,645	661
합계	35,550	36,209	-661

- 이 연구는 2013년 이후의 예측치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예측치를 추정해야 값을 예측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변수들에 대한 추정치 연구가 없어 과거 시계열 자료를 시계열 분석방법인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추정
 - 변수값들의 증가추세의 평균값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3> 주요 변수 추정치

연도	경제활동 인구	GDP	민원처리 건수	고충민원	행정심판 건수	국가기록물 열람 현황
2012	25,108	1,313,335	48,797	40,425	29,551	932,472
2013	25,874	1,353,449	50,287	41,660	30,453	960,953
2014	26,665	1,394,789	51,823	42,932	31,383	990,304
2015	27,479	1,437,391	53,406	44,244	32,342	1,020,552
2016	28,319	1,481,294	55,037	45,595	33,330	1,051,723
2017	29,184	1,526,538	56,718	46,988	34,348	1,083,847
2018	30,075	1,573,165	58,450	48,423	35,397	1,116,951
2019	30,993	1,621,215	60,236	49,902	36,478	1,151,067
2020	31,940	1,670,733	62,076	51,426	37,592	1,186,225
2021	32,916	1,721,763	63,972	52,997	38,741	1,222,457
2022	33,921	1,774,353	65,926	54,615	39,924	1,259,795
2023	34,957	1,828,548	67,939	56,284	41,143	1,298,274
평균증가율	0.91%	6.16%	26.47%	11.38%	5.32%	16.06%

- 상기의 자료를 추정함수식에 대입시키면 행정사 수요가 산출되며, 도출된 회귀식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요를 추정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회귀식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에 걸쳐 필요한 행정사 수를 도출하였음
 - 행정사 자연증가치는 행정사수의 증가율 3.05%인 점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 산출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산식이 만들어지게 됨
 - 다음으로 모형을 통한 추정치는 2012년부터 독립변수별 평균증가율을 계산하여 모형값에 대입하여 얻은 수치임

<표 4-4> 행정사 수요 예측(2012-2022)

(단위: 명)

연도	행정사 자연증가치	모형을 통한 추정치
2011년	6,984	7,645
2012년	7,197	7,904
2013년	7,417	8,113
2014년	7,644	8,329
2015년	7,877	8,552
2016년	8,118	8,781
2017년	8,366	9,017
2018년	8,621	9,261
2019년	8,885	9,512
2020년	9,156	9,770
2021년	9,436	10,037
2022년	9,724	10,312
2023년	10,021	10,595

- 부족인원을 일시에 보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보충한다고 전제해야 함(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2006 : 13쪽 참고)연간 적정 선발인원의 추정은 향후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2023년의 행정사 보유 목표 수(① 항)는 산정모형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10,595명임
 - 향후 10년에 걸쳐 행정사의 자연감소 숫자(③ 항) 역시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령별 사망률(통계청)에 근거하여 계산하였음
 - 이 연구의 목표는 시험면제가 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시험선발인원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10년에 걸쳐 시험면제가 되는 공무원 수(④ 항)는 제외해야 함
 -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계산된 향후 10년간의 행정사 필요 선발인원 총수는 2,986명이며, 연평균 300명을 선발해야 함
- * 참고로 매년 공무원 시험면제자는 평균적으로 향후 10년간을 고려할 때, 매년 257명

정도로 나타남

- * 시험면제자를 포함하면 선발인원은 총 560명 (300명 + 시험면제자 26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4-5> 향후 10년간 선발해야 할 회귀모형 대비 행정사 총인원 수의 계산

	회귀모형 대비 적정 모형
① 2023년(10년후)의 행정사 보유목표	10,595명
② 빼기 : 2011년 행정사 수	6,984명
③ 더하기 : 사망에 따른 보충인원	2,198명(연령별 사망률을 통한 값 도출)
④ 빼기 : 시험면제자 인원	2,823명(행정사 증가율을 고려한 10년치 값)
⑤ 향후 10년간 행정사 필요 선발인원	2,986명 = ① - ② + ③ - ④
⑥ 향후 10년간 연평균 행정사 필요 선발인원	약300명 = ⑤ / 10년

○ 기존 행정사 인원의 구성인원과 그 비율은 다음과 같음

합계	일반	외국어	기술
6,984	6,881	94	9
100%	98.53%	1.35%	0.13%

－ 이를 최소선발인원인 300명에 비율별로 인원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합계	일반	외국어	기술
300	295	4	1

○ 수치상 소수의 외국어번역행정사를 선발할 경우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에 반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 외국어번역사의 채용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 것인가가 이슈가 됨
- －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과 7급 공채시험의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임

○ 2011년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 제2차시험 응시현황은 다음과 같음

직 렬	선발예정	응시대상	결시자	응시자	응시율(%)
계	30	289	16	273	94.5
외교통상직	26	263	11	252	95.8
외교통상직 (영어능통자)	2	18	4	14	77.8
외교통상직 (러시아어능통자)	1	5	0	5	100.0
외교통상직 (아랍어능통자)	1	3	1	2	66.7

○ 2011년도 7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경쟁률
총 계	461	56,561	122.7:1
소 계 (행정직)	364	49,958	137.2:1
행정(일반행정:일반)	164	27,849	169.8
행정(일반행정:장애인)	14	728	52.0
행정(우정사업본부:일반)	9	656	72.9
행정(우정사업본부:장애인)	1	45	45.0
행정(선관위:일반)	18	1,481	82.3
행정(선관위:장애인)	2	131	65.5
행정(교육행정:일반)	7	3,217	459.6
행정(교육행정:장애인)	1	127	127.0
세무(일반)	14	3,581	255.8
세무(장애인)	1	91	91.0
관세(일반)	14	1,162	83.0
관세(장애인)	1	60	60.0
통계(일반)	9	232	25.8
통계(장애인)	1	10	10.0
감사(일반)	17	1,074	63.2
감사(장애인)	3	120	40.0
교정(교정)	33	2,523	76.5
검찰사무(검찰사무)	10	3,464	346.4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	5	899	179.8
외무영사(일반)	37	2,436	65.8
외무영사(장애인)	3	72	24.0

- 5급 외무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30명이며, 7급 공채시험에서 외무관련 업무의 경우 40명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행정사의 경우 경력직 7급이상의 자에 대해 경과조치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5급과 7급 사이의 업무능력자라고 간주할 수 있음
 - 5급 선발인원수와 7급 선발인원의 중간값은 35명 정도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치적으로 보면 7급 행정직 선발인원이 364명 가운데, 외무관련 업무자의 선발인원 35명($9.62\% = 35 / 364$)을 대입하면 행정사 최소선발인원과 비교적 흡사하다고 볼 수 있음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규정(법 제9조)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이상(1차 시험), 15년 이상(2차 일부)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5급 30명, 7급 40명의 중간값인 35명 산정
 - 5급과 7급 외무공무원 선발인원비율을 행정사 최소선발인원 비율에 맞추면 약 29명($300 * 9.62\%$)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선발인원수를 도출할 수 있음
 - 이를 단단위로 환산하면 약 30명의 외국어번역행정사를 선발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 언어별로 강제할당으로 선발할 경우, 응시자들이 외무고등고시보다도 더 어렵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7개 언어중 택 1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술행정사의 수 역시 외국어번역행정사 비율을 참고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기존 행정사 구성비율을 보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1.35%, 기술행정사는 0.13% 이며,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선발비율이 9.62%인 경우 기술행정사 수의 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됨

- $1.35\% : 0.13\% = 9.62\% : x$
 - 여기서 x 를 구하면, 0.92%가 도출됨
 - 이를 300명에서 차지하는 명수로 계산하면 $300 \times 0.0092 = 2.78$ 명
 - 따라서 기술행정사는 3명을 선발하는게 타당함

○ 행정사의 영역별 선발인원수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계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기존 행정사 종류별 인원	6,984(100%)	6,881(98.53%)	94(1.35%)	9(0.13%)
행정사 종류별 최소선발인원	300(100%)	267(89%)	30(10%)	3(1%)

2. 일본 행정서사수를 통한 적정인원 산정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수출입·저축과 투자 그리고 고용구조의 측면이 20년 내지 25년전의 일본과 유사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20년 내지 25년의 중간인 23년전 일본 변호사의 업무량과 같다는 가정을 한 다음, 적정 변호사 수를 일정한 산식에 대입하여 추정하는 방식(서울지방변호사회, 2006: 42)처럼 일본 행정서사의 1989년 업무량과 등치시켜 보면 됨
 - 1989년 일본 인구 123.116백만명이고, 2012년 한국 인구 50.000백만명임(세계은행 자료 참고)
 - 이를 우리의 경우의 인구수를 50백만명으로 대입하면, 우리나라 행정서사 적정수는 13,702명이 나타나게 됨

$$123.116(\text{日 인구수}) : 34,515(\text{日 행정서사수}) = 50.000(\text{한국 인구수}) : X$$

- 2011년 현재 행정사의 수가 6,984명이므로 14,000명에서 6,984명을 빼면 7,01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begin{aligned} \text{부족한 행정사 수} &= \text{일본대비 적정 수} - \text{현재 행정사 수} \\ 7,016\text{명} &= 14,000\text{명} - 6,984\text{명} \end{aligned}$$

- 2012년부터 부족한 행정사 7,016명을 한 번에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다음의 과제는 향후 10년간의 행정사 필요 선발인원 7,016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 연평균 고르게 702명씩 선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초기 연도에는 약간 적게 선발하고 점차적으로 숫자를 늘려가는 방법도 있음(공인회계사 선발인원 방식 참고, 215쪽)
 - GDP성장률은 OECD에서 2012년 한국의 경우 3.3%로 발표를 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가정할 경우, 2012년의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

$$x \left(1 + \sum_{t=1}^9 (1 + 0.033)^t \right) = 7,016$$

- 위의 방정식을 풀면, x 는 603명(2012년 행정사 적정 선발인원)이 나타남

3. 적정 행정사 수 도출 정리

- 이 연구는 적정 행정사 수 도출을 위해 2가지 접근방법을 활용하였음
 - 첫 번째는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적정 인력을 추정하였고
 - 두 번째는 일본 행정서사 수를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시점에서 등치시켜 부족 인력을 산정하였음
- 두 가지 방법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타난 결과의 차이가 2배 정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회귀모형을 통해 계산한 결과는 2013년에 필요 선발인원은 약 300명 정도의 인력이 매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 행정서사 수를 우리와 등치시켜 계산한 결과는 2013년에 필요 선발인원은 약 600명 정도의 인력이 매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상기의 결과는 이론적 접근법이기에 때문에 연구결과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야 함
- 인식상의 적정인원을 조사한 결과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사의 경우 행정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와 등치시킨 경우는 증가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를 검토해야 할 것임
- ⇒ 결과적으로는 300명을 기준으로 선발인원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일본의 경우 등치시킨 결과 참고)
- 회귀모형의 값은 우리나라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결과이고 일본의 업무량과 등치시켜 값을 도출한 결과는 개략적인 결과일 뿐임
- 최소합격인원을 회귀모형을 통한 결과값을 우선으로 하고 일본 행정서사 수를 등치한 결과값은 참고로 하여 최소선발인원을 사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 연구에서 산출된 인원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음
 - 1안 : 450명 (연구에서 도출된 300명과 일본의 행정사수를 등치값인 600명의 중간정도의 선에서 선발인원을 정하는 방법)
 - 2안 : 350명 (연구에서 도출된 300명에 관세사의 경우를 적용하여 20%를 증가한 인원수에서 선발인원을 정하는 방법)
 - 3안 : 300명 (연구에서 도출된 300명을 그대로 정하는 방법)
- 최소합격인원을 회귀모형을 통한 결과값을 토대로 2013년에는 300명 선

을 기준으로 최소선발인원으로 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결론을 내림

- 상기 주장의 근거는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계산상으로 최소선발 인원은 계산상의 350명 선으로 급격히 늘리는 것보다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우선 250명 선을 최소선발인원으로 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음(노동부, 2007: 81)
- 행정사 업무범위가 특정지워져 있지 않고 넓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확대되는 정책적 방향도 견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0명 선에서 약간 증가된 인원을 검토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해 보임

제2절 **적정 응시수수료 도출**

1. 수수료의 의의

(1) 수수료의 개념

-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공공요금이라 함은 법률 또는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의 전매가격과 사업요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통 공공요금이라 할 때에는 국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독점하는 것의 요금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중서비스의 생산 공급을 업으로 하는 모든 기업의 요금을 포함함
- 수수료는 공공요금 중의 하나로서 사용료와 유사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공공요금이란 공익기업이나 국가관청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함

- 공공요금이 공공서비스의 가격이라는 의미라고 할 때, 수수료 역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의 가격임
- 공공요금이 국민 공동의 문명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수적인 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때 수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 이용을 원하는 특정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 수수료의 특질

① 특정성의 원칙

- 수수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가운데 특정한 자가 관계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여기에서 특정인은 수수료의 대가로서 행정서비스혜택을 받는 자를 말함

② 비용변상의 원칙

-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관련기관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데 수수료는 手數料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수고를 끼친 대가인 것임

③ 수수료의 요금결정의 원칙

- 수수료와 같은 공공요금의 결정은 비용원가 및 필요한 경비의 보상이라는 기준과 함께 정책적인 판단기준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요금결정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원가를 파악한 후 그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그 효용가치를 포함한 서비스의 성질을 고려함이 필요함

-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서비스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필요한 원가와 경비에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되는 비용과 어느 정도 이상의 경영이윤을 포함한 요금책정을 하지 않음
 - 왜냐하면 이권은 일반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영사업성을 지닌 공기업의 요금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임
 - 수수료는 공익을 위해서 특정한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크기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입장과 이용자입장에서 다를 수 있음
 - 이에 수수료 요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재화서비스의 성질을 국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것과 그 이상의 것으로 구분하여, 기초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세금 등으로 조달하고 그 이상의 것은 이용자가 부담능력 등에 따라 부담해야 함

④ 수수료의 원가결정원칙

- 수수료는 국민으로부터 서비스요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수입소요액을 의미하므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공공성을 감안한 원가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수수료의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공공서비스라는 특징을 감안하여 크게 4가지 방법인 서비스원가주의, 서비스가치주의, 경쟁가격주의, 사회적 원리주의가 사용되고 있음

⑤ 서비스 원가주의

-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공익기업의 요금결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방식임

- 여기서 원가란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이윤을 포함하는 총괄원가를 의미함
- 서비스원가주의는 서비스이용자가 원가보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⑥ 서비스 가치주의

- 서비스요금을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용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서비스의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임
- 여기서 서비스의 가치란 이용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이의 계량화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⑦ 경쟁가격주의

- 시장가격과 같은 개념으로 공공기업이 경쟁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가상적 경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임
-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기업은 독점성을 가지므로 경쟁주의 방법은 다소 부적합함

⑧ 사회적 원리주의

- 공공서비스는 인간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 누구나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책정하는 방법임
- 즉 사회적 수요 또는 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임
- 이상과 같이 살펴본 내용 중 서비스가치주의는 주관적 가치가가격결정법으로 제외되고, 경쟁가격주의도 대체제나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결정법으로 공공서비스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배제됨
- 또한 사회적 원리주의는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정책적인 가격 결정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수수료의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원가에 의한 가격결정방법 중 서비스 원가주의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2. 선행연구의 검토

(1) 국가자격시험 적정 응시수수료 산정 연구(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07)¹²⁾

- 응시수수료 산정은 정상원가기준과 공단시행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47개 각 자격에 대하여 비용산정내역서 및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음
- 2007년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소관부처 및 자격별 정상원가기준 및 공단시행기준 원가계산결과에서 이 연구와 관련될 수 있는 자격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6> 2007년 연구용역 산출 수수료

순번	자격	정상원가기준 ¹³⁾		공단시행기준 ¹⁴⁾	
		총월가	1인당 적정수수료	총월가	1인당 적정수수료
1	변리사	593,264,946	97,018	453,110,294	74,098
2	관세사	230,192,966	102,036	179,800,750	79,699
3	세무사	487,779,253	44,754	381,807,801	35,031
4	공인노무사	394,484,530	58,098	342,546,548	50,449
5	공인중개사	3,769,562,505	24,566	2,862,918,265	18,657

12) 한국산업관계연구원(2007). 국가자격시험 적정 응시수수료 산정연구.

13) 정상원가기준은 정부회계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원가방식에 의해 산출

14) 공단시행기준은 공단에서 그동안 시행한 시험운영기준을 바탕으로 공단실적을 적용하여 산출

(2) 국가자격시험 관리운영의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¹⁵⁾

- 개별 사업법에 근거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국가자격은 128개 자격이며, 하위등급까지 산정하면 총499개임
- 2001년부터 2006년 4월까지 관리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정부의 공신력 실추로 이어져 자격관련 시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2006년 국무조정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7개 국가자격에 대한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함
- 국무조정실은 시험사고 원인의 제기, 관리운영의 일원화에 따른 효율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을 통합 관리함
- 未통합된 81개 자격의 한계
 - 부처와 위탁기관간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 관리운영 조직 및 인력측면에서 공인민간자격에 비하여 관리운영 상태가 비체계적
 -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을 구비하지 않고 내부결재에 의해 운영
 - 출제관리체계의 미비로 문제유출 가능성 상존
 - 부처와 위탁기관에 속한 자격시험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
 - 자격의 현장성, 활용성 등을 제고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
- 국가자격시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험관리운영 차원의 기본인프라 구축, 시험시행을 위한 세부 구성요소 마련 및 시험 질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이 연구는 연구기간, 예산, 투입인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자격을 연구할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국가자격시험 관리운영의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

수 없어 3자격(건축사, 변호사, 의사)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강화방안을 제시

- 정책제언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격시험제도를 개선
 - 실무수련제도 도입과 적용을 위해서 치밀한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
 - 자격시험 응시기간, 응시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자격시험제도에 의한 낭비요을 감소

(3) 일본의 자격제도 연구

- 일본은 우리나라와 국가자격 응시수수료 체계가 유사하여 대부분의 자격이 1차, 2차 시험에 대하여 별도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자격별 응시료 현황에서 이 연구와 관련될 수 있는 자격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7> 일본의 국가자격 응시수수료와 비교

순번	자격	일본		한국		비고
		엔화	원화	금액(원)	일본수수료 대비(%)	
1	변리사	12,000	169,750	30,000	17.68	-
2	관세사	3,000	42,426	10,000	23.57	-
3	세무사	7,500	106,066	10,000	9.43	5과목 전체응시기준
4	공인노무사	9,800	138,592	75,000	54.12	사회보험노무사
5	공인중개사	7,000	98,995	28,000	28.28	-

주) 환율은 2010년 8월25일 기준 100엔당 1,414.21원

(4) 현행 수수료 체계

① 수수료체계의 현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현행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2007년 국가자격 시험 적정 응시수수료 산정 연구(한국산업관계연구원)를 수행하였으나 적용하지 않음
- 현행 수수료는 소관부처에 따라 책정된 시기가 다르고 책정기준도 불명확하여 절대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자격 중 최근에 수수료를 조정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되기 훨씬 이전에 수수료가 기 책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그 동안의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수수료 체계는 1차, 2차 구분없이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에게 응시수수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어 일부 시험에만 응시하는 수험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표 4-8> 국가자격별 현행 수수료 체계

자격	현행 수수료(원)			시험방법	수수료 책정시기
	합계	1차	2차		
1 변리사	30,000	30,000	통합징수	1차, 2차	2006년
2 관세사	10,000	10,000	통합징수	1차, 2차	2001년
3 세무사	30,000	30,000	통합징수	1차, 2차	2009년
4 공인노무사	75,000	30,000	45,000 (2차,3차시험)	1차, 2차, 3차	2007년
5 공인중개사	28,000	28,000	통합징수	1차, 2차	2007년

② 수수료 인상요인 적용

- 1997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3.8%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2009년에는 동결되었지만, 2004년 이후 평균 2.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자격 중 수수료 책정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수수료 인상요인에 하나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단순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각 자격별 수수료 세부산출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현행 수수료 전체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수수료 책정시기부터 매년 적용하여 산출함

<표 4-9> 수수료 인상요인 적용 산출 수수료

자격	현행 수수료(원)			수수료 인상요인 적용 (물가상승률) (원)	현행 수수료 대비 인상률 (%)
	합계	1차	2차		
1 변리사	30,000	30,000	통합징수	34,686	15.62
2 관세사	10,000	10,000	통합징수	13,301	33.01
3 세무사	30,000	30,000	통합징수	30,000	-
4 공인노무사	75,000	30,000	45,000 (2차,3차시험)	82,742	10.32
5 공인중개사	28,000	28,000	통합징수	30,890	10.32

주) 세무사는 2009년, 2010년 수수료를 조정하여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음

(5) 응시수수료 원가요인별 산출기준

① 물량(수량) 산출기준 작성

- 물량 산출 작성은 조사시점 기준 35개 자격에 대한 대상(접수)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모든 자격을 시험방법에 따라 1, 2차(또는 면접 3차)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시행지역수, 시험장수, 교실수, 교실감독인원수,

복도감독인원수, 질서계도위원수, 시험본부관리원수, 면접관리원수, 관리위원수 등을 산출해야 함

- 국가자격 운영의 특성을 감안하면 출제관리부문의 경우는 대상인원과 관계없이 고정비용이 발생되고, 시행부문의 경우에는 대상인원에 따라 원가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최근 3년간 전문자격 접수인원을 평균하여 대상으로 설정함
- 출제관리위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09년 실적인원, 2010년 계획인원, 2010년 실적인원을 비교분석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표준안으로 설정하여 적용함
- 시행관리부문에서는 시험 시행단계의 시험감독위원수(교실감독, 복도감독), 시험장개수, 시험실 개수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시험위원별 위촉내역 지침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단의 기 시행했던 실적을 기초로 하여 설정함
- 물량(수량) 산출기준¹⁶⁾ 예시
 - 시험장(고사장) 개수 : 1개 시험장에 시험실 30실(접수인원 ÷ 시험장 × 시험실)
 - 책임자수 : 시험장(고사장)당 6명 배치
 - 관리위원 : 시험장당 2명 배치
 - 시험실수 : 1개 시험실당 수험자 30명 응시기준
 - 교실감독위원수 : 1개 시험실에 감독위원 2명 배치
 - 복도감독위원수 : 8개 시험실당 1명(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는 5개 시험실당 1명)
 - 질서계도위원수 : 시험장당 1명(시험실수가 25개 이상 시험장에 한하여 필요시 위촉)

16) 변리사 시험의 시험실 개수는 1개, 시험실당 수험자 150명 배치 기준(사유: 수험자 1인당 책상을 2개씩 지급함)

- 면접관리위원수 : 1개 고사장에 2명 배치
- 본부관리원수 : 시험장별 2명 이내

<표 4-10> 국가자격별 물량(수량) 산출결과

자격	시험 구분	대상 인원	시험 장수	교실수	교실감 독위원	복도감 독위원	본부 위원	본부 관리원	면접 위원	
1	변리사	1차	3,870	5	258	516	33	85	10	-
		2차	1,385	2	93	186	12	32	4	-
2	관세사	1차	1,638	2	55	110	7	22	4	-
		2차	603	1	21	42	3	10	2	-
3	세무사	1차	5,868	7	196	392	25	77	14	-
		2차	4,064	5	136	272	17	54	10	-
4	공인노무사	1차	4,843	6	162	324	21	65	12	-
		2차	2,088	3	70	140	9	30	6	-
		3차	250	1	-	-	-	9	2	24
5	공인중개사	1차	142,433	76	4,748	9,496	594	1,664	330	-
		2차	152,887	76	5,097	10,194	638	1,785	330	-
6	산업인력 공단(안)*	1차	5,600	14	207	400	7	76	14	-
		2차	2,000	8	76	140	6	37	12	-

cf.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2. 10에 작성한 행정사 응시수수료 초안 참고

② 향후 3년간 대상인원 추정치

- 시험자격별 대상인원을 추정하기 위해 시계열분석을 사용하여 증감율을 이용하여 대상인원을 추정하였음¹⁷⁾

17) 공인노무사와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대상인원을 추정하였으며, 지수평활법은 가장 최근 데이터에 가장 큰 가중치가 주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중치가 기하학적으로 감소되는 가중치 이동평균 예측기법의 하나이며, 데이터들이 시간의 지수함수에 따라 가중치를 가지므로 지수평활법이라고 함

a. 변리사

응시년도	1차 대상인원	2차 대상인원
2005	4,829	2,017
2006	4,610	1,807
2007	4,322	1,793
2008	3,766	1,525
2009	3,722	1,260
2010	4,122	1,372
2011	4,006	1,277
2012	3,893	1,189
2013	3,784	1,106

b. 관세사

응시년도	1차 대상인원	2차 대상인원
2005	1,791	886
2006	1,506	926
2007	1,558	698
2008	1,552	774
2009	1,596	672
2010	1,766	439
2011	1,768	461
2012	1,771	484
2013	1,773	508

c. 세무사

응시년도	1차 대상인원	2차 대상인원
2005	8,818	4,274
2006	8,281	3,798
2007	8,291	2,608
2008	-	-
2009	3,820	3,017
2010	5,494	3,061
2011	6,153	3,520
2012	6,892	4,048
2013	7,719	4,655

d. 공인노무사

응시년도	1차 대상인원	2차 대상인원	3차 대상인원
2005	2,842	1,036	141
2006	3,950	1,963	123
2007	4,235	2,155	231
2008	5,262	1,853	208
2009	6,346	2,013	250
2010	2,902	2,387	-
2011	5,085	2,516	265
2012	5,041	2,646	281
2013	5,718	2,775	296

e. 공인중개사

응시년도	1차 대상인원	2차 대상인원
2005(16회 시험)	151,636	151,636
2006	147,401	147,401
2007	153,449	153,449
2008	156,329	169,434
2009	150,923	155,024
2010	120,048	134,203
2011	120,707	134,656
2012	121,369	135,110
2013	122,705	136,024

f. 산업인력공단 행정사 응시자 추정

응시년도	1차 대상인원	2차 대상인원
2013(1회 시험)	5,600	2,000

③ 현행 응시수수료와 원가분석 산출결과 비교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적기준 표준원가와공단표준원가 중 직접원가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원가는 다음과 같음

<표 4-11> 현행 응시수수료와 원가분석 산출결과 비교

자격		구분	현행 수수료	공단표준원가 기준 1인당 수수료	공단표준원가중 직접비 부문
1	변리사	1차	30,000	71,765	52,393
		2차		269,965	203,410
		계		341,730	255,803
2	관세사	1차	10,000	72,610	43,813
		2차		181,411	128,591
		계		254,021	172,404
3	세무사	1차	30,000	60,686	41,065
		2차		65,047	46,640
		계		125,733	87,705
4	공인노무사	1차	30,000	49,982	32,921
		2차	45,000	82,985	58,810
		3차		55,925	49,960
		계	75,000	188,892	141,691
5	공인중개사	1차	28,000	19,804	11,471
		2차		20,261	11,837
		계		40,065	23,308
6	산업인력 공단(안)	1차	-	28,490	-
		2차		75,322	-
		계		103,812	-

cf. 산업인력공단(안)의 계는 1차와 2차를 단순합산한 결과값이며, 1차와 2차를 합쳐 응시인원수를 통합으로 계산할 경우 1인당 40,812원이 도출됨

(6) 자격별 응시수수료 적용(안) 종합

① 통합수수료 기준

- 자격별로 현행 수수료의 적용시점, 물가상승률 등의 인상요인,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된 공단표준원가 등을 조사분석하여 개별적으로 응시수수료(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4-12> 자격별 응시수수료 적용(안) 종합(통합)

자격		현행 수수료	적정수수료(안)	증감률(%)	비고
1	변리사	30,000	63,700	112.3	원가보상율 25% 수준
2	관세사	10,000	30,000	200	현행 세무사 시험 수준
3	세무사	30,000	43,800	46	원가보상율 50% 수준
4	공인노무사	75,000	75,000	-	현행 수수료 유지
5	공인중개사	28,000	28,000	-	현행 수수료 유지
6	산업인력 공단(안)	103,812	25,953	-	원가보상율 25% 수준
			36,335	-	원가보상율 35% 수준
			51,906	-	원가보상율 50% 수준
			77,859	-	원가보상율 75% 수준

cf. 산업인력공단(안)의 현행 수수료는 1차와 2차 합계를 단순합산 했으면 이를 토대로 원가보상율의 비율을 곱하여 적정수수료(안)을 도출했음

② 1차, 2차 구분

- 통합된 적용 수수료(안)의 1차, 2차 구분 기준은 공단표준원가 산출결과 비율 및 응시인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4-13> 자격별 응시수수료 적용(안) 종합(1차, 2차)

자격	현행 수수료		1차 적정수수료(안)	증감률(%)	2차 적정수수료(안)	증감률(%)	
	1차	2차					
1	변리사	30,000	-	13,400	-	50,300	-
2	관세사	10,000	-	8,700	-	21,300	-
3	세무사	30,000	-	21,000	-	22,800	-
4	공인노무사	30,000	45,000	30,000	-	45,000	-
5	공인중개사	28,000	-	13,700	-	14,300	-
6	산업인력 공단(안)	28,490	75,322	7,123	-	18,831	원가 25%
		28,490	75,322	9,972	-	26,363	원가 35%
		28,490	75,322	14,245	-	37,661	원가 50%
		28,490	75,322	21,368	-	56,492	원가 75%

cf. 산업인력공단(안)의 적정수수료(안)는 원가보상율 25%, 35%, 50%, 75%를 적용했을 경우를 전제로 계산

③ 자격증별 고려 사항

a. 변리사

- 변리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동시 접수하여 시험은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 출제 등 시험운영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이중적으로 소요됨
- 특히, 2차시험의 경우 대상인원이 1차시험보다 적은 반면 비용은 높게 소요되어 1인당 소요비용이 높게 나타남
- 증감율을 이용하여 인원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향후 대상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1인당 소요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변리사시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축사자격시험¹⁸⁾, 변호사시험¹⁹⁾, 공인회계사시험²⁰⁾ 등과 비교할 수 있는데, 특히 2차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은 7과목,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4과목에 불과하지만, 변리사시험은 19개 선택과목이 있어 출제비용이 많이 소요됨
- 응시수수료(안)은 먼저 공단 표준원가를 통해 산출한 결과와 공단표준원가중 직접비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의 2가지(안)를 비교분석한 후 정부산하기관이라는 공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접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산출한 결과를 수수료(안)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선적으로 적정 수수료(안)을 제시하였음
- 변리사시험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적정수수료(안)는 변호사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의 평균수준인 원가보상율 25% 수준에서 제시하고 2-3년 주기로 단계를 나누어 증기적인 수수료 조정을 해야 함²¹⁾

18) 건축사자격시험은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운영되고 있고, 응시수수료는 80,000원임

19)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고, 응시수수료는 30,000원임

20) 공인회계사시험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응시수수료는 100,000원임

21) 일반적으로 요금 및 수수료 조정기간은 2-3년 주기로 적용함

- 단, 향후 대상인원의 변동, 시험방법 및 차수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함

종목	현행 수수료	적정 수수료(안)		증감율	비고
변리사	30,000원	1단계	63,700원	112.3%	원가보상율 25% 수준
		2단계	89,200원	197.3%	원가보상율 35% 수준
		3단계	127,500원	325%	원가보상율 50% 수준

b. 관세사

- 관세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동시 접수하여 시험은 별도로 시행하며 자격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인원 매회 약 2천여명이 응시함에 따라 시험시행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1인당 소요비용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증감율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향후 대상인원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1인당 소요비용은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관세사시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인 위치를 고려한다면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축사자격시험,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그리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시험과 비교할 수 있는데, 시험과목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수수료는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응시수수료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수요자부담원칙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된다며 자격시험과 관계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고, 자격시험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현행 수수료가 2001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 조정을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응시수수료(안)은 먼저 공단 표준원가를 통해 산출한 결과와 공단표준원가중 직접비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의 2가지(안)를 비교분석한 후 정부산하기관이라는 공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접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산출한 결과를 수수료(안)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선적으로 적정 수수료(안)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적은 대상인원으로 인해 현행 수수료의 수준과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수수료(안)와의 현격한 차이로 원가보상 차원에서의 접근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타 기관 운영 국가자격시험과 공단 시행 세무사 시험 등의 응시수수료 수준에 적정 수수료(안)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 단, 향후 대상인원의 변동, 시험방법 및 차수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함

종목	현행 수수료	적정 수수료(안)		증감율	비고
관세사	10,000원	1단계	30,000원	200%	현행 세무사 수준
		2단계	43,000원	330%	원가보상율 25% 수준
		3단계	86,000원	760%	원가보상율 50% 수준

c. 세무사

- 관세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동시 접수하여 시험일자는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출제 등 시험운영에 소용되는 고정비용이 이중적으로 소요되지 않지만 자격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 비해 대상인원 매회 1차와 2차 시험 합계 1만여명에 이르러 1인당 소요비용은 공단 시행 타 국가자격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증감율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향후 대상인원이 조금씩 증가할

- 것으로 추정되므로 1인당 소요비용은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세무사 시험의 경우 이미 2009년에 수수료 조정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축사자격시험,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 등의 응시수수료 수준과 비교하면 약간 낮은 편에 해당됨
 - 예를 들어 2차 시험만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4과목, 세무사시험의 경우에도 4과목이지만, 세무사시험의 수수료는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응시수수료(안)은 먼저 공단 표준원가를 통해 산출한 결과와 공단표준원가중 직접비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의 2가지(안)를 비교분석한 후 정부산하기관이라는 공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접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산출한 결과를 수수료(안)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선적으로 적정 수수료(안)을 제시하였음
 - 세무사시험의 적정 수수료(안)는 우선 원가보상율 50% 수준에서 적용하고 나아가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원가보상율을 기준으로 2-3년 주기로 단계를 나누어 중기적인 수수료 조정(안)을 함께 제시함
 - 단, 향후 대상인원의 변동, 시험방법 및 차수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함

종목	현행 수수료	적정 수수료(안)		증감율	비고
세무사	30,000원	1단계	43,800원	46%	원가보상율 50% 수준
		2단계	65,700원	119%	원가보상율 75% 수준
		3단계	87,700원	192.3%	원가보상율 100% 수준

d.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시험은 타 자격보다 많은 매회 약 7천여명이 응시하고 있지만, 1차시험과 2·3차시험을 별도 접수하고 시행은 1차, 2차, 3차 시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국가자격시험에는 거의 없는 3차 면접시험까지 시행하고 있어 1인당 소용비용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대상인원이 조금씩 증가하여 1인당 소용비용은 소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인 위치를 고려한다면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축사자격시험,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 등과 비교할 수 있는데 특히,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 1, 2차 시험만으로 합격을 결정하지만, 공인노무사시험은 3차 면접시험까지 시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됨
- 응시수수료(안)은 먼저 공단 표준원가를 통해 산출한 결과와 공단표준원가중 직접비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의 2가지(안)를 비교분석한 후 정부산하기관이라는 공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접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산출한 결과를 수수료(안)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선적으로 적정 수수료(안)을 제시하였음
- 공인노무사시험의 적정 수수료(안)는 현행 수수료의 수준이 공단시행 타 국가자격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측면이 있음로 현 시점에서는 현행 수수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단, 향후 대상인원의 변동, 시험방법 및 차수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함

종목	현행 수수료	적정 수수료(안)		증감율	비고
공인노무사	75,000원	1단계	75,000원	-	현행 수수료 유지
		2단계	105,700원	41%	원가보상을 75% 수준
		3단계	14,000원	88%	원가보상을 100% 수준

e. 공인증개사

- 공인증개사시험은 현재 1차, 2차시험을 동시접수 동시시행하고 있고, 타 국가자격과 달리 일반인들이 손쉽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관리 국가자격중 대상인원이 가장 많은 매회 약15만명 정도이므로 타 국가자격에 비해 비교적 1인당 소용비용이 낮게 나타남
-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현재의 시점에서는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수험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경기의 변화에 따라 대상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1인당 소요비용은 대상인원에 따라 점차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인하요인이 발생하므로 우선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최종적으로 공단 표준원가 중 직접비만을 대상으로 원가보상을 100%에 현행 수수료 조정시점부터의 물가상승률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현행 수수료와의 차이가 소폭이고, 2,3단계의 인상요인 등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는 현행 수수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종목	현행 수수료	적정 수수료(안)		증감율	비고
공인중개사	28,000원	1단계	28,000원	-	현행 수수료 유지
		2단계	30,900원	10.4%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3년간 적용
		3단계	34,100원	21.8%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3년간 적용

3. 행정사 적정 수수료 산정(안)

- 기존 자격증별 응시 수수료는 대상(접수)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출됨
- 그 다음으로는 시험방법에 따라 1, 2차(또는 면접 3차)에 따른 기준이 적용됨
- 마지막으로 대상인원과 관계없이 고정비용이 발생되고, 시행부문의 경우에는 대상인원에 따라 원가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으로 결국 접수 인원이 수수료 산정의 결정적 변수라 할 수 있음
- 접수인원 추정
 -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기존 연구의 4가지 자격증별로 최근부터 3년간의 인원을 보면 아래와 같음

(1) 변리사

응시년도	1차 대상인원	2차 대상인원
2011	4,006	1,277
2012	3,893	1,189
2013	3,784	1,106
평균	3,894	1,191

(2) 관세사

응시년도	1차 대상인원	2차 대상인원
2011	1,768	461
2012	1,771	484
2013	1,773	508
평균	1,771	484

(3) 세무사

응시년도	1차 대상인원	2차 대상인원
2011	6,153	3,520
2012	6,892	4,048
2013	7,719	4,655
평균	6,921	4,074

(4) 공인노무사

응시년도	1차 대상인원	2차 대상인원	3차 대상인원
2011	5,085	2,516	265
2012	5,041	2,646	281
2013	5,718	2,775	296
평균	5,281	2,646	281

(5) 자격종 별 수수료 정리

구분	2011년도종사자	합격인원	1차 접수자	현행 수수료	적정수수료(안)
변리사	2,997	240	3,894	30,000	63,700
관세사	1,434	75	1,771	10,000	30,000
세무사	9,779	630	6,921	30,000	43,800
노무사	1,823	244	5,281	75,000	75,000
공단(안)	6,984	560	5,600	-	-

(6) 각 비율별 추정치

구분	종사자 대비 1차 접수자 비율	합격인원 대비 1차 접수자 비율	합격인원 대비 종사자 비율
변리사	129.93%	6.16%	8.01%
관세사	123.50%	4.23%	5.23%
세무사	70.77%	9.10%	6.44%
노무사	289.69%	4.62%	13.38%
평균	153.47%	6.03%	8.27%
최대·최소값 제외한 평균값	126.72%	5.39%	7.23%

-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합격인원을 300명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자의 수를 구하는 것임

$$5.39\% = 300 / \text{지원자수 (x)}$$

$$\text{지원자수 (x)} = 5,564\text{명}$$

-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자격 응시수수료 원가분석연구」의 자격별 예상수험인원을 참고(참조2)하여 1차 시험 응시인원 산출공식 도출
- 여기에 경과조치에 따른 시험면제자 추산 257명을 합하면 5,821명이 추산됨

- 결국 5,821명 정도가 지원할 것으로 추정됨
- 5,821명은 2011-2013년 추정평균 변리사 1차 접수인원(3,894명)과 세무사 1차 접수인원(6,921명)의 중간정도(5,408명)의 인원임
- 변리사와 세무사의 통합수수료 기준으로 보면 현행 수수료 상으로는 3만원이 현행 수수료라 가정할 수 있으며, 적정수수료 상으로는 63,700원과 43,800원의 중간정도(53,750원)가 적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55,000원

<표 4-14> 자격별 응시수수료 적용(안) 종합(통합)

자격	현행 수수료	적정수수료(안)	증감률(%)	비고	
1	변리사	30,000	63,700	112.3	원가보상율 25% 수준
3	세무사	30,000	43,800	46	원가보상율 50% 수준

2) 1차, 2차 구분

- 통합된 적용 수수료(안)의 1차, 2차 구분 기준은 공단표준원가 산출결과 비율 및 응시인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4-15> 자격별 응시수수료 적용(안) 종합(1차, 2차)

자격	현행 수수료		1차 적정수수료(안)	증감률(%)	2차 적정수수료(안)	증감률(%)	
	1차	2차					
1	변리사	30,000	-	13,400	-	50,300	-
3	세무사	30,000	-	21,000	-	22,800	-

- 행정사 최소선발인원에서의 응시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1차에서는 17,200원(변리사와 세무사 1차 적정수수료안의 중간값)
 - 2차에서는 36,550원이 적정한 수수료로 추정할 수 있음(변리사와 세무사 2차 적정수수료안의 중간값)
 - 약 55,000원 정도의 통합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음

자격		1차 적정수수료(안)	2차 적정수수료(안)
1	변리사	13,400 (26.6%)	50,300 (78.9%)
3	세무사	21,000 (47.9%)	22,800 (52.1%)
평균		17,200 (0.32%)	36,550 (0.68%)
평균 합		53,750	
행정사 통합 수수료(안)		약 55,000	
행정사 1차, 2차		$17,600 = 55000 \times 0.32$	$37,400 = 55000 \times 0.68$
행정사 1차, 2차		20,000	35,000

-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상으로는 1차 시험에서는 2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2차 시험에서는 3.5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산정은 대체적으로 자격시험 성격이 유사한 세무사와 변리사 시험의 원가보상율이 적은 응시수수료를 기반으로 검토한 것이나,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응시수수료 연구(2010)」에 의하면 변리사와 세무사의 현재의 응시수수료는 적정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간의 물가상승율, 원가보상율 등을 고려할 경우 행정사 자격시험의 적정한 응시수수료는 6~7만원정도가 현실을 반영한 가격으로 판단됨
- 행정사 지원인력 추정과 가장 유사한 세무사 응시수수료 현황을 「국가자격 응시수수료 원가분석 연구」 참조(2010 한국산업인력공단)하여 참조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원)

자격별	2단계 적정 수수료(안)	1차 적정 수수료(안)	2차 적정 수수료(안)	원 가 (직접비)	적정수수료의 원가보상율
세무사	65,700	31,536 (48%)	34,164 (52%)	87,705	원가보상율 75% 수준

※ 1단계 적정수수료 : 2010년, 2단계 적정수수료 : 2012~2013년 적용
 ※ 1, 2차 적정수수료(안)은 1단계 1, 2차 적정수수료 산정 비율에 따라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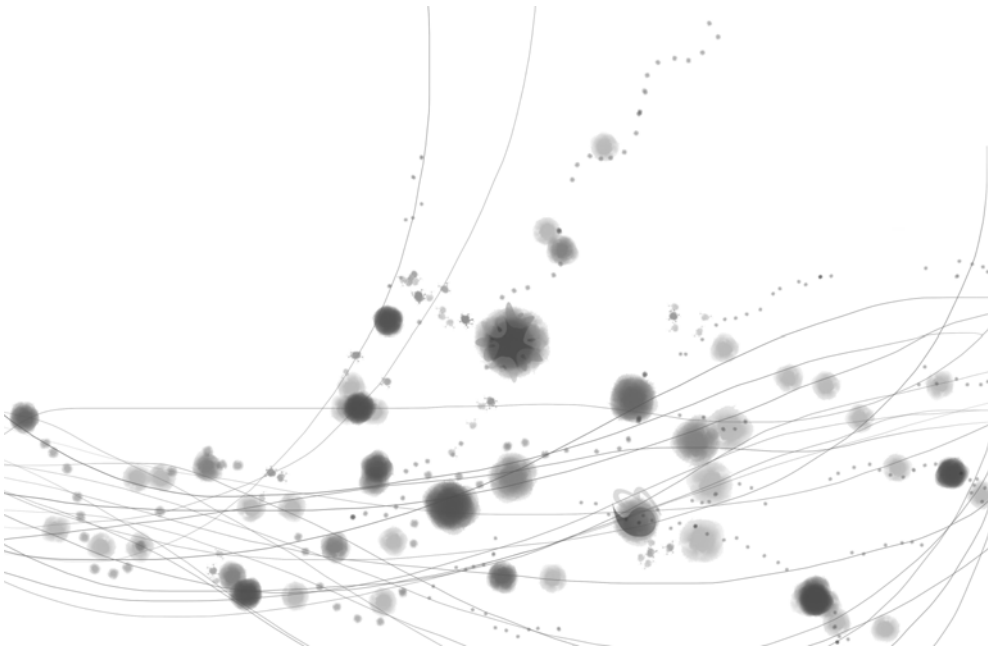
- 선발인원 300명(지원자 5,600명 추정)의 경우 응시수수료 1인당 75,00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응시수수료 원가분석 연구(2010)」에 세무사의 2단계 적정수수료를 원가 87,705원의 75%인 65,700원 산정
 - 행정사의 응시수수료는 응시인원, 시험과목 등이 비슷한 세무사의 적정수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예상 원가 103,812원의 75%인 77,859원을 75,000원으로 산정
- 1, 2차 시험 분리징수시 : 1인당 1차 20,000원, 2차 55,00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수수료 원가산정 비율을 적용하여 1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원가의 27%인 20,250원 ⇨ 20,000원
- 2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원가의 73%인 54,750원 ⇨ 55,000원
 - ※ 행정사 1차 시험 응시인원을 5,600명으로 추정시 예상 원가 103,812원 (1차 28,490원(27%), 2차 75,322원(73%)) - 한국산업인력공단 추정원가

4. 종합의견

- 1, 2차 시험 분리징수 : 1인당 1차 20,000원, 2차 45,000원
 - 현실을 반영한 응시수수료가 7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수험생 경제적 부담, 물가상승 등을 고려 65,000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제 5 장 결 론



제 5 장 결 론

- 이 연구는 행정사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이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최로 시행될 것을 고려하여 추진된 연구과제임
 - 처음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이니만큼 시험일정 및 최소선발인원을 결정하여 공지해야함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결정이 필요함
 -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는 제도로 운영될 예정임
 -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나, 적정 수준 이상의 행정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위원장 차관보)에서 매년 최소선발인원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행정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행정사 공급의 토대 마련이 중요함
 - 최소선발인원의 범위에 따라 응시자들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험응시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적정 응시수수료 산정 역시 필요함
- 행정사의 최소선발인원 및 적정 응시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했음
 - 첫째, 행정사 관련 선행연구 및 타 자격사 연구내용 검토 및 기초자료 분석
 - 타 자격사 수준의 행정사 수입을 유지하는 공급량 산정이 필요한 이유는 행정사 과잉공급에 따른 영업소 난립 및 과다경쟁 방지 필요

- 과잉공급에 따른 수입 저하로 행정사의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분석에 근거한 적절한 장기적 공급계획 수립 필요함
 - 둘째, 행정사 관련 시계열 분석 및 예측(회귀분석 등 활용)을 실시했음
 - 셋째, 행정사 응시수수료 적정가 예측을 위해 기존 자료를 분석
 - 선발인원의 결정에 따라 응시인원수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응시수수료에 영향을 주게 되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수료의 산정 역시 필요함
- 행정사 최소선발인원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대다수의 자격시험시 최소선발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회귀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 회귀분석을 통한 적정행정사 산정결과 향후 10년간 매년 300명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결과는 경과조치로 면제되는 공무원 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6개 임(GDP, 경제활동인구, 민원처리 건수, 고충민원 건수, 행정심판 건수, 국가기록물열람 건수)

○ 참고로 타 자격증과 종사자 비교방식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음

자격별	연도별	종사자	합격인원 (종사자 대비)	응시인원
법무사	2011	6,203명	121명 (1.9%)	3,798명 (합격률3.1%)
세무사	2011	9,779명	630명 (6.4%)	6,103명 (합격률10.3%)
변리사	2011	2,997명	240명 (8.0%)	2,868명 (합격률8.4%)
노무사	2011	1,823명	244명 (13.3%)	2,909명 (합격률8.4%)
관세사	2011	1,434명	75명 (5.2%)	1,324명 (합격률5.7%)
일본행정사	2011	42,328명	5,337명 (12.6%)	66,297명 (합격률8%)

○ 최초 시험이므로 향후 제도적 요인 및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증원 정책이 필요함

- 공인노무사 최소선발인원 용역시 회귀분석 결과 350명으로 산정되었으나 250명 최소선발인원으로 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 점진적 확대 (노무사 용역자료, 2007.8.1)
- 연구결과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최소선발인원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도 기대
 - 그간 자격시험 시행 없이 공무원 등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여 시장분석 및 적정한 행정사 숫자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

참고문헌

- 강명구. (2008). 직업으로서의 행정학, 「한국행정학보」, 42(1).
- 강문희·이선우. (2009). 한국행정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 적실성의 탐색. 한국행정학회 목요국정포럼 발표논문.
- 김정렬·한인섭 (2005). 행정학 위기의 실상과 대책. 「한국행정학보」, 37(4).
- 김형락. (2009).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의 적실성과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 노동부. (2007). 공인노무사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
- 박병식. (2009). 행정학 경쟁력 증진을 위한 자격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2009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종선·정윤정(2005), “부분최소제공회귀의 응용: 금융기관의 운영위험 예측 사례”, <통계연구>,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
- 박진표·정원태(1993), “부분최소자승회귀를 이용한 회귀진단”, <경남대학교 부설 기초과학연구소 연구논문집>, 경남대학교 부설 기초과학연구소
- 서울지방변호사회(2006).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
- 이상엽.(2010). 행정사 자격증의 필요성과 법률 개정 방향. 한국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선우·전진석. (2000). 행정학과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kapa@포럼 제89호: 19~21.
- 정건섭. (2009). 지방대학생의 국가자격증 취득 실태와 과제. 「한국비교정부학보」, 13(2): 373-396.
- 조우현(1995). 법조인 적정 수에 대한 소고. 법과 사회(11).

한경비즈니스(2005.4.18).

한국산업관계연구원(2007). 국가자격시험 적정 응시수수료 산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2). 행정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행정자치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국가자격시험 관리운영의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회계학회(2006).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 부 록 -

1. 행정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의견(행정사)

- 민간참여
- 법무부분도 추가
- 범위를 넓혀주기
- 범위 확대
- 홍보 강화
- 협회의 활성화
- 법무사가 작성하는 고소장도 행정사 업무공유 필요
(행정사도 고급 전문인력임)
- 수입료 공시(전국) 필요. 출입국 업무관련 민원서류 : 행정사 전담 필요
- 2012년 행정사 실무교육 이수자는 행정사 허가를 반드시 조치 필요
(현재 미신고자로 함)
- 행정심판 대리인(대행에 한정) 인정
- 청구인에 의뢰된 청구서 인터넷 접수대행 인정
- 자격사 시험 실시는 젊은 인력 수급이 절실히 요구되며 행정사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 교육을 비롯한 실무교육과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임. 전국회원 조직 필수
-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무허가 여행사의 일제단속, 행정사증 대여자 적발처분, 각종 교육훈련 강화,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 정부에서 적극 대국민 홍보, 훈련 강화
- 협회의 강화, 언론 및 홍보매체 활성화, 자격의 활성화
- 법원 검찰청 서류 제출
- 행정사법 규제 완화
- 행정사 시험 합격 후 전문자격 향상에 따른 일정한 교육기간의 필요성
- 전직 행정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무의 결정과정만 행정관에서 그 절차 과정만 행정사들을 활용함으로써 공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의 달성은 물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사료됨

- 행정사의 자질 향상
- 행정사가 되면 일정기간 동안 실무교육을 시켜야 함
- 1社 1 行政士 제도를 철저히 감독·관리해야 함 : 현재 여행사, 중국식품점, 환전소, 중국식당 등에서 행정사업무를 노골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그 감독은 지극히 저조하고 형식적임.
- 행정사가 적정수입(월 200만원 정도)을 올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형행제도(특히 법무부출입국)는 행정사를 고사시키기 위한 법무부의 술수임. 법무부는 행정사를 법무사만큼 아니 법무사의 반만이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보수료(서기료) 증액과 정부가 권리보호제도 보장
- 경력직 행정사의 경우 일본과 같이 상향 조정(직급 및 근무기간)
- 행정사의 통합(기술 → 일반, 외국어 행정사는 폐지)
- 시험선발의 경우 노무사(법무사)와 같이 최초 10명/20명 선발 후 제도 정착 후 인원조정 재검토
- 행정사 시험 합격 후 전문자격 향상에 따른 일정한 교육기간 필요
- 고소·고발장 작성,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
- 취급 업무영역 확대, 행정사업 위반자 단속, 대리권 부여
- 교육훈련, 교류협회의 활성화 - 교육훈련 강화
- 교육훈련과 실무교육
- 행정사 교육과 행정사 업무 세미나/워크숍
- 교육체계화 정립, 업무분야 법제화, 수입료 기준화
-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실습
- 교육훈련 체계 확립, 협회운영의 활성화
- 전문행정사 교육 및 워크샵

-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행정부에 이양, 여성가족부에서 업무취급 많이 발전
-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요구
- 소액재판 청구 등 서민들에게 필요한 법무업무 수행
- 행정기관 인허가 대리청구, 행정심판 청구대리, 행정처분의 전치주의 반영
- 조직의 체계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 및 실무교육
- 일반 행정사와 번역 행정사의 업무권한 차별화
- 행정사 업무가 활성화되면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업무과 과감한 이관 - 역차별 문제 시정
- 행정심판에서 대리인 자격 부여,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
- 행정사 자격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행정사 업무 수익모델에 대한 법적 보장 및 보수체계, 타 전문자격사와의 차별화
- 행정사 등록증 대여 및 대여받아 영업하는 자 고발
- 사법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작성
- 행정심판청구 등 대리권을 인정(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처럼 직접 활동)
- 고소장등 작성업무 인정(소장은 행정관서인 경찰, 검찰 등에 제출하는 서류임. 사법부 제출서류 외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 행정사 간판 동일규격 시행, 행정사 시험제도 활성화, 행정사회비 미납자 행정사업무 정지처분 제도화, 각 시도별 행정사업 등록번호 부여
- 고소장 작성제도 법제화가 어려우면 행정사법 내부규정이라도 마련하여 고소, 고발장 작성업무 실현
-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많이 있어 지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한 자만이 행정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법개정 요망

- 대서부분은 민형사 관계없이 대서해 주도록 해야
- 법무업무, 부동산 업무 - 법무사업무 병행
- 부동산 활성화 - 행정사 대행업무 법적 규제 강화
- 행정사 업무영역 확대
- 행정사 업무영역 확대 및 행정관청과 협조관계 밀착
-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작성
- 조직 강화, 업무범위 개선
- 행정사는 협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명시
- 인허가업무 행정사 경유 - 법무(고발·고소장 작성)
- 실무교육 상설 실시, 행정사 정기 보수교육, 협회가입 의무화
- 행정사협회 가입 의무화, 무허가 행정사 단속
- 협회 허가시 행정안전부 검증
- 협회가입 의무화, 행정사보험 가입제 실시
- 행정사 업무 효율성 개발, 협회가입 의무화
- 협회가입 의무화, 무면허행위 단속 - 협회가입 의무화(허가제)
- 행정사 교육(보수) 실시 - 무면허 행정사 단속(대여자)
- 협회가입 의무화, 협회난립 억제, 행정사 공제보험 가입제도 실시
- 협회가입 의무화, 상시 실무교육 실시
-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을 행정사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했으면 함
- 협회가입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 행정사 협회가입 의무화, 회비납부제도 개선
- 행정사의 행정협회 가입 의무화 및 행정사가 구청에 신고할 때마다 각 지부에 통보하여 통제관리하도록 조치 필요

- 행정사의 협회가입 의무화 및 회비납부 강행규정, 미등록 및 회비 미납자의 행정처분 등 처벌규정 제도화 요망
- 검찰, 법원 등에의 간소한 서류는 행정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화
- 전문 행정사를 위한 행정사 실무교육 활성화
- 행정사 업무 확대 - 시험제도 강화
- 행정심판업무 활성화 - 행정사 보험제도 실시
- 협회가입 의무화(허가제) - 협회가입 의무화, 행정사증 대여자 처벌
- 행정사 보험가입 의무화 실시 - 행정사 업무 확대
- 모바일 등 접수로 현장활동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
- 협회가입 의무화, 무허가 행정사 단속
- 고소장 작성, 여행사에서 행정사 대행 불가 조치
- 사업 운용방법(영업 등) 전문교육
- 고소·고발장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부자격자 단속 강화 - 법무사와 동일 보수규정 실시
- 고소·고발장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 무자격자 행정사 업무 단속요망 - 각종 규제업무 철폐
- 수수료 현실화, 각종 규제 완화, 연수교육 실시 등
- 업무 교육, 보수 현실화
- 정기적인 업무연찬교육 실시
- 시민에게 행정사 업무 홍보, 행정사의 사회발전 참여기회 부여
- 행정사 해당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금지
- 법원 제출서류도 허용해야 함
- 행정사가 업무진행을 함에 있어서 관공서가 행정사의 업무대리권을 인

정해야 함

- 구청에서 행정사를 등록하는 경우 반드시 지회로 통보해 주는 절차 요망
- 행정부처 업무의 행정사 위임
- 행정사협회에서 행정사를 등록관리하여야 함
- 1년 단위로 전반적인 행정업무 워크숍 개최
-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고소·진정사건 등을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 법무사만 작성할 수 있는 고소장을 행정사도 할 수 있게 개선 요망
- 지역별로 인구비례로 행정사의 수를 협회에서 자율로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함
- 고소·고발장 작성 등 사법기관 제출서류 및 행정심판, 심사청구 등
- 행정기관을 비롯 일반인에게 행정사 제도 시행과 행정사의 업무범위, 위법시 처벌 등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
- 고소·고발사건의 행정사 이양 - 행정사의 협회가입 의무화
- 협회가입 의무화, 보수교육 실시, 고소장 작성
- 협회 의무가입, 고소장 작성 제도화
- 전국 행정사 모임 활성화, 전국단위 행정교육 및 정보 교류
- 시험 실시로 기존 행정사 보수교육 실시
- 협회 의무가입으로 허가제 실시, 여행사 행정사 업무 단속
- 협회 가입으로 정책 일원화 - 협회가입 의무화, 보험가입제 실시
- 협회 의무가입, 정기 실무교육 실시
- 행정사 보수교육 실시로 질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 행정사 허가제, 실무교육 상시 실시, 행정사 보수교육 실시로 질 향상

- 행정사 허가제, 실무교육, 보험도입(공제증권)
- 실무교육 상설 실시, 행정사 보수교육 실시
- 대한행정사협회 의무 가입, 교육 활성화, 보증증권제도 도입
- 협회가입 의무화, 협회 허가 금지 - 행정사 대국민 홍보
- 수임료가 일정하지 않다. 행정사법의 개정으로 인한 업무범위의 확대 및 행정사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행정사법을 통한 업무영역의 확대 및 행정사협회의 홍보강화
- 수익이 많은 행정사의 사례발표나 책자 발행
- 모바일 등 접수로 현장활동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
- 행정사의 권익을 높여 주세요
- 소액재판 청구 등 서민들에게 필요한 법무업무 수행
- 협회가입 의무화, 협회난립 억제, 행정사 공제보험 가입제도 실시
- 행정사 조직 활성화
- 행정사의 업무영역 개발과 전파가 필요
- 행정사법 개정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및 행정사협회의 홍보 강화
-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권 부여
- 행정사업 개정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및 행정사 조직의 활성화
- 행정사 실무 교육기관의 필요성
- 대한행정사협회의 조직화, 행정사법의 개정 - 심판청구 등의 대리 가능
- 행정법률상 행정사의 업무범위 확대
- 중앙협회 정비
- 행정사를 최소화하고, 업무영역 개발과 전파가 필요
- 소액재판 청구, 서민들에게 필요한 법무업무 수행

- 수입료가 일정하지 않다. 행정사법 개정으로 인한 업무범위의 확대 및 행정사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행정사협회의 강화 및 관심 - 협회가입 의무화
- 협회가입 의무화, 행정사 공제보험제도 도입
- 행정사의 업무가 전문화되도록 제도 마련
- 행정사 시험을 어렵게 하여 행정사의 위상을 높이도록
- 행정사업무의 전문적인 매뉴얼이 필요
- 행정사에 대한 권익 보호
- 행정사협회가 강해지면 행정사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사의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운용
- 행정사를 최소화하고, 업무영역 개발과 전파가 필요
- 대한행정사협회의 조직화 및 협회가입 의무화, 행정사법의 개정
- 심판청구 등의 대리 가능
- 행정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집단적인 정기적 회의체가 필요
- 행정사협회의 활성화로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 활성화
- 고소장 작성권한이 있도록 법률개정 필요
- 교육제도 세부적 명시 - 협회 활성화
- 관공서 제출서류 모두 처리(대리) 가능체제 구축
- 행정사그룹이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업무체인을 구성해야 한다
- 제도개선(대리권한 확대) - 자격증 발행을 협회에서 관장
- 시·도 행정지원체제 구축
- 국민에게 행정사가 있다는 것을 협회에서 홍보
- 행정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 활성화

- 행정사 전문자격 향상에 따른 교육기간의 필요성
- 전문교육 실시 - 중앙회 활동 강화
- 고소장 작성권한이 있도록 법률개정 필요
- 행정사의 전문 교육기관 설립 및 운용
- 행정사의 강한 독립기구 이익대변기관의 설립 활성화
- 행정사 자격 취득 후 실무교육기관 설립운용
- 단일화된 행정사협회 국가지원

2. 행정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의견(공무원)

- 자격증 취득 후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 공무원의 상세 설명 및 인터넷의 발달로 사양화될 것임
- 업무범위 확대
- 공무원들이 업무를 대신하여 주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어둡고, 전문적인(법인설립 허가, 행정심판 등) 분야의 대행이 필요
- 행정사제도 적극적인 홍보 필요
- 행정사 자격시험에 수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넣어 변별력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행정사 업무와 수수료 규정 신설
- 전자정부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므로 외국인 관련업무 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행정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서 마련
- 영업행위 지도점검 강화
- 행정사 수입업무의 고급화
- 업무를 고유화하지 않으면 법무사와 중복으로 수입이 감소되므로 수 감소

- 행정사 등록 없이 자유업으로 전환이 바람직
- 행정사 수입업무를 법무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 사회적 인식 제고(변화)와 행정청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 등
- 공무원 출신 중 장기 근무자 우대(20년 이상)
- 행정사 수요보다 공급초과 시 전문성 및 신뢰성 저하 가능
- 공무원출신 중 장기근무자 우대 , 예: 20년 이상
- 행정사 수요보다 공급 초과시 전문성 및 신뢰성 저하 가능
- 행정사 방문 부담 경비 최소화 필요
- 민원 처리 경비 최소화로 활발한 방문 유도
- 행정사 선발 인원 점차 확대
- 수수료 인하, 무료상담 늘리기 등
- 우선 무엇보다 법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 현 행정사법은 매우 허술하여 행정사업의 전반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수입료를 청구하여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수입료에 대한 적정 규정이 전무하며 신고필증을 받아 영업을 함에도 사무소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심지어 개인이 자신의 아파트에 남는 방에 행정사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신고를 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수입료를 부과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행정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본다.
- 행정사는 인터넷의 발달, 법무사 등 역할과 중복되어 그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점차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행정사의 수익이 법무사 수준이 되어야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

- 정기적인 업무연찬회가 필요함.
- 워드(컴퓨터) 자격증도 필요
- 행정사 사무실 관청 주변 접근 필요
- 자질있는 사람 선발
- 적정한 수입 보장
- 행정사 업무영역의 확대
- 행정사의 전문적 지식
- 불필요 제도임
-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특화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 인터넷과 각종전문지식 공유로 인하여 행정사 수요가 낮을 것 같음
- 행정사업무에 행정기관에만 제한되어 있는 현재 업무 영역을 사법기관까지 서류 제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그에 따른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 개발 필요
-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사 영입에 대한 법적근거 및 지도 감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단순 행정사무보다는 전문적인 행정사무가 더 전망이 있을 것 같으며, 공직자 퇴직후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교육이 경기도 주관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시험 변별력 향상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전문성 강화
- 업무 영역 확대
- 수입 업무의 유형의 다양화
- 행정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자는 시험 없이 행정사 취득 요함
- 행정사에 대한 홍보 필요
- 행정사 제도 폐지하고 법무사로 통일
- 행정사 제도 폐지 후 법무사 등과 통합 또는, 행정사만의 고유한 수입 업무를 설정 등
- 행정사 제도 폐지, 자격 및 고유 업무 엄격하게 관리 등
- 행정사제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음.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된 홍보물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인구감안 권역별 개업제한 유지 - 업무유형의 확대
- 행정사 업무의 다양화 및 확대
- 자격제도로 업무한계를 정하여 공인된 권한부여
- 세무사처럼 대행업무 추진 - 인허가시 행정사 전치주의 채택
- 인허가 행정사를 거쳐 서류 접수 제도 필요
- 행정사가 많으면 어려운 시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됨
- 행정사 제도의 불필요
- 일반·복합 민원업무에 다양한 종사자들이 있어 행정사의 의미 줄어듦
행정사의 존폐 여부가 필요함
- 행정사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
- 복합민원업무취급, 각종수수료 등 구체화 명시
- 복합민원업무, 인허가민원업무 등
- 수입업무의 유형에 따라 수입료 명문화 필요
- 군지역에서는 고령화와 행정전산화로 수요 부족하며, 행정사의 업무영역
역을 법으로 보장 명시하여야 함.
- 행정사 제도의 홍보와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성 제고
- 불필요하다
- 향후 30년간은 공무원 출신들이 누구나 행정사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사
사 합격인원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업무의 전문화 - 행정사를 배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단순 일반민원, 인허가,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의
신고, 신청업무는 별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행정사의 수입업무 해결
능력 수준향상 고려

- 수임업무 확대지원을 위해 행정사 대행 업무처리 기준 명시 시행
- 행정사 전문교육과정 개설 필요하다
- 다른 자격증 보다 수익이 떨어지고 수요도 줄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원만 합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행정사제도는 법무사, 세무사 등에 비해 비용이 거의 안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에서 안내 등을 철저히 하고 있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됨
- 법적으로 철저한 신분 보장 - 법령 정비
- 행정사법 및 관련 규정 정비
- 법무사 제도와 동일하게 제도개선 필요
- 기존 행정사는 대필만 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자격증시험제도 시행과 더불어 수준이 상향 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3. 설문지

행정사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조사(행정사용)

안녕하세요?

이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동시에,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비해 행정사 공급규모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행정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에 귀중한 자료로써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본 조사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선생님께서 느끼신 바를 솔직히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1) 2013년도 시행될 행정사 시험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 ④ 알고 있다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문 2) 현재의 행정사 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 ④ 적정하다 ⑤ 매우 적정하다

문 3) 현재 행정사를 통해 받는 서비스의 수수료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적정하다 ⑤ 매우 적정하다

문 4) 2013년 행정사 적정 선발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0명 미만 ② 100명 이상~200명 미만
- ③ 200명 이상~300명 미만 ④ 300명 이상~500명 미만

문 9) 향후 감소할 수입업무의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일반민원업무
- ② 행정심판, 심사청구
- ③ 인허가 등의 신청 대리
- ④ 출생·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무(과거 호적사무)
- ⑤ 기타()

문 10) 향후 행정사의 수익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 ① 타 자격사에 비해 수익 전망이 좋다
- ② 타 자격사에 비해 수익전망이 떨어진다
- ③ 변화가 없다고 본다

문 11) 귀하는 행정사를 전업으로 하고 계신가요?

- ① 행정서사 전업자
- ② 타자격 겸업자(업무:)

문 12) 귀하의 사무소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단독사무소
- ② 타사업자와 합동사무소
- ③ 다른 행정서사와 함께 사무소
- ④ 법무법인 소속
- ⑤ 회사 등 취업
- ⑥ 기타

문 13) 귀하의 사무실 운영에 드는 월평균 운영경비(임대료, 종업원 월급 등 포함)은 얼마 정도입니까?

- ① 30만원 미만
- ② 30만원 이상~50만원
- ③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 ④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⑤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⑥ 150만원 이상
- ⑦ 기타(만원)

문 14) 행정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문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문 15)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문 16) 귀하의 연령은? ()세

문 17) 귀하의 행정사 업무경력은? ()년 ()월

문 18) 귀하의 행정사 종류는? ① 일반 ② 기술 ③ 외국어

문 19) 귀하의 출신은?

- ① 일반직 공무원 ② 경찰 ③ 군인/군무원
④ 교육공무원 ⑤ 기타 특정직 공무원
⑥ 별정직 공무원 ⑦ 민간인

문 20) 귀하의 거주지역은?

-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행정사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조사(공무원)

안녕하세요?

이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동시에, 최소합격 인원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비해 행정사 공급규모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행정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에 귀중한 자료로써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본 조사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선생님께서 느끼신 바를 솔직히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1) 2013년도 시행될 행정사 시험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 ④ 알고 있다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문 2) 현재의 행정사 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 ④ 적정하다 ⑤ 매우 적정하다

문 3)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이다
-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문 4) 현재 행정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수수료가 비쌀 것으로 예측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적정하다 ⑤ 매우 적정하다

문 5) 2013년 행정사 적정 선발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0명 미만 ② 100명 이상~200명 미만
 ③ 200명 이상~300명 미만 ④ 300명 이상~500명 미만
 ⑤ 500명 이상~700명 미만 ⑥ 700명 이상

< 행정사 최소합격인원제도 >

2013년부터 시행될 행정사 최소합격인원제도는 기준점수에 의해 합격선을 고정하는 체계이며(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를 시험공고시 정한 최소합격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 과목이 4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 선발하는 제도

문 6) 행정사의 월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문 7) 향후 증가할 수입업무의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복합민원업무 ② 행정심판, 심사청구
 ③ 인허가 등 신청 대리 ④ 외국인관련업무
 ⑤ 기타()

문 8) 향후 감소할 수입업무의 유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십니까? ()

- ① 일반민원업무 ② 행정심판, 심사청구
 ③ 인허가 등의 신청 대리
 ④ 출생·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무(과거 호적사무)
 ⑤ 기타()

4. 자격별 예상 수험인원 현황

(단위/명)

응시 년도	변리사 시험인원		관세사 시험인원		세무사 시험 인원		노무사 시험인원		
	1차 시험	2차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2011	4,006	1,277	1,768	461	6,153	3,520	5,085	2,516	265
2012	3,893	1,189	1,771	484	6,892	4,048	5,041	2,646	281
2013	3,784	1,106	1,773	508	7,719	4,655	5,718	2,775	296
평균	3,894	1,191	1,771	484	6,921	4,074	5,281	2,646	281

출처 : 「국가자격 응시수수료 원가분석 연구」(2010.10 한국산업인력공단)

5. 자격증별 선발인원 현황

(단위/명)

관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연 도	응시 인원	최소선 발인원	총합 격자	연 도	응시 인원	최소 선발 인원	총합 격자	연 도	응시 인원	최소 선발인 원	총합 격자	연 도	응시 인원	최소 선발 인원	총합 격자
08	1,095	75	75	08	4,340	120	120	08	5,600	630	633	08	2,457	200	219
09	1,132	75	86	09	4,266	120	120	09	2,983	630	631	09	2,765	200	226
10	1,266	75	75	10	4,100	120	121	10	4,515	630	640	10	2,986	200	244
11	1,324	75	75	11	3,798	120	121	11	6,103	630	630	11	2,868	200	240

○ 일본 행정서사 시험의 합격률

(단위/명)

년도	응시인원	합격자수	합격율
2000	44,446	3,558	8.01%
2001	61,065	6,691	10.96%
2002	67,040	12,894	19.23%
2003	81,242	2,345	2.89%
2004	78,683	4,196	5.33%
2005	74,762	1,961	2.62%
2006	70,713	3,385	4.79%
2007	65,157	5,631	8.64%
2008	63,907	4133	6.47%
2009	67,348	6095	9.05%
2010	70,586	4,662	6.60%
2011	66,297	5,337	8.05 %

6. 시도별 행정사업 신고현황('11.12.31 기준)

(단위 : 명)

시·도	합계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계	6,984	6,881	94	9
서울특별시	1,716	1,681	34	1
부산광역시	388	359	23	6
대구광역시	402	393	9	0
인천광역시	340	338	2	0
광주광역시	145	143	2	0
대전광역시	182	181	1	0
울산광역시	77	77	0	0
경기도	1,543	1,533	10	0
강원도	234	233	1	0
충청북도	148	144	4	0
충청남도	286	284	0	2
전라북도	432	428	4	0
전라남도	263	262	1	0
경상북도	408	406	2	0
경상남도	358	357	1	0
제주도	62	62	0	0